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 편람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내 용〉

◆ 「남북기본합의서」 내용 개요 및 해설

◆ 화해공동위원회

◆ 군사공동위원회

◆ 경제공동위원회

◆ 사회·문화공동위원회

부록 : 남북합의서 (전문)

「남북기본합의서」 내용 개요 및 해설

〈목 차〉

I.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5
1. 통일 추진의 「기본틀」 마련	5
2. 남북간의 자주적 합의	6
3. 북한의 「혁명」 전략 수정 및 개방 촉진	7
II.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8
1. 남북간의 특수한 합의	8
2. 화해·협력 단계의 기본 규범	12
3. 한시적 잠정성	13
III.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	15
1. 개관	15
2. 주요내용 해설	17

I.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1. 통일추진의 「기본틀」 마련

「기본합의서」는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북한이 결과로서의 통일을 명분으로 하여 공세를 취하여온 데 반해, 한국은 통일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에 두고, 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즉,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인해 민족적 이질화가 심화되고 남북이 상호 불신·반목하여 온 현실상황에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통일민족국가를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우리는 그동안 단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현재의 남북한관계를 통일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 남북한이 당장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전복하지 않으며,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약속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기본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남북한은 이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남북연합」을 이룩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화해·협력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2. 남북간의 자주적 합의

「기본합의서」는 7천만 온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3자의 개입없이 남북간의 공개적 협의를 거쳐 채택·발표된 최초의 공식 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기본합의서」는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책임있는 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현 분단상황을 우리민족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본합의서」는 그 형식과 절차, 내용면에서 「7·4남북공동성명」과는 달리 공개적인 협의를 거쳤고 남북한의 정식 국호와 서명자의 직함을 명시하였으며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층 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특히 「기본합의서」는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제10조)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천명한 것으로서 이제 남북한이 주변환경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3. 북한의 「혁명」전략 수정 및 개방 촉진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민족내부 특수관계라고 인정하고 제1조에서 상호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명란에서는 남북한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남북한이 상호 체제인정·존중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을 국제법상 완전한 「국가」로 인정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남북한이 각기 상대방의 「실체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후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진다면, 「남조선해방」논리에 입각한 북한의 기존 대남전략이 수정되고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기조에 입각한 통일과정이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 정책상의 전술적 변화필요성에 따라 「기본합의서」 채택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 체제의 인정·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및 파괴·전복행위 금지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기존의 대남혁명노선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기본합의서」에는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강조됨으로써 정치·군사문제 해결 우선론을 고집하여 온 북한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민족내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Ⅱ.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1. 남북간의 특수한 합의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국가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서의 성격이 일반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본합의서」는 서문, 조문배열, 정부대표의 서명, 발표절차 등 국제법상 조약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기본합의서」의 이와 같은 2중적 성격때문에 합의서의 조약성 및 국회동의 필요성 여부, 국내법제와의 관계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과 1986년 「국가와 국제조직원 및 국제조직 상호간에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유엔협약」등을 종합해 볼 때, 국제법상 조약의 의미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제법 주체간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이다.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는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조직, 교전단체, 분단국을 구성하는 정치실체 등 국가유사단체도 포함된다.

오늘날 조약의 범위에는 국가와 국제조직을 포함하여 조약체결능력을 가진 국제법 주체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있는 서면합의가 모두 포함되는 바, 이러한 의미에서의 조약을 「광의의 조약」이라고 한다.

광의의 조약에는 조약(treaty) 뿐만 아니라,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규약(covenant), 헌장(charter), 규정(statute), 결정서(act), 의정서(protocol), 합의의사록(agreed minute), 선언(declaration), 교환공문(exchange of notes), 잠정협정(modus vivendi)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간의 서면합의가 모두 포함된다.

이에 반하여 협의의 조약은 예컨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처럼 광의의 조약 중 「조약」(treaty)이라는 명칭을 특별히 사용한 국제법 주체간의 서면합의를 말한다.

이같은 국제법상의 조약에 관한 정의를 「기본합의서」에 적용해 볼 때, 「기본합의서」는 국제법상 상호 승인한 국가간의 조약은 아니나, 분단국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정치실체 즉, 국제법 주체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당국간 합의이다.

어떠한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발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합치의 요건으로는 ① 조약당사자가 조약체결능력(capacity)을 가질 것, ②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③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임명한 대표자(전권대표)간에 하자없는 합의(consent)가 성립

할 것, ④ 조약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객체(object)로 할 것, ⑤ 일정한 조약성립(체결) 절차를 완료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① ② ③ ④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은 분단국을 구성하는 두 정치실체이기는 하나 각기 유엔회원국으로서 100여개를 상회하는 국가들과 수교하고 있고, 국제법상 다양한 법률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조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본합의서」는 우리헌법(제73조)상 조약체결권자인 대통령과 북한헌법(제96조)상 조약체결권자인 주석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한의 조약체결권자가 합의한 공식문서이다.

다만 합의서 채택과정에서 그 전권이 남북한 총리에게 각각 위임되어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7·4 남북공동성명과 달리 남북을 대표하는 쌍방 총리가 전권을 가지고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셋째, 「기본합의서」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간에 하자없는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기본합의서」는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기·강박 등의 하자없이 적법하게 양측 의사가 합의된 문서이다.

넷째, 조약의 내용 자체가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기본합의서」의 내용은 쌍방이 준수의사를 가지고 실천

해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⑤ 일정한 조약성립절차의 완료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헌법관행에 의하면 국회의 비준동의는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조약에 대해서만 행하여져 왔다.

따라서 이번 「기본합의서」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서문의 규정과 그 성질상 「국가간」 조약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국가간 조약 체결절차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기본합의서」를 일반적인 「국제조약」으로 취급할 경우, 쌍방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를 두개 국가간의 「일반관계」로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은 남북한이 제각기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남북한이 상호 묵시적인 「국가승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특수관계 규정은 분단의 고착화, 영구화를 피하고 민족의 재통일을 추구하는 강력한 통일 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2. 「화해·협력단계」의 기본규범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통일의 개념을 하나의 실천과정으로 파악, 통일의 방법은 단계적 접근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통일방법의 틀을 설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통일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은 여러가지 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과도기적인 「평화체제」와 정치적 통일에 의한 「민족통일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평화체제」는 다시 「남북연합」이 제도화되는 단계와 그 이전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통일단계별 국가형태와 각 단계를 규율하는 기본규범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때, 「기본합의서」는 통일을 향한 과정의 제1단계인 남북한간의 「화해·협력단계」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단계별 기본규범과 국가형태)

단 계	기본규범	국가 형태
화해·협력	기본합의서	분단국가
평화체제	민족공동체헌장	남북연합
민족통일	통일헌법	통일국가

따라서 「기본합의서」는 제2단계인 평화체제의 기본규범인 「민족공동체헌장」과 그 성격을 달리함은 물론, 제3단계인 통일국가의 기본규범인 「통일헌법」과도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에서의 상호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다각적인 제분야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쌍방의 체제와 이념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합의서」는 장차 「민족공동체헌장」이 마련될때까지 남북간의 화해·군축·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규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만들어질 각 분야별 「부속합의서」는 당연히 「기본합의서」의 기초와 내용의 테두리내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3. 한시적 잠정성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현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단실체로서의 남북간에 적용되는 특수한 합의문서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는 내용상 효력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 성격상 상기한 바와 같이 「화해·협력단계」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며 「남북연합」 형성, 또는 통일국가형성 이전까지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일종의 「잠정협정」(modus vivendi)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잠정협정」이라 함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쌍방이 과도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맺는 약속으로, 국제법상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편의적으로 체결하는 잠정적인 협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추후 영속적이고 상세한 협정으로 대체되는 것이 통례이다.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남북연합」이 형성되게 되면 「기본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남북연합」의 기본규범인 「민족공동체헌장」에 의해 대체되게 된다. 다만 통일국가 형성시까지 「기본합의서」의 효력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족공동체헌장」에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또는 「기본합의서」를 개정하여 「기본합의서」내에 그의 효력을 연장시키는 조항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Ⅲ.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

1. 개 관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남북화해(제1장), 남북불가침(제2장), 남북교류·협력(제3장), 수정 및 발효(제4장) 등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서문에서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1장에서는 남북화해에 관한 실천과제(제1조~6조)를 제시, 분단 47년동안 남북사이에 쌓여진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헐고, 민족성원 상호간에 화해와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불가침에 대한 쌍방의 확고한 약속을 내외에 선언하면서 그 이행을 보장해 나갈 구체적인 실천조치(제9조~13조)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제2장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앞으로 협의·추진해 나갈 실천과제를 열거하면서(제12조)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의 하나로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란 개념속에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와 함께 핵무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에 남북간의 최대현안인 북한의 핵개발저지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일부 여론은 본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된 것이다.

제3장에서는 남북간에 경제교류와 협력, 사람들의 왕래와 접촉, 기타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실시에 관한 규정(제15조~21조)을 두고 있다.

제3장은 남북 쌍방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목적이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비경제분야에까지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적 교류에 있어서는 1천만 이산가족을 비롯한 전체 민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유로운 남북주민(‘주민’을 북측의 반대로 합의서에서는 ‘민족구성원’으로 표기)간의 자유로운 왕래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재결합 등 인도적 문제해결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끊어진 철도·도로, 우편·전기통신의 설치·연결 및 우편·통신교류의 비밀보장(제19~20조)에 합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다각적인 협력과 대외공동 진출(제21조)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본합의서」에는 합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고 실행해 나갈 협의·실천기구(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연락사무소 등)에 관

한 조항들을 각 장마다 2~3개 항목씩 설정하고 있다.

2. 주요내용 해설

명 칭

[남과 북, 상대방]

「기본합의서」의 정식 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합의서 명칭에서 「남북사이」로 표현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 「기본합의서」의 채택으로 남과 북이 상호 국가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합의서」 본문에는 「남과 북」으로 표기하면서도 서명란에 정식 국호를 명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합의서」의 채택당사자는 남북한이며 「기본합의서」 이행과정에서의 행위주체가 남북한 정부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남」은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을 사실상 관할·통치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북」은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북을 사실상 관할·통치하는 정치적 실체로서의 북한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개념은 남한의 경우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관할·통치하는 인적·물적 영역, 북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그 인적·물적 관할영역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남과 북 및 상대방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정부당국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나, 분야별·사안별로 비당국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합의서]

「기본합의서」가 그 명칭을 「헌장」, 「선언」, 「성명」, 「장전」 등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합의서라고 표시한 것은 단순한 「정책의 선언」이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그 실천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규범」임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다.

「기본합의서」가 규범이라는 것은 「기본합의서」의 명칭 이외에 조항별로 된 형식과 내용, 그리고 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제반절차(제25조) 등으로 보아 명백하다.

서 문

「기본합의서」에는 서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문에는 「전문」인 경우와 「공포문」인 경우가 있다. 공포문은 법의 명칭앞에 게재되며 전문은 그 뒤에 게재된다. 「기본합의서」의 서문은 「기본합의서」 명칭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포문」이 아닌 「전문」이다.

전문은 그 법의 제정 유래, 기본정신과 원칙 등을 선언한 것으로서 그 법의 일부를 형성하고 각 조항의 해석기준이 된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재확인]

서문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

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에 표시된 「정책의 선언」으로서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 「기본합의서」에 민족의 통일추진 원칙으로서 재천명되었다.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자주통일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여기에서 「자주」는 남북 쌍방이 당사자로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고, 「평화」는 「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남북간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민족대단결」은 통일이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문의 이러한 선언은 「기본합의서」가 화해·협력에 의한 평화정착만을 목표로 하고 조국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족적 화해와 평화보장이 요구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족적 화해, 평화보장과 교류협력의 실현]

서문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통일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그리고 교류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잠정적 특수관계의 인정]

서문은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합의서」 서문에서 이러한 규정을 선언한 것은 남북한이 화해·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회복과 평화정착을 이룩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접근하려는 기본구상을 반영한 것이다.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다면 남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인정해야 할 것이나,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이에 역행·모순되는 국가의 승인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기본합의서」는 평화정착만을 목표로 하고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취지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기본합의서」에서 「특수관계」에 대한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특수관계」란 「중앙적 법률상의 정부 (central de jure government)」로 구성되는 대한민국과 「지방적 사

실상의 정부(local de facto government)」로 구성되는 정치실체인 북한의 관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규정이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제1조 : 체제 인정·존중

「기본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합의서」 제1조에만 「체제」라는 용어(북측 합의서 문안에는 「제도」로 명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체제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제기된다.

체제는 「실체」(entity)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정치제도의 권력 구조 또는 헌법질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에 있어서의 「체제」는 이념·제도·정권·인적 구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남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와 정치적 실체(정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체제의 인정·존중은 남북쌍방이 상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를 인정·존중하는 동시에 남북정부의 실질적 관할권을 인정·존중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한 정부가 한반도 문제해결의 일차적 당사자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체제인정·존중이 국제법상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서문에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상호 체제인정 조항을 설정한 것은 남북이 상대방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인정·존중」은 대외적 인정·존중의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대내적 인정·존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대외적·대내적 인정·존중의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대방의 내부문제 불간섭의 원칙을 고려해 볼 때, 여기의 「인정·존중」은 대외적 인정·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대내적 인정·존중은 제2조의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영, 보다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정·존중」은 대외적 인정·존중을 뜻하며 대내적 인정·존중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 상대방의 체제를 반영한 실정법을 대외적으로 인정·존중하여야 하나, 대내적으로 상대방의 실정법을 인정·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합의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대외적으로 용인해야 하나, 이를 대내적으로 수용하여 우리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든가, 국내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의 인정과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2조 : 내부분제 불간섭

「기본합의서」 제2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내부분제 불간섭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일반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보지 않으므로 국가를 전제로 한 일반 국제법상 원칙인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남과 북 사이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합의서」가 쌍방관계를 국가간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연합 회원국간의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합의서」에 내부분제 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부분제]

국제법상 「국내문제」는 대내·대외적으로 국가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는 사항 즉, 국가가 단독·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으로는 대내적 문제로서 정치제도 선택, 국적 부여, 군비규모 결정 등을 들 수 있고, 대외적인 외교문제로는 관세·이민, 쌍무적 군사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관행에 따라 국제평화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인권문제 등은 인류의 공동문제로서 내부문제가 아니다.

반면, 북한이 우리에게 상호 체제인정·존중원칙에 반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밀입국자 석방,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미군철수, 공산당 합법화 등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국내문제에 준하는 것으로 내부문제 간섭에 해당한다.

[간 섭]

「간섭」이란 국제법 주체가 국제법상 권원없이 일방의 의사를 타방에게 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강제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타방의 내부문제에 개입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간섭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한 권고나 제의, 또는 항의는 간섭이 아니다.

간섭의 유형에는 무력시위·무력행사·봉쇄 등에 의한 군사적 간섭, 반정부 소요·폭동선동·태업 등에 의한 정치적 간섭, 관세조작·수입규제·재산동결·외환조작 등에 의한 경제적 간섭이 있으며, 타방의 의사에 강제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면 모두 간섭이 된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국의 개입 등 조약규정에 의한 간섭, 국제법 위반에 대한 간섭, 자국민 보호 등 자위를 위한 간

섭, 상대측 정부의 요청에 의한 간섭,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제 핵사찰 등 유엔 및 국제기구 결의에 의한 집단적 간섭, 집단살해에 대한 인도적 간섭 등은 국제법상 적법한 간섭으로 간주되고 있다.

제3조·제4조 :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기본합의서」 제3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 비방·중상의 중지와 파괴·전복행위의 금지는 상대방의 체제 인정·존중을 위해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비방·중상]

「비방·중상」은 정부·정당 및 정부지원단체가 공식·비공식 매체를 통해 사실을 왜곡보도하거나 과대선전 및 비방으로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훼손하고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제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북한이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군부과쇼”, “미제식민지” 등의 표현은 비방·중상에 해당되어 「기본합의서」 제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권문제 실상 보도 및 개선 요구, 상대방의 정치·경제·사회 실상에 대한 학문적 비판, 개방·개혁 권고, 상대방 통일방안에 대한 이론적 비판 등 남북간의 민족동질성 회복이나 국제무대에서의 자긍심 앙양 등을 위하여 행해지는 선의의 비판·비평행위는

비방·중상으로 볼 수 없다.

[과과·전복]

「과과·전복」은 상대방 체제를 교란·와해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된 폭력·비폭력의 제 수단을 동원한 물리적 위협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간첩과송, 무장공비 침투, 요인암살, 테러, 선박·항공기의 납치, 주요시설 폭파 등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체제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행위와 비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체제위협 행위, 즉 반정부단체나 국제 테러집단에 대한 자금 및 편의제공, 반정부단체·세력에 대한 고무·지원 활동, 선전선동적 편지공세, 불온전단 살포 등도 과과·전복행위에 해당되어 「기본합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다.

제5조 : 현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과 북이 상호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해·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 정전상태]

국제법상 전쟁상태는 사실상 적대행위 또는 선전포고로 시작되어

평화조약의 체결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적대행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도 그 상태는 전쟁상태이며 평화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현재 「평화에 관한 합의」가 쌍방간에 채택되지 아니하여 아직 남북한은 전쟁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53년의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타방으로 하여 서명되었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는 국제연합과 북한·중국이며 대한민국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는 아니지만 한국은 전쟁의 주교전국이며 당시 국제연합군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하였는바, 국제연합군사령관은 국제연합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리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은 당연히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전협정 제60항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휴전후 3개월내에 소집한다」는 규정과 유엔총회 결의(1953. 8. 28) 및 베를린 미·영·불·소 외무장관 회담(1954. 2. 28)에 의거, 한국은 이미 제네바 정치회담(1954. 4. 26~6. 15)의 당사자로 참가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정치회담의 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가지며, 이점은 북한이 1974년 3월 25일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기 이전의 각종 제안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예컨대, 1973년 4월 5일 당시 정무원총리 김일의 대남제외와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의 「조국통일 5대 강령」에서 북한은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국제연합과 북한·중국간의 현 정전상태 또는 남과 북간의 현 정전상태라고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 정전상태」라고 표시한 것은 경우에 따라 전·후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여 화해·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동 제5조의 취지에 어긋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현 정전상태가 국제연합과 북한·중국간의 상태이든 남과 북간의 상태이든 불문하고 장차의 평화상태는 남과 북의 평화상태로 전환하려는 뜻이다.

환언하면,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 정전협정」이 「평화에 관한 합의」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 「평화에 관한 합의」는 남과 북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법상 휴전협정의 당사자와 그 후에 체결되는 평화조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일치됨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행이다. 특히 연합군을 편성하여 참전하는 경우는 휴전협정의 당사자와 평화조약의 당사자는 각기 별도로 정해지며, 양자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통례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국제연합과 북한·중국이든 국제연합·대한민국과 북한·중국이든 불문하고 장차 체결될 「평화에 관한 합의」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정전협정」 제60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계 각국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회담을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동 규정에 의거 1953년 8월 28일 유엔총회는 정치회담의 개최를 권고하는 결의〔GA/Res.711(VII)〕를 채택했다.

동 결의는 「정전협정」 제60항의 「관계 각국정부」의 범위를, 국제연합군측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16개 참전국, 공산군측에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원한다면 소련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동 결의에 의거, 상기 국가의 정부가 참가한(남아연방 불참) 제네바 정치회담이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문제의 정치적 당사자, 즉 「평화에 관한 합의」의 당사자는 상기 1953년 8월 28일의 유엔총회의 결의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합의서는 상기 유엔총회의 결의에 포함되어 있는 남과 북을 당사자로 하고, 관계 국가들이 보증하는 형식으로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제5조의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란 남과 북을 당사자로 하고 1953년 8월 28일의 유엔총회의 결의에 포함된 관계 국가들이 보증하는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기본합의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제6조·제21조 :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협력

「기본합의서」 제6조는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는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은 상대방을 상호 적대시하고 비방하는 태도를 취해 왔으나,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국제무대]

「국제무대」란 국제조직 또는 제3국과 관련된 국제관계를 뜻하는

것이나, 남북한간의 잠정적인 관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제연합 또는 제3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는 국제무대에 해당하나 남북한 대표만이 회합하는 회의는 그 회의장소의 한반도 내외를 불문하고 국제무대가 아니다.

[대결경쟁의 중지와 상호협력]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의 규정은 적대적 태도와 이기적 경쟁을 버리고 상호 지원·협력한다는 의미로서 국제사회에서도 상호 체제 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및 파괴·전복행위 금지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대립·경쟁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대등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공동으로”라고 표현한 것은 남과 북이 상호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인하려는 뜻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의 제 21조 전단 규정은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서로 지원·협조하고, 해당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이다.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

「대외」의 의미는 남측지역과 북측지역을 제외한 제3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나 국제행사 등도 포함된다.

또한 「진출」의 의미는 폭넓게 해석되어 제3국에의 합작투자, 국제 기구에의 가입 지원, 국제행사의 공동주최, 국제경기예의 단일팀 구성·참가 등이 포함될 것이다.

제9조 :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기본합의서」 제9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합의서」의 조항중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본합의서」 제5조에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9조에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무력행사금지의 규제장치는 2중으로 되어 있다.

이미 남북한이 각각 국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남과 북은 무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제9조에서 이 원칙을 쌍무적으로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무력불행사]

「무력」은 물리적인 힘에 의한 위협이나 사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쟁뿐 아니라 무력복구도 해당된다. 그러나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위권의 행사」나 국제연합에 의

한 「집단적 강제조치」(헌장 제7장)에 참여한 무력의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남북한은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국제연합헌장의 법적 구속을 받으며, 국제연합헌장 제103조는 “국제연합 가맹국의 이 헌장에 의한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과 북은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자위권의 행사와 집단적 강제조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합의서」 제9조의 무력행사는 자위권의 행사에 의한 무력행사와 집단적 강제조치에 의한 무력행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86년 9월 22일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의 「스톡홀름협약」 제11조는 “무력침공이 있을 경우,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대로 참가국들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에 대해 본래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력에 의한 침략]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는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영토에 침입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여기의 「무력침략」에는 간접침략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간접침략은 제4조의 전복행위에 대부분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침략(aggression)은 침범(invasion)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제법상 침략은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난다. 남북관계는 국가와 국가간

의 관계가 아니므로 침략이란 용어는 남과 북의 관계에서는 적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침범으로 해석해야 한다.

1932년의 「군축회의 안전보장위원회의 침략정의안」 제1조, 1933년의 국제연맹에 제출된 소련의 「침략정의안」 제1조, 1956년의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 이란·파키스탄의 「침략정의안」 제2조 등은 침략과 침범을 구별하고 있다.

1974년 12월 14일 유엔총회결의 3314(XXIX)에 의한 침략의 정의 채택에 따라 현재 유엔총회에 제기된 인류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범죄는 침략행위, 침략위협, 무력침략 준비, 타국 영토내에 무장반도 조직·고무, 타국내 내란·테러활동 조장 등 13가지이다.

제10조 : 남북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기본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제9조의 무력행사금지의 원칙과 함께 국가간 기본조약(우호선린협조조약)이나 불가침협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의견대립과 분쟁]

「의견대립」은 분쟁(dispute) 이전의 사태(situation)를 말한다. 그러나 일방의 요구가 아직 없거나 또는 일방의 요구가 있어도 타방의 거절이 없는 경우는 분쟁이 아니라 사태이다. 동조의 의견대립은 분

쟁이전의 단계이므로 사태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분쟁」이란 국제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견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상의 분쟁은 현행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에 입각한 분쟁인데 반해, 국제정치상의 분쟁은 현행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를 떠나서 그것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을 부인하는 분쟁이다.

분쟁은 종종 전쟁이나 무력사용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남북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전쟁이나 무력의 사용에 호소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

의견대립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대화(dialogue)는 토론을 통한 상호 양보와 타협에 의한 합의 도달이나 일치점을 찾아내는 협상(negotiation)이나 흥정(bargaining)과는 달리, 자기측 주장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서로가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자기측 주장을 취하는 회담(talks)으로서의 대화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합의서의 대화는 남북간의 상호이해·타협·조정 및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교섭 내지 협상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협상이란 “개인과 집단 또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자기

들의 어떤 공통적 이해관계를 조정·타협해 나가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 또는 “상거래에서 손익계산만을 따지는 흥정이 아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같이 대화와 협상은 적대·반목보다는 타협과 화합을, 일방주의 보다는 상호주의와 타협주의를 지향하는 긍정적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간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무력이나 폭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대립이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제1차적 방법이다.

그러나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주선, 중개, 조정 등의 분쟁해결 방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적 해결]

평화적인 해결방법에 따른다는 뜻은 무력이 아닌 정치적 또는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뜻이다.

정치적 해결방법으로서의 외교적 수단은 ① 분쟁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분쟁을 협의·해결하는 직접교섭 ② 회의형식을 통해 교섭의 공개에 중점을 둠으로써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는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 ③ 제3자가 직접·간접으로 분쟁에 개입, 분쟁당사자들의 양보를 유도하는 주선 또는 알선과 중개 ④ 당사자들이 협약에 의해 미리 설정한 제3자적 국제기관에 문제해결을 맡기고 이 기관이 제시하는 분

쟁해결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조정 등이 있다.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다. 남북한이 모두 국제연합에 가입했으므로 국제연합헌장 제9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남과 북이 상호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 :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기본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소간에 임의로 설정한 38° 군사분계선이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현재 불가침 경계선을 명백히 해 둘 필요에 따라 이 규정을 두게 되었다.

[불가침 경계선]

제11조는 「경계선」으로 표시하고 「국경선」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불가침협정에서 「국경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통레이나 남북한간의 관계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국경선」이라 하지 않고 「경계선」으로 규정한 것이다.

[군사분계선]

남북한간의 경계선은 1945년 9월 2일 연합권 최고사령관의 「일반 명령 제1호」에 의한 38° 선과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에 의한 「분사분계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이 근 40년동안 남과 북을 분계해 온 현실을 존중하여 「군사분계선」을 남북한의 「경계선」으로 정한 것이다.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육상과 해상을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육상의 경우, 남측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정전협정 제13항 ㄴ목)이며, 북측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북의 구역이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에 관한 관할권은 연합군사령관과 군사정전위원회에 있으며, 군사분계선 이북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은 북한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및 군사정전위원회에게 각각 있으나(정전협정 제8조~제10조), 이들 지역도 각각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상의 경우 육상의 경우처럼 「정전협정」에 남북간의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사실상 국제연합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서해의 「북방경계선」과 동해의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북한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휴전협정후 20년간 남북한에 의해 관행으로 유지·준수해 왔으므로, 남북간의 해상구역은

「북방경계선」과 「군사분계선 연장선」으로 구획되는 것이다.

정전협정은 해상경계선과 관련하여 육지나 섬을 기초로 그 인접수역 존중, 6·25전의 관할권 존중, 서해 5개 도서군은 한국측이, 나머지 섬은 북한측이 관할할 것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북방경계선은 이러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다.

제12조 :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

「기본합의서」 제12조는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남북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군사연습의 통보와 통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공격용무기(공격능력)의 제거를 먼저 실시한 후 단계적인 군축을 추진토록 규정한 것이다.

우리측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이 이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이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협의·해결할 문제에 포함시켜 규정한 것이다.

[군사적 신뢰조성]

「군사적 신뢰조성」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1975년 8월 1일 유럽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헬싱키 최종결의」(Helsinki Final Act)에는 「신뢰구축조치」(CBM)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결의의 이행을 위해 1986년 9월 19일 「스톡홀름협약」(Stockholm Document)이 채택되었으며 동 협약에는 「신뢰 및 안보구축」(CSBM)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합의서」 제12조는 「스톡홀름협약」의 내용을 일부 원용한 것이다.

요컨대, 「기본합의서」 제12조의 「군사적 신뢰조성」이란 남북한이 상호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아니할 것이며, 군비의 유지는 상대방이 공격해 올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뢰를 갖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제반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인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는 우선 군사훈련·기동의 사전통보로 의구심을 배제한 후 군사훈련·기동의 규모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통제」는 「통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방배치 부대의 후방이동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는 DMZ내에서 정전협정을 준수, 정전협정대로 DMZ를 완충지대화하여 상호 무력충돌의 위험을 제거하고 전쟁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DMZ를 정전협정대로 원상회복하려면 공용화기·자동화기의 제거, 민정경찰(1,000명) 초과요원 철수, 공동감시소조 활동 부활, 남북공동감시단 구성·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는 공동학술조사·공동어로작업의 실시, 특정 지역에 면회장소·공동경기장·회의장·우편물 교환소 등 교류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숙박시설·교역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합의에 따라 「평화시」로의 확대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군인사 교류문제」는 군 인사간의 상호 방문을 통해 그동안 쌓인 적대감을 풀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신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군사정보의 교환문제」는 상호간에 군사활동에 대한 투명도를 향상시켜 군사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여기서는 국방비·병력등에 관한 자료의 공개 및 교환이 포함될 수 있다.

[군 축]

「기본합의서」 제12조의 군축 즉, 「군비축소」(disarmament)는 「군비통제」(arms control)와 「군비의 영토적 제한」(territorial limitation of arms)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군비축소, 군비감축(arms reduction), 군비제한(limitation of armaments), 군비통제 등은 여러가지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군비통제는 군비축소, 군비감축, 군비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제12조의 「군축」은 포괄적인 의미의 군비통제로 해석해야 한다.

「군비의 영토적 제한」은 통상적 의미의 군축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군비의 공간적 제한 즉, 일정한 지역의 비무장화를 의미하며, 이를 중립화(neutralization) 또는 비무장화(demilitarization)라고 한다.

남북사이의 군축은 공격용 무기의 후방이동, 군사비행장의 위치제한 등 군비의 영토적 제한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기본합의서」 제12조의 「군축」은 「군비의 영토적 제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13조 :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기본합의서」 제13조는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요한 수단이다.

제12조에서 대부분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관련 사항이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되었으나 군사당국자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의 독립된 군사적 신뢰구축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측은 1982년 2월 1일 「20개 시범실천사업」 제20항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시한 이래, 주요 대북제안시 수차례 군사당국자간 직통

전화 설치를 제안해 왔으며,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의 하나로 “한국의 국방부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간의 직통전화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반면에 북한은 1988년 11월 7일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처음 제시한 이래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방안」의 하나로 주요 제안에 포함시켜 왔다.

따라서 남북한이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만 합의하면 당장 실현가능한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1972년 7월 4일 「남북 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 운용방식이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발적 무력충돌]

「기본합의서」 제13조의 「우발적」 무력충돌은 어느 일방의 「기도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3조는 직통전화 설치의 목적을 「우발적」 무력충돌과 그의 확대 방지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사이의 어떤 무력충돌이 「우발적」인지 「기도적」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발적」 무력충돌은 어느 일방의 「기도」에 의한 무력충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동

조의 「군사당국자」는 군사문제에 관한 당국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측에서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북측에서는 인민무력부장과 북한군 총참모장을 군사당국자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직통전화는 현재 남북간에 운용되고 있는 유선전화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의 목적이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방지라는 점에서 볼 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전화, 나아가 FAX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제15조·제16조 : 경제 및 비경제 교류·협력

「기본합의서」 제15조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서서의 교류와 협력은 통일과정에서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에 필히 요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이질화된 민족사회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제15조와 제16조는 경제교류·협력과 기타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족내부교류]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라는 의미는 남북한간의 물자교류가 국가와 국가간의 무역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기본합의서 서문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연유되는 것이다.

우리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남북간의 물품이동을 수출·수입이 아닌 반출·반입으로 규정하면서 상호간 반출·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내부무역으로 간주, 관세 및 기타 국제무역에 시 고려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여러 분야]

제16조는 여러 분야에서서의 교류와 협력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과학·기술, 문학·예술, 출판·보도 등”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예시된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분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한은 「여러 분야」의 내용에 종교부문이 포함되는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다.

제17조·제18조 : 자유왕래·접촉 실현과 이산가족문제 해결

「기본합의서」 제17조는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

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인적 교류에 관한 규정이고, 제18조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한 규정이다.

[민족구성원]

정부는 「7·7특별선언」을 통해 민족구성원의 범위를 남북 및 해외 동포로 규정하였으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조국을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제17조에 규정된 민족구성원의 의미는 남북한 주민과 해외동포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왕래」란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며, 「접촉」이란 전화·편지 및 회합을 통한 상호의견교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 쌍방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왕래·접촉일지라도 쌍방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왕래와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산가족·친척]

「이산가족·친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우리측은 1985. 8. 27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헤어질 당시의 친족과 그후 출생한 자녀를 「남북왕래가족」으로 규정하고, 친척의 범위를 방계 8촌, 처가 및 외가는 4촌으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기타 인도적 문제]

기타 인도적 문제의 개념과 범위는 이산가족·친척의 서신거래, 왕래·상봉·방문 및 재결합이외의 비정치적인 문제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측은 1985. 5. 28 제8차 적십자 본회담에서 「기타 인도적 문제」로 사망자의 유품·유골 송환, 분묘이장 등을 예시한 바 있다.

제24조 : 수정·보충

「기본합의서」 제24조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하여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일반적으로 조약의 경우 개정의 질과 양에 따라서 Amendment와 Revision으로 구분되는데 Amendment는 조약의 개별 조항내지 일부 조항을 고치는 것이고, Revision은 조약규정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합의서 영문해석을 Amendments로 한 것에 비추어 보면 본 조의 의미는 일부조항 및 개별조항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약개정(條約改定)의 정상적 방법은 당사자들의 합의서에 의하면 「기본합의서」가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조약개정(條約改定)의 일반원칙(一般原則)을 강조한 점이다.

특히 규정(規定)의 수정·보충(補正)이 갖는 특별한 의미(意味)는 향후 상황변화(情狀變化)에 맞추어 합의서(合意書) 의무이행(義務履行)을 위한 보장수단(保障手段) 등에 관한 규정(規定)을 넣을 수 있는 여지(餘地)를 남겨 놓았다는 점(點)이다.

제25조 : 발효절차

[발효에 필요한 절차]

「기본합의서」 제25조(第25條)는 “이 합의서(合意書)는 남과 북(南與北)이 각기 발효(發效)에 필요한 절차(程序)를 거쳐 그 문본(文本)을 서로 교환(交換)한 날부터 효력(效力)을 발생(發生)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다.

이 조항(條項)은 종결조항(最終條項) (final clause), 또는 형식조항(形式條項) (formal clause) 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此)에는 일반적으로 내용(內容)과는 상관(상관)없이 조약(條約) 그 자체(自身)에 관한 문제(問題), 즉 조약문(條約文)의 인증절차(認證程序), 조약(條約)의 효력발생(效力發生) 절차(程序) 및 시기(時期) 등이 규정(規定)되어 있다.

「기본합의서」는 효력(效力)의 발생시기(發生時期)와 절차(程序)에 관해 규정(規定)하고 있는 바(바), “각기 발효(發效)에 필요한 절차(程序)”란 남북(南北) 쌍방(雙方)이 각기 합의서(合意書) 효력발생(效力發生)을 위한 국내법적(國內法上) 절차(程序)를 의미(意味)하는 것으로 남북한(南北韓)이 반드시 같은 절차(程序)를 밟(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의회(議會)의 비준동의(批准同意)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본의 교환]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라는 의미는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로부터라는 뜻이며, 이는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를 서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여기에는 비준서 등의 교환에 의한 방법과 교환을 확인하는 의사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본합의서」는 그 성격상 전자의 방법을 채택하면서도 비준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문본」이라 하였다.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의미는 남과 북사이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이며, 이는 남과 북의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할 경우 「남북기본합의서」를 국제연합과 그 연합기관에 대해 원용할 수 있다.

국제연합헌장 제102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가능한 조속히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조약은 국제연합의 여하한 기관에 대해서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화해공동위원회

〈목 차〉

I. 70년대 회담시 「남북화해」에 대한 쌍방 기본입장	53
1. 7·4 남북공동성명 「통일3원칙」 해석	53
2. 체제 인정·존중 및 내부분제 불간섭	55
3. 비방·중상 중지 및 파괴·전복행위 금지	57
4.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58
II.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 타결과정	67
1. 개황	67
2. 타결과정 및 쌍방제의 비교	72
3. 주요 쟁점사항	82
III.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타결과정	89
1. 개황	89
2. 타결과정 및 쌍방제의 비교	102
3. 주요 쟁점사항	135

I. 70년대 회담시 「남북화해」에 대한 쌍방 기본입장

- 70년대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90년 9월 남북고위급회담이 성립되기까지 「화해분야」와 관련된 회담은 「남북조절위원회」회의 (72. 10. 12-73. 6. 13) 및 부위원장 회의 (73. 12. 5~75. 3. 14), 조절위 서울측·북한「조국전선」간 「변칙대좌」(79. 2. 17~79. 3. 14), 그리고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80. 2. 6~80. 8. 20)등이 있었으나
 - 「화해분야」에 대한 쌍방의 입장표명은 주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본회의, 부위원장회의 그리고 이후 일련의 제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 이를 현 남북기본합의서와 「화해분야」부속합의서 체계에 따르면 ①7.4남북공동성명 「통일3원칙」해석 ②체제 인정·존중 및 내부문제 불간섭 ③비방·중상 중지 및 파괴·전복행위 금지 ④정전상대의 평화상대로의 전환 문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1. 7.4 남북공동성명 「통일3원칙」 해석

- 7.4 남북공동성명은 발표직후부터 남북 쌍방이 합의사항(특히 제1항의 통일3원칙)의 해석과 적용방법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는 시종 격렬한 논쟁으로 일관되었음.

- 우리측은 통일3원칙, 즉 자주·평화통일·민족적 대단결의 도모를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의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 쌍방이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해 공동성명 제2~6항의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겨 실적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남북간 오해와 불신의 제거, 이해와 신뢰의 증진, 사회적 이질화의 극복과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주장하면서
 - 구체적으로 통일3원칙의 구현을 위해 ①상호체제부정 지양 ②상대방 체제 이해 ③상대방 체제 내부분제 비난·간섭 금지 ④상대방에 자기 체제 강요 자제 ⑤자기 자기 체제에 입각하여 국민복지 증진 ⑥체제를 초월하여 민족 동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관계 조성 ⑦체제와 체제간에 7.4성명에 입각한 대화 추진 등을 제의하였음.(제1차 본회의)

- 북측은 『공동성명에 입각한 대화와 남조선의 반공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 우리측에 대해 ①반공정책 포기, 공산주의 용납 ②주한 미군 철수 및 일본의 재침책동 방지 ③공산주의자를 포함한 정치범석방 ④평화통일 반대활동 금지 등을 요구하고
 - 최고위급회담 개최와 연방제 실시를 주장하였음. (제2차 공동위원장회의)

〈남북 쌍방의 통일 3원칙 해석〉

〈우리측〉

- ▲ 자주 : 남북당사자 해결을 의미(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등)
- ▲ 평화 : 폭력수단에 의한 통일을 포기(북한의 대남혁명노선포기 필요)
- ▲ 민족대단결 :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단결이 실현가능

〈북 측〉

- ▲ 자주 : 외세 배격을 의미(주한미군 철수 등)
- ▲ 평화 : 군비감축, 주한미군 철수, 불가침선언 우선 채택
- ▲ 민족대단결 : 국가보안법 폐기, 반공정책의 포기,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를 전제로 「남북정치협상회의」등의 개최를 통한 연방제 통일 실현

2. 체제 인정·존중 및 내부분제 불간섭

가. 우리측

- 우리측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시 남북관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쌍방이 각기 자기의 체제를 보호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내적 질서에 대해서는 간섭함이 없이 교류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서

상호 사회개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 '73. 6. 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6.23선언」을 통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 '82. 1. 2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시에도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제3항에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인정하여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 것』을 재의한 바 있음.

나. 북 측

- 북측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 「군비축소」, 「주한미군 철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폐기」,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 석방」등 우리측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통일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재의하였으며
- '73. 6. 23 김일성의 「후사크」 환영대회 연설에서는 통일방안 협의를 위한 「대민족회의」 소집, 연방제 실시, 연방공화국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주장하는 등
-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선」정책에 입각하여 우리측의 주장을 「두개조선 조작책동」, 「분단고착」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측 내부문제에 간섭해 왔음.

3. 비방·중상 중지 및 파괴·전복행위 금지

- 남북 쌍방은 7.4 남북공동성명 제2항에서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공동위원장 회의에서는 『'72. 11. 11. 0시를 기해 대남·대북방송,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방송 및 삐라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그러나 북측은 '72. 11. 11 이후에도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 (현재의 「민민전」 방송)이라는 대남 흑색방송을 계속하는 한편, 남해안 무장공비침투('73. 3~5월), 휴전선일대 남침용 땅굴굴착('74. 11월 발견)등 우리측에 대한 파괴·전복행위를 자행하였는바
 - － 우리측이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 비방·중상 중지와 폭력에 의한 대남적화기도 포기를 촉구하자, 오히려 『남측의 정치적 음모·조작을 중지하라』고 강변하였음.
- 특히 우리측은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주체인 상대방 정부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는 신뢰구축을 위한 초보적 요구로 보고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해 왔으나
 - － 북측은 7.4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도 우리측을 강도높게 비방·중상해왔을 뿐만 아니라 박대통령 저격사건, 버마 암살폭발사건 등 우리 최고당국자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전복행위까지 불사해왔음.

4.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가. 우리측

- 우리측은 6.25전쟁의 실질적인 교전당사자이며 현재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이 당연히 평화체제로의 전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시 남북간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해 우선 상호신뢰회복과 북한의 대남폭력혁명노선의 포기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 '74. 1. 18 박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

나. 북측

- 북측은 당초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 「긴장완화 및 군사적 대치 해소를 위한 5개항」을 제시하면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으나
 - * '73. 6. 23 「후사크」 환영대회 김일성 연설에서도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등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제시
 - '74. 3. 25 최고인민회의에서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처음으로 제의한 이후, 남북간에는 「불가침선언」을, 미·북한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른바 「3자회담」논리를 고집해 왔음.

※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쌍방주장 비교

〈공동위원장 회의(1~3차)〉

- * 제1차 회의 : 1972. 10. 12, 판문점 「자유의 집」
- * 제2차 회의 : 1972. 11.2-4, 평양 「만수대의사당」, 「모란봉초대소」
- * 제3차 회의 : 1972. 11. 30, 서울 「영빈관」

우 리 측	북 측
○ 조절위는 다방면의 유능인사로 구성	○ 조절위는 쌍방의 장관급으로 구성 * 남북합작을 실현시킬 수 있는 권능기관이 되도록 구성
○ 상대방체제 부정, 간섭을 지양	○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다방면의 합작과 단결을 실현
○ 대남·대북방송, 휴전선 확정기 방송 및 뼈라살포 중지	○ 남북합작의 실현을 위하여 남측이 - 반공정책 중지 - 미군철수 및 일본의 재침 방지 - 언론·집회·결사 등 정치
○ 판문점내 공동사무국 건물을 공동건축	

우 리 측	북 측
	적 자유와 정당활동 자유, 정치범 석방 등 민주주의 발양 -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자들의 활동 불허

〈남북조질위원회 본회의(1-3차)〉

- * 제1차 회의 : 1972. 11. 30-12. 2, 서울 「영빈관」
- * 제2차 회의 : 1973. 3. 14-16, 평양 「모란봉초대소」
- * 제3차 회의 : 1973. 6. 12-14, 서울 「영빈관」

〈제1차 회의〉

우 리 측	북 측
○ 상대방 체제를 부정, 비난, 간섭하지 않고 자기 체제를 상대방에 강요함이 없이 민족적 동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관계 조성 ○ 비정치·군사분야에서 시작하여 정치·군사문제로 이행 - 군사문제 관련 북측 제의는 시기상조	○ 상호신임의 표시로 군비경쟁 · 무력증강을 중지하고 병력을 축소 - 군사대표자회담 개최 ○ 다방면적 합작, 특히 문화, 경제분야에서의 합작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화합작위원회 및 경제합작위원회를 구성·운영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절위 구성·운영 합의서」에 의거, 간사회의 구성 및 공동사무국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회의에서 조절위 운영세칙 마련, 경제 및 문화분야 협력을 위한 실무자회의 구성 ○ 최고위급회담은 여건이 조성된 후에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위급회담을 조속히 개최

(제2차 회의)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절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절위 운영세칙, 간사회의 운영세칙, 공동사무국 설치규정을 조속히 제정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공동사무국 건물 공동건축 ○ 군비축소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위해서는 신뢰회복과 폭력혁명노선 포기가 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장완화 및 군사적 대치 해소를 위한 5개항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중지 - 10만 또는 그 이하로 감군 - 외국으로부터 무기와 군사물자 반입 중지 - 미군을 포함한 외군철수 - 상기문제해결 및 무력분행사를 담보하는 평화협정 체결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사회·문화분과위원회 우선설치 — 설치문제를 간사회의에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문화분과위원회등 5개 분과위원회를 일괄설치 ○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제3차 회의)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절위, 간사회의, 공동사무국 등 3개 운영세척 마련 — 판문점에 공동사무국 건물 공동건축 ○ 사소한 합의사항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시기상조 ○ 경제분과위 및 사회·문화분과위 우선설치, 사업추진 — 경제분야 : 경제인·물자·과학기술교류, 자원공동개발, 상품전시회 교환개최, 商社의 교환 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회의에서 제시한 군사 5개항 우선토의 — 남북간 신의있는 대화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중지 필요 ○ 5개 분과위원회 일괄설치

우 리 측	부 측
<p>- 사회·문화분야 : 학술·문화 교류, 체육교류 및 단일팀출전, 영화·무대에 술교류, 민족사 공동연구, 언어보존·연구, 사회단체·인사교류, 기자교류 및 상주지사교환, 통신교류, 관광교류 및 사회개방</p> <p>* 『사업진척에 따라 분과위를 구성』기로 한 「분과위구성·운영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2개 분과위 우선 설치가 타당</p> <p>○ 정치협상회의 개최문제는 조절위가 본궤도에 올라 정치분과위 등이 구성될 경우 해결 가능</p>	<p>○ 남북조절위와는 별도로 정당·사회단체대표와 각계각층인사가 참가하는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시급히 소집</p>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1-10차)〉

* 기 간 : 1973.12. 5-1975. 3.14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절위 확대개편 범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정당·사회단체 인사를 참가시켜 10명 내외로 구성 - 북측 주장대로 구성할 경우, 실질토의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절위의 확대개편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범위 : 국내외 60~70개 정당·사회단체 인사 및 각계각층의 개별인사 - 참가인원 : 당국(5명정도), 정당·사회단체(5-20명), 다수의 개별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조절위회의 개최일자에 합의할 것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절차문제 실무자에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회의에서 조절위 개편안을 철회하고 조절위는 존속시키면서 별도의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문제는 조절위를 정상화하여 토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절위와 병행하여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정당 및 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원칙적 요구 제시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일자, 절차 등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3선언 철회 - 반공정책 중지 - 미군철수와 일본재침 방치 - 민주주의의 발양과 정치범 석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3선언과 남북불가침협정 체결 수락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3선언은 두개조선 조작정책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제도적으로 고정화시키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에 의한 대남적 화기도 포기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수원 32호, 33호)피격 - 비무장지대내 땅굴 - 라디오·TV 방해전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이 주장하는 「지격사건」 등은 정치적 음모·조작 ○ 통일을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회담할 수 없으므로 간사위원(정홍진)교체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대통령 암살기도사건 시인·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 	

Vertical line of text, possibly a page number or separator.

Ⅱ.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 타결과정

1. 개 황

- 남북 쌍방은 '88년 12월 총리 명의의 서신 교환을 통해 남북고위당국자간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 이를 위해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각기 5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예비회담을 개최키로 하였음
- 쌍방은 '89년 2월 8일 제1차 예비회담을 개최한 이래 '90년 7월 20일까지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진행하여
 - 남북고위급회담의 명칭, 의제 등 실무절차문제를 타결하고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 교환하였음
- 이에 따라 90년 9월 4일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총 8차례의 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는 바,
 - 남북 쌍방은 제3차 회담(90.12, 서울)까지 합의서 채택과 관련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으나
 - 제4차 회담(91.10, 평양)에서 합의서의 명칭과 내용 구성 체계에 합의한데 이어, 제5차 회담(91.12, 서울)에서 합의서 내용을 타결하고 이를 서명·채택하였으며

- 제6차 회담(92.2.평양)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이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군사·교류 협력 등 3개 분과위 구성·운영 합의를 비핵화공동선언과 함께 발표시켰음

○ 남북기본합의서 타결시까지의 쌍방 기본입장 및 합의서안(제안)은 다음과 같음

가. 제1차 고위급회담(90.9.4~9.7, 서울)

〈우리측〉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8개항)
-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방안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 남북간 군비감축 추진방향

〈북 측〉

- 회담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3개원칙
 - 7.4 남북공동성명 통일3원칙 재확인, 준수
 - 일방의 이익보다 민족공동이익 우선
 -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진전에 저촉되는 일 중지
-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방안」(6개항) 및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9개항)
 - * 남측과 불가침선언 채택,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야 대결상태가 해소된다고 주장

- 3개항 긴급문제
 - 유엔가입문제
 -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
 - 방북구속자 석방문제

나. 제2차 고위급회담 (90.10.16~10.19, 평양)

〈우리측〉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수정안」(전문만 수정)
 - * 전문에서 7.4남북공동성명 통일3원칙을 명시하는 등 부분수정
- 「3통(통행, 통신, 통상)협정안」
- 3개항의 당면 해결과제
 - 대남혁명노선 포기
 - 이산가족문제 해결
 -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 ※ 제2일 회의에서 북측의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에 대응하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제시

〈북 측〉

- 「북남 불가침에 관한 선언」
- 제1차 회담시 제기한 「3개항 긴급문제」를 다시 제기

다. 제3차 고위급회담 (90.12.11~12.14, 서울)

〈우리측〉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수정안」(10개조)
 - * 이산가족 재결합(제2조) 명시, 「분과위」설치 신설 및 일부내용 조정
- 「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
 - * 선 기본합의서 채택, 후 불가침문제 협의·해결 입장 강조
- 당면 해결과제(5개항)
 - 비방·중상 중지
 - 이산가족문제 해결
 - 남북 경제교류·협력 실시
 -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 총리간 직통전화 설치

〈북 측〉

- 「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
 - * 「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 채택후 「정치」, 「군사」, 「교류·협력」의 3개 분과위 설치
- 제1, 2차 회담시 제기한 「3개항 긴급문제」를 다시 제기

라. 제4차 고위급회담 (91.10.22~10.25, 평양)

〈우리측〉

-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5개조)
-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입장 천명

-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감축 추진, 상대방에 대한 적대정책 포기를 통한 평화의 제도화
- 북측의 대남혁명노선 포기, 핵무기개발 중단, 국제핵사찰 수용

— 당면과제

- 적십자회담 재개 및 70세이상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 실현
- 남북간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 설악산·금강산 관광자원 공동개발

〈북 측〉

- 합의문건 채택방법을 다음 두가지중 택일 제의
 - 「불가침」과 「북남화해와 협력·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두개문건
 - 「북남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단일문건
-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긴급제안)
- '92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방북구속자 석방, 박성희·성용승 무사귀환 보장 요구

〈쌍방 합의사항〉

- ▲ 형식 : 단일문건
- ▲ 명칭 :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 구성 : ①전문 ②남북화해 ③남북불가침 ④남북 교류
· 협력 ⑤수정 및 발효

마. 제5차 및 제6차 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 타결 및 발효)

- 남북 쌍방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91.12.10~13)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2.18~21)에서 이를 발효시켰음.

2. 타결과정 및 제의비교

가. 타결과정

- 남북고위급회담의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 타결과정을 쌍방 합의서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우리측

-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서」 (8개조) 중 「체제 인정·존중」 등 6개조항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8개항)중 「지명공격, 휴전선 일대 비방방송 중지」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등 2개항을 제시하였으며
-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7개조)중 「체제인정·존중, 내부분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등 2개조항을 제의하였고

-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불가침에 관한 방안」(8개조)중 「파괴·전복 정책노선 포기」, 「타국가와의 조약에 불영향」 등 2개조항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상기 내용들을 종합정리하고 형식면에서 가다듬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단일문건 형식으로 「남북간의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5개조)를 제시하였는 바, 그중 화해분야와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음.
 - ▲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3원칙 재확인과 통일시까지 남북관계가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규정(전문)
 - ▲ 상대방 체제 존중, 비방·중상 중지, 내부문제 불간섭(1조)
 - ▲ 상대방에 대한 침략, 파괴·전복활동 금지, 불가침의 영역은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각기 관할지역으로 설정(4조)
 - ▲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노력 및 평화체제 마련시까지 현 정전협정 준수(7조)
 - ▲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및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해 공동노력(10조)
 - ▲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11조)
 - ▲ 이미 타국과 체결한 양자·다자조약에 불영향(13조)

(2) 복 측

-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이 담긴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방안」(6개항)을 제시하였으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제시한 「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10개조)중 「사상과 제도 인정」, 「비방·중상 중지」등 4개조항을 제시하였음.
- 또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단일문건으로 「북남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을 제시하였는 바, 화해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상대방의 사상·제도 인정·존중(8조)
 - ▲ 상대방의 내부문제 불간섭(9조)
 - ▲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10조)
 - ▲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행위 금지(11조)
 - ▲ 각계 인사·동포들의 자유로운 왕래·접촉 실현(12조)

(3) 쌍방 절충내용

- 남북 쌍방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시의 쌍방 합의서(안)을 중심으로 합의서의 「체제」 및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4차례의 문안정리를 위한 대표접촉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시 대표접촉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여 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제1조-제8조)분야를 타결하였음.

(우리측)

- ▲ 전문에 『쌍방이 각기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유의하며』를 삭제,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을 추가

- ▲ 「신문·방송출판물 개방」과 「이산가족의 상봉·재결합 추진」을 「교류·협력」분야로 분류·조정
- ▲ 「서울·평양 상주연락대표부」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로 변경

〈북 측〉

- ▲ 전문에 「잠정적 특수관계」를 추가
- ▲ 「상대방 제도와 사상을 인정·존중」에서 「사상」을 삭제
- ▲ 「각계인사·동포 래왕접촉 실현」을 「교류협력」분야로 조정
- ▲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과 「판문점 연락사무소」 조항을 신설
- ▲ 「교류·협력」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분리하여 「화해」분야에도 이를 신설

나. 쌍방제의 비교

* 남북 쌍방의 제의 내용은 쌍방이 각기 중간제목이 설정된 단일 합의서 (안)을 제시한 시점 ('91.11.11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1차 대표접촉)을 기준으로 한 것임.

(1) 제1조(체제 인정·존중)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상호 존중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우 리 측	북 측
쌍방 당국간의 현실 인정과 상호존중의 바탕위에서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에 따라 상호실체 인정·존중을 합의서 제1조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우리측 주장을 「두개 조선」 논리에서 출발한 현상고착화, 분열지향정책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시 북남 불가침선언의 전문에 『사상과 제도의 인정·존중』으로 하자고 수정 제의
우리측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를 삭제하고 북측이 '91.11.23 책임연락관접촉에서 「사상」을 삭제하는 한편 「체제」와 「제도」가 같은 의미라는 점을 양해함으로써 합의	3차 대표접촉에서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를 삭제하고 북측이 '91.11.23 책임연락관접촉에서 「사상」을 삭제하는 한편 「체제」와 「제도」가 같은 의미라는 점을 양해함으로써 합의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 제2조(내부문제 불간섭)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체제인정·존중의 당연한 결과인 「내정문제 불간섭원칙」을 명시할 것을 주장	체제인정·존중과 마찬가지로 내부문제 불간섭 조항이 「두개 조선」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대하였으나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우 리 측	북 측
	북남 불가침선언 전문에서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로 수용
우리측이 「내정」을 「내부」로 수정, 별 이견없이 합의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 제3조(비방·중상 중지)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중지한다」
쌍방은 과거 합의(조절위 공동위원장 회의시)한 바 있었던 점에서 별 이견이 없었으며, 북측이 '91.11.23 책임연락관접촉시 「중지한다」를 「하지 않는다」로 자구 수정하여 합의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4) 제4조(파괴·전복행위 금지)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않는다」(제4차 회담시 신설)
북측은 당초 동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우리측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합의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제5조(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현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해당조항 없었음.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 아니라,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현 휴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장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	남북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 관련된 「불가침」부분에 포함시키되, 남측과는 「불가침선언」, 미국과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91.11.23 책임연락관 접촉에서 『북과 남은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를 신설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때 북측이 북남화해분야로 분류하고 우리측이 '91.11.25 책임연락관접촉에서 「평화체제」를 「평화상태」로 조정하여 합의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6) 제6조(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경쟁과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해당조항 없었음.
정치외교적 대결·경쟁을 중지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화해」 부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경쟁 중지 문제에 대외공동진출 내용을 포함시켜 「교류·협력」 부문으로 옮길 것을 주장
북측이 교류 협력 분야에 있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및 대외 공동진출」 조항을 분리, '91.11.15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2차 대표접촉에서 「화해」분야에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정치적으로 대결하거나...』조항을 별도 설정하고 '91.11.25 책임연락관 접촉에서 「정치적」을 삭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정치·외교분야에서의 대결중지는 「화해」부문으로, 경제·문화 등 여타분야는 「교류·협력」 부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데 합의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7) 제7조(「남북연락사무소」 구성·운영)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해당조항 없었음.

우 리 측	북 측
<p>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p>	
<p>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연락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남북 상설연락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p>	<p>상주연락대표부가 국가간의 방식이며, 남북연락기능은 기존의 연락기구와 향후 설치될 각 「분과위」·「공동위」등의 기능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삭제를 요구</p>
<p>명칭은 상주연락대표부(공동연락사무소, 상설 연락사무처, 상설연락사무소, 남북연락사무소로 변경), 설치 장소는 서울과 평양으로 할 것을 주장</p>	<p>명칭과 설치장소의 변경을 강력 요구</p>
<p>북측이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시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조항을 신설하고 우리측이 북측 주장을 일부 수용, 명칭은 남북연락사무소로, 장소는 판문점으로 조정함으로써 합의</p>	
<p>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p>	

(8) 제8조(「남북정치분과위원회」구성·운영)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본합의서 발효후 1개월이내에 본회담 테두리안에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북과 남은 화해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북남정치분과위원회를 이 합의서가 발표된 때부터 2개월안에 구성·운영한다』
정치분과위에 대한 기본적 인식차이가 없어 남북 쌍방은 자구수정을 거쳐 쉽게 합의에 도달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3. 주요 쟁점사항

가. 남북 기본관계의 설정

- 남북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남북 기본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였는 바,
 - 우리측은 남북기본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며, 특히 남북 모두가 유엔에 가입한 만큼 『쌍방이 각기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수락한 사실에 유의하며』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 북측은 단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것만 명시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음.

- 우리측은
 - 남북간의 관계가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내부의 문제, 혹은 특수한 관계』인 만큼 보다 분명하게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 『주권존중의 바탕위에서 평화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국제연합 헌장의 기본정신일 뿐만 아니라, 쌍방이 모두 이 헌장을 수락하고 유엔에 가입하였으므로 이를 전문에 담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 오히려 이들 내용들은 평화를 정착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며 신뢰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 「잠정적 특수관계」는 표현이 모호한 만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으로 표현하는 것이 명백하며
- 『국제연합 헌장의 의무 수락 사실을 유의』 명시 문제는 민족공동의 합의서에 국제적인 문제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 북측은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며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며,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여 합의

나.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 우리측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안한 휴전체제를 하루속히 남북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 6.25의 실질적인 교전당사자일 뿐 아니라 현재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고 있는 남북 쌍방이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주장하였음.

○ 반면에 북측은

-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의 체결 일방이 아닌 우리측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미·북한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였으며

- 정전협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유엔군 총사령관을 타방으로 해서 체결
 - * 남측은 유엔군 (16개국)에 속하지 않음.
 -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데 있어 할 일이 있고 남북간에 할일이 있는바, 남과 북이 할일은 불가침선언의 채택
 - 남측은 정전협정 체결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58년 2월 국회에서 「휴전협정 무효화 결의」까지 채택
 - 현실적으로 군사문제에 있어, 특히 남측 군대의 통수권이나 핵무기 발사권한을 유엔군 사령관이 보유
 -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는 화해분야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부분, 즉 불가침분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고집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측 최고당국자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기자회견(72.1.10)과 체코 「후사크」 당 제1시기 환영대회(73.6.23)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 북측의 우리측에 대한 당사자 자격 시비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매년 제출)에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운 유엔 회원국 군대(16개국)와 대한민국 군대를 대표

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했다』고 명시

- 정전의 당사자는 교전당사자의 군지휘관들이고,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평화의 당사자들간 문제
 - 조선인민군 총사령관과 중국 의용군 총사령관이 「남측의 정전협정 준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유엔군 총사령관 앞 서한(53.6.19)에 대해 우리측은 정전협정 이행을 약속(53.7.12)하고 이를 지금까지 성실히 준수
 - 우리측 군대의 통수권은 엄연히 우리측에 있으며, 단지 한·미 연합지휘체계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행사될 뿐이며, 이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을 미군 장교가 맡고 있는 것과 같이 전쟁발발에 대비한 장치중의 하나로서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와는 무관
-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에 관한 틀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정치적인 해결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정전협정 60조, 62조는 휴전협정이 장차 정치적 차원에서 영속적인 평화문제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대체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만큼 「화해분야」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함을 강조하였음.

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 우리측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이행단계로 들어가

면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편의보장과 지원 등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이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외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 분열주의적 사고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하면서

- 기본합의서 이행기구인 공동위원회들이 앞으로 구성·운영되면 연락이나 협의 임무를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되며
- 이미 판문점에 그런 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별도 기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명칭과 장소에 대해 재고해 보라고 요구

○ 이에 대해 우리측은

- 앞으로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가 운영되더라도 제각기 연락기능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연락업무를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며
-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적십자연락사무소가 다른 분야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못한 것으로서 정상화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북측의 입장을 수용하여 「판문점에 상설연락사무처를 설치하며, 앞으로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해 나가는 것으로 수정안 제시

라. 타조약과의 관계

- 남북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쌍방이 제3국과 기체결한 조약과의 관계에 대해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는 바,
 - 우리측은 남북 쌍방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남 : 106개국에 769개 조약, 북 : 92개국에 536개 조약)과 관련하여 『남북기본합의서가 쌍방이 이미 각기 다른 나라와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간의 조약이나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 북측은 남북관계가 오히려 타국과의 조약보다 우위에 놓여야 한다고 하면서 『본 합의서는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약, 협정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자고 주장하였음.

- 우리측은
 -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나 협정은 당사자간의 약속이므로 그 효력은 당사국에만 한정되고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으로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 본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우리측의 취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이 남북 쌍방이 그동안 각기 대외적으로 유지하여 온 법적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여 국제법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자는 것임을 강조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주체성의 상실일 뿐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나라의 평화보다 대결을 위하여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정을 이행하는데 규제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히 대결관념의 발로이고
- 더욱이 다른나라와 체결된 조약·협정들이 과거 대결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때 그러한 조약·협정을 우위에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협정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려 한다면 응당 남북기본합의서를 우위에 놓아야 한다고 고집하였음.

Ⅲ.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타결과정

1. 개 황

가 성립배경

- 남북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동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마련하기 위한 기구로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 － 3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통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마련,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채택·발효시켰음.
- 이에 따라 정치분과위원회는 '92.3.9 제1차회의를 개최한 후 본회의 7회, 위원접촉 5회, 위원장접촉 3회 등 총 15차례 회의 및 접촉을 진행하였음. (7차, 8차 남북고위급회담 기간중 각 1회 별도 위원장접촉)

나. 진행경과

(1) 제1차 회의 (92.3.9, 판문점 「평화의 집」)

〈우리측〉

- 정치분과위원회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화해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에 의거,

- 남북화해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 각 조항별 구체적 이행 대책에 관한 견해
를 밝혔음.
- 또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강조하면서 이에 관한 합의서(안)을 우선
토의·채택할 것을 제의하였음.
- * 북측의 핵사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화해·협
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남북대화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지적

〈북 측〉

-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정
치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남북연락사무소」 설
치·운영문제의 순서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관련한
부속합의서」(안), 「남북정치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안) 및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
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음.
- * 북측은 포괄적인 단일 부속합의서 채택과 단일 공
동위원회 구성을 주장

(2) 제2차 회의 (92.3.27, 판문점 「통일각」)

〈우리측〉

- 북측의 포괄적 단일 부속합의서 채택, 포괄적 단일 공동위원회 구성 주장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분과위 구성
· 운영 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 － 정치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까지의 조항을 이행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후 합의되는 내용을 부속합의서로 채택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 －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까지의 조항별 협의과제와 「법률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안)을 제시하였음.

〈북 측〉

- 부속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정치공동위」, 「남북연락사무소」관련 합의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면서
- － 「정치공동위」가 설치되면 「법률공동위」는 필요치 않으며, 「정치공동위」는 고위급회담 외적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3) 제3차 회의 (92.4.23, 판문점 「평화의 집」)

〈우리측〉

-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시한이 92년 5월19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문제를 우선

논의하여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를 발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또한 부속합의서 채택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조항별, 사안별 중요도와 완급에 따라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한 후, 쌍방 합의사항을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야 함을 지적하면서

—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까지의 이행대책을 담은 5건의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하였음.

- 「남북사이의 상호체제 인정·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에 관한 합의서」(안)
- 「남북사이의 비방·중상 증지에 관한 합의서」(안)
- 「남북사이의 파괴·전복행위 금지에 관한 합의서」(안)
- 「남북사이의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에 관한 합의서」(안)
- 「남북사이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한 합의서」(안)

〈북 측〉

○ 포괄적 단일 부속합의서를 우선 채택하고 단일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한 후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차 주장하면서

— 부속합의서 내용은 대체적인 문제들만 포함하도록 하고 세부문제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해야 하며

- 남북연락사무소를 상대측 지역에 두는 것은 분열지향적인 것이므로 자기측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쌍방은 제3차 회의시 합의에 따라 연락사무소 설치·운영 문제와 부속합의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위원접촉(92.4.29)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접촉을 종료하였음.

(4) 제7차 고위급회담시 대표접촉 및 정치분과위원장 접촉

○ 쌍방은 제7차 고위급회담(92.5.5.~5.8, 서울) 기간중 대표접촉과 각 분과위원장 접촉을 통해 쌍방간 이견의 타결을 모색하였는바,

- 특히 화해분야의 경우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 서명·발효시키고

▲ 명 칭 : 남북연락사무소

▲ 설치장소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자기측 지역

▲ 구 성 : 소장(국장급) 1명, 부소장 1명, 필요한 수의 연락관

▲ 필요부서 : 쌍방 합의시 설치

▲ 기 능 : 위임·의뢰되는 연락업무 수행,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 왕래·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제공, 연락사무소장간 전화 가설·운용

▲ 윤 영 : 소장회의 수시개최 및 연락

* '92.5.18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원명단 상호통보 및 운영개시

-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및 이행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 화해공동위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수의 실무협의회 설치

▲ 제8차 고위급회담(92.9.15~9.18) 이전에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작성 및 화해공동위 발족

(5) 제4차 회의 (92.5.19, 판문점 「통일각」)

〈우리측〉

○ 북측은 「일괄합의·동시실천」을 내세워 합의사항 실천을 미루어서는 안되며, 합의된 것은 즉각 실천에 옮기는 「전별합의, 즉시실천」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 북측의 부속합의서 작성을 전제로 제3차 회의시 제시했던 5건의 부속합의서를 각 장(章)으로 통합한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부속합의서부터 협의·해결한 후 공동위원회 문제를 협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음.
 - ▲ 구성 : 위원장 1명(차관급 이상),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 ▲ 기능 : 남북화해분야 해당부문의 부속합의서 이행
 - ▲ 발효 : 쌍방 총리 서명·교환으로 발효, 중요문건은 쌍방 총리 서명후 필요한 발효절차를 거쳐서 발효

〈북 측〉

- 부속합의서의 형식은 포괄적인 단일 부속합의서로 하되 내용구성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민족단합의 정신에 맞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우리측이 제3차 회의시 제시한 부속합의서(안)의 일부내용을 수용한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 ▲ 상대방 법질서 존중(1조 2항) : 신설
 - ▲ 상대방 대외관계 불간섭(2조 2항) : 신설
 - ▲ 객관적 보도는 비방·중상의 대상에서 제외(3조 4항) : 신설
 - ▲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 조작·유포 금지(3조 3항) : 추가·보안
 - ▲ 상대방 파괴·전복 외부세력·집단 행위 불가담(4조 3항) : 신설
 - ▲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

해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준수(5조 2항) : 신설

▲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조
(6조 1항) : 신설

▲ 민족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해외 대표부가 있는 지
역에서 공관장간 협의(6조 4항) : 신설

(6) 제5차 회의 (92.6.9, 판문점 「평화의 집」)

〈우리측〉

- 우리측은 제4차 회의시 제시한 우리측 부속합의서의
정당성에 대해
 -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의 「특수관계」는 남북관계가 민
족내부관계이면서 또 다른 한편 국제적으로 국제연
합 회원국간의 관계인 이중적 관계이며
 - 쌍방 법률 실태 및 문제점 조사를 위한 「법률실무협
의회」와 비방·중상 중지 실현을 위해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 구성이 필요하고
 - 제4장에서 「반드시 금지해야 할 파괴·전복행위」의
기본적 유형을 구체화하여 자기측, 상대측, 제3국을
막론하고 파괴·전복하기 위한 단체의 조직·결성·
지원·조장 등이 금지되어야 하며
 - 군사정전협정의 대체방안을 강구하되 현 정전상태의
평화체제로 전환시까지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

해야 하고

-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지, 남북의 해외공관간 협의창구 개설,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활동에서의 협력방안, 해외동포 권익 옹호등이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또한 제4차 회의시 북측이 제시한 부속합의서 수정안에 대해
 - 구체적 이행대책이 아니라 기본합의서를 세부화한 것에 불과하고
 - 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철회한 내용 및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음.

〈북 측〉

- 우리측 부속합의서 안에 대해
 - 「특수관계」를 이중적 관계로 규정하는 등 현상고착적, 분열지향적이며
 -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등 화해에 접촉되는 법을 존속시키겠다는 의도를 노정하고 있고
 -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문제와 관련, 「당사자 해결원칙」등을 내세워 미군의 계속주둔을 기도하는 등 외세의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7) 제6차 회의 (92.7.2, 판문점 「통일각」)

〈우리측〉

- 우리측은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 ▲ 하나의 장(章)으로 편성되어 있던 「체제 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을 별도의 장(章)으로 분리
 - ▲ 「이행기구」를 독립 장(章)으로 신설
 - 이행기구에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의 구성을 명시

〈북 측〉

- 『제8차 고위급회담 개최 이전에 부속합의서 작성문제, 화해공동위원회 발족여부는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우리측의 회담자세를 시비하였음.

〈쌍방 합의사항〉

- 쌍방은 부속합의서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 제목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 전문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 제2장 제목 : 체제(제도) 인정·존중

※ 쌍방은 제6차 회의시 합의에 따라 위원장 접촉(92.7.10)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별진전 없이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만 합의하였음.

▲ 부속합의서 제2장에서 제9장까지의 장(章)제목

* 제1장 「총칙」제외

▲ 제4장 (비방·중상 중지)제10조 :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장(수정·발효)

• 제32조 :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제33조 :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또한 쌍방은 위원장접촉시 합의에 따라 4차례 위원장접촉 (7.18, 7.30, 8.5, 8.19)을 갖고 각 조항별로 쌍방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특히 제4차 위원장접촉(8.19)에서 다음 4개 조항에 합의하였음.

▲ 제21조 :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 제24조 : 남과 북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하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 제25조 :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재외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재외공관(재외대표부)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 제30조 :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에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8) 제7차 회의 (92.8.28, 판문점 「평화의 집」)

〈우리측〉

- 부속합의서 작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북측이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기 때 문임을 지적하면서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된 남과 북의 두 정치실체간에 합의된 공식문서이며
 -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형성되는 남북관계는 두 정치실체간에 형성되는 특수관계이고
 - 두 정치실체는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임.
- 또한 부속합의서는 반드시 구체적 이행대책이 포함되

어야 하는 만큼 포괄적·선언적으로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음.

〈복 측〉

- 부속합의서 토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남측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 －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저촉되는 반동일적이며 분열지향적인 주장은 철회하여야 하며
 - － 부속합의서 작성에서 사대주의적이며 외세의존적인 내용은 절대 허용될 수 없고
 - －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의 지위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부속합의서 토의는 「일괄합의, 동시실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 「화해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였음.

- ※ 쌍방은 제7차 고위급회담시 합의한 대로 제8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부속합의서를 타결하고 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두차례(9.4, 9.8)의 위원장접촉을 갖고 상호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모색했으나 「총칙」등 중요 쟁점문제에 대한 별다른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접촉을 종료하였음.

2. 타결과정 및 쌍방제의 비교

가. 타결과정

- 남북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구체적 이행대책인 부속합의서 작성과 이행기구인 화해공동위 구성·운영을 위해
 - 92.3.9 제1차 정치분과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본 회의 7회, 위원장접촉 3회, 위원접촉 5회 등 총 15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 *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합의서 채택·발효
 - 부속합의서와 화해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의 일부조항들에 합의하고 부분적인 의견접근을 이루었을 뿐 쌍방의 기본입장과 관련된 「총칙」등 중요 쟁점문제를 타결하지 못하였으며
 - 결국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대표접촉과 정치분과위원장 접촉을 통해 이를 타결하고 쌍방 총리의 서명을 거쳐 화해분야 부속합의서와 화해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음.
- 쌍방의 부속합의서, 「화해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및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합의서」 타결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구성내용〉

▲ 전문

▲ 제1장 「체제(제도)인정·존중」(1조-4조)

▲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5조-7조)

▲ 제3장 「비방·중상 중지」(8조-14조)

▲ 제4장 「파괴·전복행위금지」(15조-17조)

▲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18조-20조)

▲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21조-24조)

▲ 제7장 「이행기구」(25조-26조)

▲ 제8장 「수정 및 발효」(27조-28조)

* 북측이 제시한 「국제기구들에 단일의석 가입」, 「국제 회의에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 「제3국의 상대방 이익 침해 행위 불가담」,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제3국과의 조약폐기」 등 4개조항은 부기로 처리

(1) 토의순서 및 부속합의서 형식(수)문제

○ 토의순서와 관련,

- 우리측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문제는 시한(92.5.19)이 정해져 있고 쟁점도 별로 없으므로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우선토의 채택하고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순으로 토의하자고 하였으나
- 북측은 부속합의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연락사무소 설치·운영문제의 순서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음.

○ 부속합의서의 형식(수)에 대해서는

- 우리측은 「건별합의·즉시실천」의 원칙하에 합의된 내용을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나가자는 입장에 따라 정치분과위 제3차 회의시 5건의 부속합의서를 제시하였으나
 - 「상호체제 인정·존중 및 내부문제 불간섭에 관한 합의서」
 - 「비방·중상 증지에 관한 합의서」
 - 「파괴·전복행위 금지에 관한 합의서」
 -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에 관한 합의서」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북측은 「일괄합의·동시실천」의 원칙을 고집하면서 포괄적 단일 부속합의서의 채택만을 고집하였음.
- ※ 제7차 고위급회담시 대표접촉과 정치분과위원장 접촉에서 「단일」·「복수」에 대한 분명한 언급없이 『제8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화해분야 부속합의서를 작성』키로만 합의

(2) 총칙문제

- 우리측이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의 「특수관계」를 『내부적으로 상호 실체를 인정·존중하고 대외적으로 국제연합 회원국간에 형성되는 2중의 관계』로 규정한 총칙을 제시한데 대해
 - 북측은 총칙이 실제인정론의 발현으로 반통일적 입

장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결사적으로 철회를 요구하였음.

- 우리측은 북측이 다음의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총칙」장의 철회를 고려하겠다고 제의하였음
 - 「관할권 인정·존중」, 「체제 인정·존중」, 「법질서 및 정부시책 불간섭」, 「외교정책·외교행위 불간섭」 등 우리측 4개 조항 수용
 - 「체제 인정·존중」중 「사상」, 「내부문제 불간섭 예외」, 「평화협정 전환후 평화유지 공동대책 강구」, 「국제기구 단일의석 가입」,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타국과의 조약 개정·폐기」조항의 삭제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주체」 명시등 북측 6개조항의 삭제 내지 수정.
- 결국 북측이 이들 대부분을 수용하여 쌍방간 절충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측은 「총칙」장을 철회하였음.

〈쌍방 절충내용〉

- ▲ 「사상」은 삭제
- ▲ 「외교정책 불간섭」은 「대외관계 불간섭」으로 절충
- ▲ 「관할권 인정·존중」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 인정·존중」으로 조정
- ▲ 「법질서 및 정부시책 불간섭」은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 불간섭」으로 조정
-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주체를 「남북사이의」로 명시

- ▲ 「국제기구 단일의석 가입」, 「타국과의 조약 개정
· 폐기」는 부기로 처리

(3) 제1장 체제(제도)인정·존중

〈우리측〉

- ▲ 「내부문제 불간섭」부분을 별도 「장」으로 분리
- ▲ 「국제적 지위 인정·존중」조항을 삭제
- ▲ 「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령과 제도의 개·폐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조항 및 「상대방 체제
소개 자유보장」조항과 관련, 절충안 제시

〈북 측〉

- ▲ 「체제 인정·존중」중 「사상」삭제
- ▲ 「상대방 당국의 권한·권능 인정·존중」조항 신설
- ▲ 「화해정신 및 조국통일에 배치되지 않는 조건에서의
상대방 법질서 존중」 조항을 삭제

(4)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우리측〉

- ▲ 「상대방의 대외관계 불간섭」조항에서 「외교행위·외교
정책」을 「대외관계」로 수정
- ▲ 「제3국과 맺은 쌍무·다무적관계 존중 및 불간섭」조항
을 삭제
- ▲ 「남북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조

항을 신설

- ▲ 「이행기구」조항을 별도 「장」으로 분리

〈북 측〉

- ▲ 「상대방 범질서 및 당국 시책 불간섭」 조항 신설
- ▲ 「민족공동의 이익, 통일, 기본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문제의 내부문제 불간섭 예외화」를 「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의 시정요구」로 수정
- 「외세의 온갖 내정간섭에 불가담」조항을 삭제

(5)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우리측〉

- ▲ 비방·중상 중지의 행위주체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영 언론기관을 포함한 공공단체」) 및 적용대상을 삭제
- ▲ 「비방·중상 중지의 규제대상」을 「언론·폐라 및 그밖의 다른 수단·방법」으로 수정
- ▲ 「비방·중상 중지의 예외」 조항에서 「학문적 연구」를 삭제하고 「객관적 보도」만으로 조정
- ▲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제8장 이행기구」로 이관

〈북 측〉

- ▲ 「상대방 당국 비방·중상 중지」조항 신설
- ▲ 「비방·중상 중지의 예외」조항 신설

- ▲ 「사실왜곡 및 허위사실 조작, 유포 금지」조항 등 몇가지 조항의 자구를 수정

(6) 제4장 파괴·전복행위 금지

〈우리측〉

- ▲ 「파괴·전복 행위의 구체적 유형 명시」 조항을 삭제
- ▲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준수」조항을 삭제

〈북 측〉

- ▲ 「테러단체 및 조직의 결성·지원·비호 금지」조항 신설
- ▲ 「상대방 파괴·전복 외부행위 불가담」조항을 삭제

(7)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우리측〉

- ▲ 「군사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방안 명시」 조항을 「현 군사정전협정의 성실한 준수」로 수정

〈북 측〉

- ▲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 성실준수」조항 신설
- ▲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에 「북남사이의」를 추가·명시
-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후,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유지 보장대책 협의강구」조항을 삭제

(8)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우리측〉

- ▲ 「뉴욕·제네바·비엔나 등의 남북대표부간 협의 정례화」조항과 「UNDP, ESCAP, UNIDO 등 국제기구에서의 상호 협력」조항을 삭제

〈북 측〉

- ▲ 「해외 대표부간 협의」조항 신설
- ▲ 「국제기구들에 단일의식 가입」, 「국제회의 등 정치행사들에 유일대표단 참가」, 「민족적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협정 개정·폐기」, 「제3국의 상대방 이익 침해행위에 불가담」 등 4개조항을 부기로 처리

(9)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우리측은

-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화해」부문의 이행·준수를 위한 실천기구와 관련, 남북정치분과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별로 필요한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 북측의 포괄적 단일공동위원회 구성 주장은 부당하며 우선 「남북법률공동위원회」와 「비방·중상 중지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의하였음.

○ 북측은 「화해」부문에서 하나의 종합적인 정치공동위원

회를 구성하는 것이 엄연한 쌍방 합의사항이라고 강변하였음.

○ 쌍방은 절충을 통해

-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그 테두리내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증상 중지 실무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명기하며
- 「기타 필요한 실무협의회」를 두기로 합의하였음.

(10)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 우리측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 화해의 상징적 의미를 갖도록 상대방 지역에 교환·설치하고 향후 인적·물적 왕래 증가에 대비한 각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면서
- 적십자 연락사무소와의 대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반면에 북측은 연락사무소의 별도 설치 불필요하며 현존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대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 정당·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전반적 연락업무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쌍방은

- 장소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키로 하고

- 직십자 연락사무소와는 별개 기구로 하며
- 「정당, 단체, 개별인사간 연락업무」는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로 절충하여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음.

나. 쌍방제의 비교

* 쌍방제의 및 주장은 우리측은 정치분과위원회 제4차회의시 제시한 부속합의서(안)을, 북측은 제5차회의시 제시한 부속합의서(안)을 기준으로 하였음.

(1) 제목, 전문

〈제 목〉

우 리 측	북 측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우리측에서 북측안을 수용하여 합의	
〈합 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전 문〉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라 한다)제1장 남북화해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자구 수정후 합의	
〈합 의〉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체제(제도)인정·존중(제1장 : 제1조-제4조)

〈제1조(상대방 체제 인정·존중)〉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 및 법질서를 존중하며, 이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문화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스스로 철회했던 「사상」표현을 포함시켜 모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철회를 요구	제도와 그 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사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상」의 명기가 필요하다고 주장

우 리 측	북 측
우리측이 「내부문제 불간섭」을 별도 「장」으로 분리하고 북측이 「사상」을 삭제함으로써 합의	
〈합 의〉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상대방 체제 소개의 자유보장)〉

우 리 측	북 측
해당조항 없었음.	『북과 남은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찬양하는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측이 북측 제의에 따라 『남과 북은 상호 신뢰회복의 차원에서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조항을 신설하고 「상호신뢰 회복의 차원에서」를 삭제, 북측도 「찬양하는», 「언론, 출판, 사상의」를 삭제하는 등 자구수정을 통해 합의 도출	
〈합 의〉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 인정·존중)〉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 정부의 해당지역에서의 관할권을 존중한다』	해당조항 없었음.

우 리 측	북 측
체제인정·존중의 핵심이 관할권 인정·존중이므로 「정부의 해당지역에서의 관할권 존중」은 당연하다고 주장	「정부」와 「관할권」이라는 개념은 국가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를 국가대 국가관계로 환원시키려는 분열지향적 의도라고 비난
북측이 우리측 제의의 따라 『북과 남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 존중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 합의	
〈합 의〉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4조(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정·폐기문제)〉

우 리 측	북 측
해당조항 없었음.	『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한다』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점진적 신뢰형성의 과정없이 바로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는 것은 성급한 비현실적 태도임을 지적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법을 두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반드시 「제거한다」는 용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
우리측이 『남과 북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법률실무협의회에서 상대방의 법제를 상호 비교·연구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합의내용에 저촉되는 법령과 제도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비·개선하는 문제를 협의·해결한다』라는 조항을 신설, 절충하여 합의	

우 리 측	북 측
〈합 의〉	
제4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3) 내부문제 불간섭(제2장 : 제5조-제7조)

〈제5조(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 불간섭)〉

우 리 측	북 측
「체제 및 법질서 인정·존중」과 함께 「불간섭」을 규정	『북과 남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도와 질서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자기의사를 상대측에 강요하는 일체행위를 하지 않는다』
상대방 내부문제 불간섭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행위이며, 객관적 사상이나 상태는 불간섭의 대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입장 표명	내부문제 불간섭의 대상이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내부문제 불간섭을 더욱 철저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며 「상대방의 법질서와 상대방 정부의 시책」에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
우리측이 「체제·인정 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을 분리하면서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법질서와 상대방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조항을 신설하고 북측이 『북과 남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수정안을 제시, 「시책」을 「당국의 시책」으로 조정하여 합의	

우 리 측	북 측
〈합 의〉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불간섭)〉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외교정책과 외교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대외관계는 민간급 국제교류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므로 내부문제 불간섭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며 정치실체가 외국과 맺는 외교정책과 외교행위가 그 취지에 맞다고 주장	남측 안이 제한적이어서 불간섭을 철저히 포괄하지 못하는 동시에 외세의존적인 조약과 협정을 존속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강변

우리측이 북측안을 수용하여 합의

〈합 의〉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의 시정요구)〉

우 리 측	북 측
해당조항 없었음.	『민족의 이익, 통일, 북남합의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5,6조에 구애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우 리 측	북 측
우리측이 애매모호한 내용을 예외의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내부문제 불간섭 전체가 무실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위원장접촉에서 절충, 합의	
〈합 의〉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비방·중상 중지(제3장 : 제8조-제14조)

〈제8조(언론·뼈라 등을 이용한 상대방 비방·중상 중지)〉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비방·중상 중지의 행위주체를 쌍방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영 언론기관을 포함한 공공단체로 한다』	『북과 남은 관영, 민영을 막론하고 어떤 언론기관이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상 민영언론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규제는 불가하므로 공공단체를 직접 규제하는 한편 민영언론에 대한 자율적 권고로 비방·중상 중지를 실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 표명	완전무결하게 비방·중상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민영을 막론하고 규제대상으로 해야 하며 남측이 체제특성을 거론하지만 언론에 대한 탄압 등의 실례를 고려할 때 민영언론 포함 반대는 비방·중상 중지 실천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주장

우 리 측	북 측
우리측이 『남과 북은 언론 및 그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북측이 이를 수용하는 한편, 「빠라」추가에 합의함으로써 최종 합의	
〈합 의〉	
제8조 남과 북은 언론·빠라 및 그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상대방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 중지)〉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는다』
쌍방간 별 이견없이 자구수정을 통해 쉽게 합의	
〈합 의〉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상대방 당국 비방·중상 중지)〉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 정부를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해당조항 없었음.
북측은 「정부」라는 표현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당국」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며, 우리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	
〈합 의〉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실왜곡, 허위사실 조작·유포 금지)〉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법질서와 각종 정책을 왜곡하거나 이에 관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 류포하지 않는다』
우리측이 「법질서와 각종 정책」을 「사실」로 변경하고 북측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며」,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기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써 합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객관적 보도의 비방·중상 중지 예외)〉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각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대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실상에 대한 학문적 견해 2. 상대방 통일정책과 방안에 대한 이론적 비판 	『북과 남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우 리 측	북 측
3. 상대방 인권문제에 대한 실 상 보도 4. 역사적 사실, 기록물이나 현 재 사실의 보도 5. 외국언론의 인용보도	
학문적 연구는 객관적 사실의 체계화로 진리를 탐구하는 작 업이고 건설적 비판의 토대이 므로 예외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학문적 연구는 포괄범위가 넓 고 거론의 심도가 깊어 비방· 중상의 정도도 커질 것이라며 반대
우리측이 『남과 북은 상대방의 실상, 각종 정책 등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와 학문적 연구는 비방·중상 중지의 대상으로 하 지 아니한다』라고 절충안을 제시한 후, 「학문적 연구」를 삭제합 으로써 합의	
(합 의)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 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비방·중상 중지 등))

우 리 측	북 측
비방·중상 중지의 규제대상으 로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을 규정	『북과 남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뼈라살포와 전연방송을 중지하 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측 을 자극하는 표어를 비롯한 모 든 게시물들을 제거한다』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이 독립조항으로 설정하여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자구수정을 통해 합의</p>	
<p>〈합 의〉</p>	
<p>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p>	

(제14조(군중집회 등에서의 비방·중상 중지))

우 리 측	북 측
<p>비방·중상 중지의 규제대상으로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군중집회와 국제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연설·토론』을 규정</p>	<p>『북과 남은 상대방과의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를 하지 않는다』</p>
<p>우리측이 독립조항으로 설정하여 『남과 북은 공공기관과 단체 및 집권정당이 주관하는 군중집회와 국제회의 등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공공기관과 단체 및 집권정당」이라는 행사주체 부분과 「국제회의」를 삭제하여 합의</p>	
<p>〈합 의〉</p>	
<p>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p>	

(5) 파괴·전복행위 금지(제4장 : 제15조-제17조)

〈제15조(모든 형태의 파괴·전복행위 금지)〉

우 리 측	북 측
<p>『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첩 및 무장계렬라의 조직, 훈련, 지원 또는 침투 행위 2. 상대방 주민의 포섭, 납치, 살상 행위 3. 상대방의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 기타 교통수단의 파괴, 납치 또는 그 탑승자의 억류, 살상 행위 4. 외국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상대측 인원에 대한 납치 또는 살상 행위 5. 상대방의 제반시설과 기물에 대한 파괴 행위 6.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의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 7. 기타 상대방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폭력,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 	<p>『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파괴, 정탐, 테로, 포섭, 납치 행위를 하지 않는다』</p>

우 리 측	북 측
<p>파괴·전복행위는 구체적으로 유형이 명시가 됨으로 해서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없도록 하여 공동위원회 구성시 바로 규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 피력</p>	<p>북측안이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행위를 다 금지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유형을 망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세부화하는 작업은 공동위원회 단계에서 하자고 주장</p>
<p>우리측이 6호를 독립조항으로 분리하고 북측이 「정답」을 삭제한후 쌍방이 문안에 대한 자구 수정을 거쳐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p>	

〈제16조(파괴·전복목적의 선전선동행위 금지)〉

우 리 측	북 측
<p>파괴·전복행위 금지 내용으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의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규정</p>	<p>『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선동행위를 하지 않는다』</p>
<p>우리측이 15조 6호를 독립조항으로 분리,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의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체제와 법질서」를 삭제하여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p>	

〈제17조(파괴·전복 목적의 테러단체 결성·지원·비호 금지)〉

우 리 측	북 측
<p>『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조직을 자기측 지역안에 결성하거나 이를 조장, 지원 또는 비호하지 아니한다』</p> <p>『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결성된 상대측 지역의 반체제 단체나 조직을 지원하거나 이러한 단체나 조직과 화합, 통신 등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p> <p>『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단체나 조직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p>	<p>해당조항 없었음.</p>
<p>반세기의 남북관계를 돌이켜 볼때 이 조항은 당연한 것이며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역설</p>	<p>우리측 조항이 남과 북, 해외 동포들속에서 파괴·전복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 삭제를 요구</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이 3개조항을 1개조항으로 통합하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조직을 결성하거나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를 제시하고 북측이 해당조항을 신설하여 자구수정을 거쳐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p>	

(6)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제5장 : 제18조-제20조)
 (제18조(「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

우 리 측	북 측
<p>『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p>	<p>『북과 남은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북남합의서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 준수하도록 한다』</p>
<p>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남과 북이 공고한 평화상태의 실제주인공이기 때문이므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사이의」를 삭제한 북측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p>	<p>우리측이 정전협정의 체결당사자도 아닐뿐더러 1958년에 국회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 했으므로 평화상태의 실제주인공이 아니라고 강변</p>

우 리 측	북 측
북측이 「북남사이의」를 추가하여 합의	
(합 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평화상태 전환 대책 강구)〉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현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	『북과 남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한다』
우리측이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북측이 수용하여 합의	
(합 의)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현 군사정전협정의 성실한 준수)〉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북과 남은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우 리 측	북 측
1. 현 군사정전협정 체제를 변경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2.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즉각 정상화한다. 3.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그 활동이 보장 되도록 한다	
부속합의서는 기본합의서 해당 조항의 구체적 이행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점에서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기본합의서 5조의 실천을 위해 상기 3가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을 강조	정전협정체약 당사자도 아닌 우리측이 「당사자 해결원칙」을 내세워 「중립국감독위원회 기능정상화」,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정상화」등을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우리측이 1, 2, 3호를 삭제하고 북측이 「북남사이의」를 추가하여 합의	
〈합 의〉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7)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6장 : 제21조-제24조)

〈제21조(국제무대에서 비방·중상 중지)〉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과 중상을 하지	『북과 남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호상 비방

우 리 측	북 측
아니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조한다。」	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쌍방이 같은 내용을 제의하여 자구 수정을 거쳐 쉽게 합의 (합 의)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존중))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민족적 이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1. 국제회의 참가 대표단간 사전협의를 통해 연설문 및 회의에 대비한 상호 입장과 의견을 교환한다. 2. 민족적 권익의 옹호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한다. 3. 국제회의시 영문호칭은 남측은 Korea, R.O. 북측은 Korea D.P.R로 표기한다	『북과 남은 대외활동에서 상대방의 리익을 존중하며 전민족의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의하고 대처한다』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문제, 임원국이 되는 문제, 사무국에 직원을 진출시키는 문제, 국제회의·국제대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협력한다』	
우리측 안은 국제기구의 활동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분야를 예시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협조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며 동시에 남북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역설	우리측 안이 현 분열상태를 지속시키면서 두개 국가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며 「국제기구 가입, 임원국 문제, 사무국 직원 진출문제」 등이 포괄적이지 못하므로 공동위원회에서 차후 논의하자고 주장
우리측이 2개 조항을 1개조항으로 통합하여 『남과 북은 민족적 이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방안을 강구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를 추가하는 등 자구수정을 거쳐 합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재외공관간 협의)〉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공관이 함께 상주하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간 상호 연락하고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며,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쌍방 공관장이 현지 실정에 맞도록 협의하여 정한다』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대표부(공관)가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대표부 책임자(공관장)사이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우리측이 『남과 북은 재외공관이 함께 상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공관사이에 상호협의를 진행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하여 어순조정, 자구수정을 거쳐 합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p>	

〈제24조(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고취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북과 남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공동으로 옹호하며 보호한다』

우 리 측	북 측
북측이 『그들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를 추가하고 「공동으로」를 삭제하여 합의	
〈합 의〉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8) 이행기구(제7장 : 제25조-제26조)

〈제25조(「남북화해공동위원회」구성·운영)〉

우 리 측	북 측
해당조항 없었음.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리행을 위한 <<북남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북남화해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우리측이 정치분과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른 북수공동위 설치 입장을 양보하여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우 리 측	북 측
별도로 정한다』를 제7장 「이행기구」에 신설하고 상호 자구수정을 거쳐 합의	
〈합 의〉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실무협의회』구성·운영)〉

우 리 측	북 측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제도적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북남화해공동위원회》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제3장 비방·중상 중지 부문의 이행·준수를 검증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북남화해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구성, 운영한다.

우 리 측	북 측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를 명시하고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하자는 견해 표명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두되 공동위원회에서 토의 구성하자고 주장
북측이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를 비롯하여」를 추가하여 합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9) 수정 및 발효(제8장 : 제27조-제28조)

〈제27조(수정·보충)〉

우 리 측	북 측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우리측이 북측안을 수용하여 합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효력발생)〉

우 리 측	복 측
『이 합의서는 쌍방의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측이 복측안을 수용하여 합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주요 쟁점사항

가. 7.4 남북공동성명 「통일3원칙」 해석

- 남북 쌍방은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7.4남북공동성명 통일 3원칙의 해석문제를 둘러싸고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였음.
- 우리측은 통일3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음.
 - 자주 원칙은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간의 민족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자결정신과 당사자해결 원칙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정부의 대표성과 대표성의 토대가 되는 법질서를 존중해야 함.
 - * 주한미군 문제는 자주 원칙의 본질적 문제가 아님.
 - 평화의 원칙은 통일의 방법에 있어 무력과 폭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민족대단결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이 구현되는 바탕위에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7천만 민족의 단결과 단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대전제로서 남과 북에서 복수의 권이 허용되고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창의를 존중되는 가운데 국제연합 인권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기본인권과 자유의 철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 * 민족단결 도모를 위해 먼저 남과 북의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상황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객관적 방법으로 조사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7.4공동성명의 통일3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 하였음.
 - 자주의 원칙은 통일문제 해결에서 주체와 객체사이의 관계, 즉 통일문제 해결의 주체와 이를 저애하는 외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원칙임.
 - 미국은 우리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근반세기 동안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된 외세임.
 - 「대표성」을 내세운 「대화창구 일원화」는 용인될 수 없으며, 정당·각계각층 인민들의 통일논의는 보장 되어야 함.
 - 평화의 원칙과 관련하여 평화통일을 관철하자면 전쟁 재발의 근원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하며, 군축을 실천해야 함.
 - * 더는 외군군대나 외국의 군사기지가 있을 명분이 없음.
 - 민족대단결이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한 핏줄을 나눈 하나의 민족으로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뭉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족의 이념을 앞세워야 하며 어느 일방도 사상과 제도를 전면에 내세우

지 말아야 함.

나. 「특수관계」의 개념 정립 및 명시

- 우리측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있어야만 남북기본합의서가 진정한 남북화해의 기초로 될수 있으며
 - 따라서 화해분야 부속합의서(안)에서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남북관계는 『한편으로는 국제관계가 아닌 민족내부 관계이면서도 다른 한편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상의 개별적 주체인 국제연합 회원국간에 형성되는 관계라는 2중의 관계』

〈근 거〉

- ① 남북관계는 쌍방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별개의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 즉 국제관계가 아닌 「민족내부관계」임을 천명
- ②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의 남북관계에 있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존재하는 정치실체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
- ③ 현 시점에서 남과 북은 하나가 아니라 분단되어 있는 개체이며, 남북관계는 이 두 개체간에 이루어지는 관계

④ 또 하나 중요한 현실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조건을 수락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국제연합에 가입

-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의 주장이 「실체인정론」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하면서
 - －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을 뒤집고 현 분열상태를 합법화하려는 반통일적 입장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하였음.
 - *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충분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음.

다. 체제 인정·존중

- 우리측은 상대방 체제를 인정·존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 정부의 해당지역에서의 관할권과 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 － 북측은 상대방의 사상, 제도와 함께 법질서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조국통일위업」에 배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며
 - － 냉전시대 대결의 산물인 화해와 단합, 통일에 방해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 북측은 「정부」, 「관할권」등의 용어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

「조국통일위업」등의 모호하고 자의적인 내용을 상대방 체제 인정·존중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기본합 의서 채택과정에서 철회한 「사상」을 다시 포함시킨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음.

- 한편 우리측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
 - 상대방의 법률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논의할 수는 없음을 지적하면서
 - 쌍방의 법 실태와 문제점을 상호 파악한 바탕위에서 화해공동위 안에 「법률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상호주의에 입각, 해결해 나가자는 안을 제시하였음.
- ※ 쌍방은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쌍방의 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률요구목록」을 상호 교환하였으나, 실제 법령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우리측 1차 교환요구 목록〉 (92. 7. 2)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2. 4. 8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개정 「헌법」 전문○ 1963.10. 9 상임위원회 정령 「국적법」 전문 및 개정여부와 개정된 내용○ 1976. 1.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채택 「재판소구성법」 전문 및 개정여부와 개정된 내용 |
|---|

- 1961. 8.23 상임위원회 정령 「검찰기관에 관한 규정」 전문 및 개정여부와 개정된 내용
- 1948.11. 1 내각결정 「변호사에 관한 규정」 전문 및 개정여부와 개정된 내용
- 1950. 3. 3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회의 채택 「형법」 및 「형사소송법」
- 1974.12.1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개정 「형법」
- 1987. 2.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개정 「형법」
- 1976. 1.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개정 「형사소송법」
- 1992. 4. 8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 개정 「형사소송법」

〈북측 1차 교환요구 목록〉 (92. 7. 18)

- 《대한민국헌법》
-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
- 《령해법》
- 《령해법시행령》
-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사용에 관한 건》
- 《국가안전기획부법》
-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수복지구와 동린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민법》
- 《민법, 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형법》
- 《국가보안법》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보안관찰법》
- 《보안관찰법시행령》
- 《보안관찰법시행규칙》
- 《사회보호법》
- 《사회보호법시행령》
- 《보호관찰법》
- 《보호관찰법시행령》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국가유공자레우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 《대한민국린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국무원고시 제14호)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 《부재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연법》
- 《공연법시행령》
- 《영화법》
- 《영화법시행령》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 《방송법》
- 《방송법시행령》
- 《군형법》
- 《군행형법》
- 《군행형법시행령》
-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 《로동조합법》
- 《로동조합법시행령》
- 《로동조합법시행규칙》

〈우리측 2차 교환요구 목록〉 (92. 8. 28)

- 조선노동당규약
- 영토, 영공, 영해의 범위와 경계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주권기관구성법
- 지방주권기관구성법
- 중앙인민위원회규정 (산하 부문별 위원회 포함)
- 정무원구성법
- 정무원 부·위원회·직속기관별 사업규정
- 정무원 복무준칙
- 국가기관 사무처리규정
- 국방위원회의 설치와 권한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국가보위부의 설치와 권한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법무생활지도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설치와 권한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사회안전부의 설치와 권한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법안심의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권한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 도·시·군(구역)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

- 도 및 시·군 인민위원회 사업규정
-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규정
- 도·시·군(구역) 인민위원회 설치와 그 밖에 지방행정 편제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특별재판소(군사, 철도재판소)에 관한 규정
- 검찰소에 관한 규정
- 변호사에 관한 규정
- 집회와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서적 기타 출판물의 단속과 인쇄소, 출판사의 등록허가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사회단체의 등록, 허가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영화의 제작, 심의, 수출입 및 제반 공연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방송국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유무선 방송청취에 관한 규정
- 신소, 청원 및 검열에 관한 규정
- 형법(1990. 12. 개정, 부칙으로 된 군사상 범죄규정 포함)
- 벌금규정
- 교정처분등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군형법, 군행정법 및 군사재판소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개별적 또 집체적으로 의거하여 오는 적군대복무자들을 대우함에 관한 군사위원회 결정과 그 밖에 입북인사의 처우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현역군외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교도대의 조직과 동원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군사규정
- 전시동원규정
-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노동보호와 이에 대한 감독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 노동규율규정
- 민 법
- 가족법
- 민사소송법
- 도시경영법
- 사회주의상업법
- 중재재판규정
- 무역법
- 세관규정
- 합영법
- 합영법 시행규칙
- 합영회사소득세법
- 합영회사소득세법 시행규칙

- 외환투자관리법
- 외국기업법
- 해운법
- 과학기술법
- 원자력법
- 독립채산제규정
- 토지관리규정
- 협동농장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공민종교부사업규정
- 외국여행에 관한 규정
- 외국인 여행규제에 관한 규정
- 여행증명서 발급규정
- 출판물단속에 관한 규정
- 법령의 공포와 시행에 관한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라. 내부문제 불간섭

- 쌍방은 내부문제 불간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내부문제」의 범위나 「불간섭의 예외」에 대하여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였음.
- 우리측은 외교정책의 수립이나 이에 따른 제반 외교행위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정부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오래 전 부터 확립된 국제법상의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 『남과 북이 각기 제3국과 맺은 쌍무적·다무적 관계를 존중하고 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규정의 명시를 요구하였는 바
 - 북측은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게 제3국과 맺은 모든 조약들과 협정들은 그것이 쌍무적이든 다무적이든, 군사조약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철저히 개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한편 북측은 남북기본합의서의 화해정신과 조국통일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제 불간섭 적용에 구애 되지 않아야 하며
- 그 구체적인 한정범위는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해서 정하자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쌍방이 내부분제 불간섭을 약속하고서 예외조항을 설정하고, 특히 그 개념·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을 경우 내부분제 불간섭 장(章) 전체가 무실화될 수 있음을 들어 반박하였음.

마. 비방·중상 중지

- 비방·중상 중지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은 비방·중상 중지의 주체에 「민영언론의 포함 여부」, 비방·중상의 방법과 관련하여 「뼈라 포함여부 및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의 시설 철거문제), 비방·중상의 「적용 예외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였음.

- 우리측은 비방·중상 중지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의 체제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하나의 잣대」를 갖고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매체들을 규제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 비방·중상의 대상을 「상대방 특정인과 체제 및 정책」으로 하고 주체는 「쌍방 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영 언론기관을 포함한 공공단체」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명하고
 - 특히 북측 주장대로 민영언론을 주체에 포함시킬 경우는 헌법상의 기본적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부가 제약하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 주장이 남북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 비방·중상 중지는 무엇보다 먼저 실현되어야 할 선차적인 과제이며 일단 시작하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하므로
 - 관영, 민영을 막론하고 그 어떤 언론기관이나 어떤 수단·방법으로도 비방·중상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협의·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결국 쌍방은 관영, 민영 등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치 않은채 포괄적으로 「언론」으로만 규정키로 절충하였음.
- 북측은 비방·중상 중지의 방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마련하자고 하면서
 - 「삐라」가 반드시 비방·중상 방법에 포함되어 규제되어야 하며
 - 군사분계선 일대의 각종 게시물 등은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비방·중상 중지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 「삐라」살포 중지는 이미 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인 만큼 굳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며
 - 군사분계선 일대의 각종게시물들은 그 내용이 상대방을 비방·중상 하지 않는 것이면 충분하며, 자기측의 실상을 소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였음.
- 한편 우리측은 비방·중상 중지 적용의 예외와 관련, 「상대방의 실상, 각종 정책 등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와 학문적 연구」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 북측은 「객관적 보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학문

적 연구」는 포괄범위가 넓고 연구가의 주관어 작용하므로 비방·증상의 심도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바. 파괴·전복 행위 금지

- 우리측은 과거의 쓰라린 민족적 경험을 염두에 두고 상호금지되어야 할 행위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천성의 보장과 상호신뢰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 － 만약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나열로 시종한다면 그 용어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이로 실천의 장애요인만 형성하게 될 것이므로
 - － 파괴·전복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동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이 기준에 따라 바로 규제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였음.
- 이에 반해 북측은 예상되는 파괴·전복행위를 사전에 모두 부속합의서에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그 유형을 적절히 규정한 후
 - － 구체화하고 세부화하는 것은 공동위원회 단계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 우리측 안에 파괴·전복 목적의 「정탐」행위가 빠져 있다고 비난
- 또한 북측은 우리측 부속합의서(안) 제19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조직을 결성하거나 지원, 비호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련,
- 남측은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나 조직을 무턱대고 「파괴·전복 단체」 또는 「반체제 조직」으로 단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처형하고 있으며
 - 결국 이 조항은 통일애국단체와 조직, 각계각층인사들의 자유로운 접촉과 통일논의의 길을 차단하고 대화를 당국의 독점물로 만들려는 구시대의 유물로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한편 우리측은 북측의 『북과 남은 제3국 또는 그의 단체가 상대방을 반대하여 제재나 압력을 가하려는 일체행위에 합세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그 어떤 외부세력, 외부집단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 이는 파괴·전복 행위를 문제 삼기 보다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상대방의 외교행위까지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부당하며
 - 따라서 『국제테러 방지에 관한 모든 국제협약을 준수·이행한다』는 우리측 안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 테러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협약(일명 반테러 협약 : 1937, Geneva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

- 24개국이 위 협약에 조인하였으나 비준국은 인도뿐이었음.

나. 항공기테러의 금지에 관한 다자조약

- (1) 탑승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일명 동경협약 : 1963,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전문 7장 26개조로 구성, 1963. 9. 14. 체결되어 1969. 12. 4. 효력 발생

- 남북한 모두 가입

- (2)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일명 헤이그협약 : 1970,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 1970. 12. 16. 체결되어 1971. 11. 14. 효력 발생

- 남북한 모두 가입

-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 : 1971,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 1971. 9. 23. 체결되어 1973. 1. 26. 효력 발생

- 남북한 모두 가입

- 다.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일명 뉴욕협약 : 1973, The Convention on the Pre-

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 1973. 12. 14.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7. 2. 20. 효력 발생
- 남북한 모두 가입

라.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1976,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1979. 12. 17. 유엔총회에서 채택, 1989년말 현재 45개국이 가입
- 남한 가입, 북한 미가입

마. 해상항행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1988,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 1988. 3. 10. 체결되어 현재 21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 남북한 모두 미가입

바. 지역적 차원에서의 테러금지에 관한 협약

- 국제적 요인에 대한 범죄와 강탈의 형태를 취하는 테러행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일명 OAS 반테러협약 : 1971, The 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he Acts of Terrorism Taking the Form of Crimes Against Persons and Related Extortion that are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 테러리즘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
(1976,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사.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 우리측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것은 현 정전상태를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와 군사정전협정 제5조 62항에 의거한 군사정전협정의 적절한 대체방안은 반드시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되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임을 강조하였음.
- 또한 우리측은 현 정전상태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남북 쌍방이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개항을 제의하였음.
 - ① 군사정전협정 관리자의 일방인 유엔군 사령부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됨.
 - ②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이므로 그 기능은 즉각 정상화되어야 함.

- ③ 중립국감독위원회도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현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양대 중추기구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그 기능과 활동은 확고히 보장되어야 함.
- 반면에 북측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책임 있는 실제적 당사자는 북측과 미국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 군사정전협정 제5조 61항과 62항에는 협정의 수정, 보충은 물론 다른 협정으로의 교체와 관련한 당사자는 정전협정 체약 쌍방이라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 남측은 정전협정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958년 국회에서 그것을 정식 무효화하기 까지 하였으며
 - 제30차 유엔총회 결의 제3390B의 2항에 『조선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호소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강변하였음.
- 북측은 우리측의 군사정전협정 성실준수를 위한 3개항제의와 관련,
-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미국측이 정전협정 체약 일방도 아니고 「유엔군」성원도 아닌 남측의 군장성을 불법적으로 수석대표로 내세웠기 때문이며
 - 미국측이 계속 남측 군장성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는 한 언제가도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상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6.25전쟁의 실제교전당사자이며 현재 대치하고 있는 남과 북이 평화체제 전환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함을 강조하면서
 -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군 사령관이 아니라 유엔 16개국 군대와 한국군을 대표하는 유엔군 총사령관이며, 더구나 우리측은 정전협정의 수정·보완 차원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자는 것임을 지적하고
 - 국회 결의는 북측의 KNA 비행기 납치 등과 관련하여 북측이 그동안 정전협정을 고의적으로 누차 위반한데 따른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 제30차 유엔총회 결의는 그 당시 쌍방(우리측, 북측)의 모순된 결의안이 동시에 채택된 상황인 만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음.

〈군사정전 협정 제5조 제61항, 제62항〉

-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 한다.
-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정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 까지 효력을 가진다.

〈KNA여객기 납치에 제하여 유엔참전국에 보내는 국회 결의안〉
(1958. 2. 22)

- 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체결되었으며 이미 북한침략자가 위배하고 파기한 1953년 7월 27일에 체결한 정전협정을 정식으로 폐기할 것.
- ② 유엔의 결의인 인류의 항구평화와 집단안전보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전쟁을 감행하여 1951년 2월 1일자 「침략자」로 규정 받은 중공군을 북한으로부터 무조건 즉시 철수케 할 것.
- ③ 1947년 11월 14일의 유엔의 결의에 따라 이북에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38선을 철폐하고 대한민국 주권하에 국토통일을 완수하게 할 것.

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이 분야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큰 쟁점은 없었으나 북측이 이른바 몇가지 독소조항을 제시하고 이를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고집함으로써 논란이 있었음.
- ▲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협력하지 않는다』

▲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 한다』

○ 이에 대해 우리측은

- 단일의식 가입문제는 통일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 단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 유일대표단 참가문제는 「스포츠」등 비정치 분야라면 몰라도 정치 분야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며
- 「상대방 이익침해 불가담」은 북측 부속합의서(안)의 여러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일뿐 아니라, 「상대방 이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 「타국과의 조약 개폐문제」는 기본합의서 절충과정에서 북측이 철회한 조항일 뿐 아니라, 상대방 체제 인정·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임을 지적하였음.

군사공동위원회

〈목 차〉

I. 군사문제에 관한 쌍방 기본인식	161
1. 기본인식	161
2. 주요 문제별 쌍방입장	162
II.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추진경과	174
1. 성립배경	174
2. 회담경과	174
3. 쌍방 주요쟁점 비교	182
III.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타결과정	221
1.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분야 타결과정	221
2.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타결과정	234
IV.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을 위한 통신실무자 접촉 ...	272
1. 성립배경 및 경과	272
2. 제1차 통신실무자접촉 회의	273

—

—

I. 군사문제에 관한 쌍방 기본인식

1. 기본인식

- 북한측은 노동당의 정치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공산주의 혁명전략·전술에 따라 인민군을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여 6.25전쟁을 발발시켰고, 휴전후에는 군사력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소와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여 북한의 안전을 확보
 - 1962년 당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강조한 후, 1963년부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추진하여 대남 군사우위를 지속적으로 추구
 - 70년대에는 군사노선의 완성에 목표를 두었고, 80년대에는 동원태세의 완비, 예비전력의 정규군 수준화, 현대전 및 기습공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4대군사노선』의 강화에 주력
 - 90년대에 들어와 북한측은 유엔동시가입 등 자세의 변화를 보이는 듯하였지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장거리 유도무기인 노동1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계속 주력하는 한편, 개정 헌법에 『4대군사노선』(북한헌법 제60조)을 명문화하는 등 대남우위의 군사력 유지·강화에 진력하고 있음.

- 우리측은 6. 25 기습남침을 격퇴한 이후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안보를 확보
- 60년대에 경제건설과 자주국방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북의 대남 군사도발 저지에 주력하였고, 70년대에는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북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80년대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한미 연합전력에 의한 안보 확보를 목표로 한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 국방력 강화에도 노력
-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변화된 국제환경과 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해, 북측의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한미 군사관계를 기본축으로 전방위 군사협력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2. 주요문제별 쌍방입장

- 분단이후 북한측이 줄곧 주장해 왔던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비롯하여 70년대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팀스피리트 중지문제, 불가침문제, 군비축소문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의 선후문제에 관한 쌍방의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가. 주한미군철수문제

우리측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군사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지하였고, 북한측은 주한미군이 무력적화통일의 최대 장애물이라는 인식에서 지속적인 미군철수 주장을 전개하였음.

- 6.25 전쟁이전 우리측은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 국군의 증강이 필요한 정도로 이루어질 때까지 주한미군철수를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북한측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였음.
- 휴전후 제네바 정치회의(54. 5. 22)에서 우리측은 『한국통일방안 4개항』을 제시하고 중공군대는 선거일 1개월전 전면 철수완료하고 UN군의 점진적 철수는 전한국이 통일한 국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할된다는 것을 UN이 증명하기 전에 완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나,
 - － 북한측은 비례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내에 조선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무력을 철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자고 주장하였음.
- 북한측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 회의(71. 4. 12)에서 『평화통일 8개항목』을 제시하고 미군의 완전철수, 미군철수 후 남북병력 10만 이내 감축,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조약의 폐기를 주장
 - － 우리측은 외무부 장관의 답화(71. 4. 14)를 통해 8개항의

제의를 거부하고 유엔의 한국통일에 관한 책임과 원칙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군철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시 박성철 연설(76. 8. 17)에서 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주장

- 북한측은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석회의(84. 1. 10)에서 3자회담을 제의하고 의제에 외국군대의 철수 문제를 포함시켰으며,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88. 11. 7)에서도 『포괄적 평화방안』을 채택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가 가장 큰 장애로 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성없는 주한미군철수 일정을 내놓고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는 등 실천을 위한 제안이 아닌 협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술적 차원의 제의로 일관하였음.
- 9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측은 『한반도의 긴장상태 완화 및 조국통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10개항의 군축방안』(90. 5. 31)을 내놓고 외국무력철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주한미군은 한미간의 문제라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

북한측은 북한적십자회 명의의 방송통지문(78. 3. 19)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한 이래 회담때마다 대화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된다면서 이의 중지문제를 거론하였는 바, 우리측은 팀스피리트훈련이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기본입장에서 남북한 주요군사훈련의 사전통고 및 북한측대표의 참관초청 제의로 대응하였음.

- 북한측은 남북국회회담 제7차 준비접촉(88. 12. 29)에서 대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를 의제로 할 것을 주장한데 이어,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89. 3. 2)에서도 3개항의 긴급조치를 제시하면서 팀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에 동원된 전투병력과 무장장비의 복귀, 군사훈련시 외국군제외, 훈련규모 축소와 명칭변경을 요구하였고,
 - 우리측은 팀스피리트훈련을 '76년부터 연례적으로 공개리에 실시하고 있고 '82년부터는 훈련계획을 사전통보하고 참관 초청까지 한 공개적·방어적 훈련임을 강조하고 그동안 팀스피리트훈련 기간에도 남북대화를 진행해 온 사실 등을 지적하였음.
-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90. 9. 4~7)에서 북한측은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선차적 과제라고 하면서 잠정적으로 2~3년 동안만이라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 우리측은 북한측이 전방에 배치된 공세전력의 위협을 제거하고 대남적대정책을 수정한다면 언제든지 동 훈련을 조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채택을 위한 제2차 대표접촉(91. 12. 28)에서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겨냥하여 『핵공격을 가상한 어떠한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을 조문화하자고 한데 대하여
 - 우리측은 핵전쟁을 가상한 조항의 토의는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앞으로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팀스피리트훈련은 핵공격을 가상한 훈련이 아님을 강조하였음.
- '92년 팀스피리트훈련이 중단(91. 12. 31 남북간 합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6차회의(92. 7. 16)에서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울지포커스렌즈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다른 군사훈련에 대해 계속 문제삼으려 하자,
 - 우리측은 자위적 수단으로 하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를 일축하였음.
- 제1차 통신실무자접촉(92. 10. 28)에서 북한측이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정(92. 10. 8)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우리측은 '92년 말까지 합의된 상호사찰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음.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92. 10. 22)에서 북한측은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호사찰규정안 토의의 전제조건화하였음.
 - 우리측은 사찰규정이 조속히 채택되어 상호핵사찰이 실시되면 팀스피리트훈련을 항구적으로 중지하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면서 북한측이 사찰규정 토의에 응해 올 것을 촉구하였음.
- 8차에 걸쳐 진행된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93. 10. 5 ~ 94. 3. 19)에서 북한측은 특사교환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구실로 소위 『국제공조체제의 포기』와 함께 『모든 전쟁연습의 중지』를 전제조건화 함으로써 팀스피리트훈련을 비롯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문제삼겠다는 저의를 드러냈음.
 - 우리측은 핵전쟁연습은 실시한 적도 없고 실시하지도 않을 것이며 북한측이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은 신축성을 가지고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특사교환 실현을 조건으로 '94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공식발표(94. 3. 3)하였음.

다. 불가침 문제

7.4 남북공동성명(72. 7. 4)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본격화된 이후부터 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남북간에는 『불가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의 『불가침협정 체결』주장과 북측의 『평화협정 체결』구도가 대립·교차되어 왔음.

○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73. 3. 14~16)에서 남북간의 긴장상태 완화 및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5개항의 제안을 우선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무력불행사를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현실적으로 남북간에 합의된 조그마한 합의사항도 지켜지지 못하는 판국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했음.

※ 이때 북한측이 제시한 『5개항』은 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중지 ② 남북군대의 10만 또는 그 이하 감축과 군비의 대폭축소 ③ 일체의 무기·작전장비·군수물자 반입금지 ④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 철거 ⑤ 전 4항의 『해결』을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등임.

※ 이후 북한측은 체코공산당 제1서기 『후사크』환영대회 김일성연설(73. 6. 23)등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주장해 왔음.

○ 우리측은 박정희 대통령의 '74년도 연두기자 회견(74. 1. 18)에서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하기 위해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반복하면서 거부(74. 1. 26. 로동신문)하였음.

※ 이 제의는 월남 패망이 가시화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군사문제관련 대북 제의로서는 최초의 것이었음.

〈기자 회견문 요지〉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의 진정하고도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며, 불가침협정은 첫째로,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하자는 것이며 둘째로는, 상호내정간섭을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며 셋째로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현행 휴전협정은 그 효력을 존속시키자는 것임.

- 북한측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74. 3. 25)에서 행한 허담의 보고연설을 통해 종래의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주장을 반복하고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주장으로 선회하였음

※ 허담은 동 연설에서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전과정에서 도대체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비난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당사자인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3당국자회담』(79. 7. 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이 거부하였음.

- 북한측이 '84년 1월 소위 『3자회담』을 통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을 제의한데 대해
 - 우리측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불가침선언 문제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쌍방간의 기본적인 입장의 차

이를 좁히지 못하였음.

※ 『3자회담』논리는 『선 대미 평화협정 체결, 후 남북불가침선언 채택』을 하자는 것이며 우리측은 대표가 아닌 『옵서버』자격으로 참가가 『허용』된다는 것이었음.

○ 북한측은 '85년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시 『남북불가침 공동선언』문제를 의제로 제시하였으나, 우리측은 협정체결권은 정부당국에 있는 만큼 불가침문제는 정부당국간에 협의·해결할 문제임을 밝혔으며 '89년 2월부터 10차례 개최된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에서 또다시 『남북불가침 공동선언』문제를 제기하였으나,

— 우리측은 『남북당국간의 불가침협정 체결을 권고하는 문제』를 의제로 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

※ 제9차 준비접촉에서 쌍방은 『남북불가침 선언문제』를 의제의 하나로 채택하는데 합의하였으나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이 '90년 1월 제10차 준비접촉을 마지막으로 중단됨으로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음.

○ 이와 같이 북한측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간 불가침선언 채택』을 기본구도로 한 군사문제 우선해결 입장을 취한데 반해,

— 우리측은 『선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한 남북당국간 불가침협정 체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끝없는 대립양상을 보여왔음.

- 그러나 80년대 말,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제43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88. 10. 18) 가운데 남북한간의 신뢰구축문제와 군사문제를 병행하여 토의할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음.
- 이러한 상황변화를 배경으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불가침』이 포함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군사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군사력 불균형 시정, 군사력 균형감축문제 등 군사문제 전반을 토의·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라. 군비축소 문제

우리측은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군비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군비축소가 이루어지면 신뢰구축은 당연히 뒤따른다는 군비축소 우선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였음.

※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한 우리의 기본입장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임.

- 북한측은 '54년 6월 15일 제네바회의에서 남일 외상의 연설을 통해 남북군대를 각각 10만명 이하로 무조건 축소하자고 주장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계속 되풀이하는가 하면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 등을 요구해 왔음.

○ 80년대에 들어와 북한측은 군축문제와 관련하여 『군사당국 자회담』(86. 6. 17), 『다국적 군축협상』(87. 7. 23), 『남북한, 미국의 3자 외무장관회담』(87. 8. 6)등 여러 형태의 회담형식으로 제의해 왔음.

— 특이한 사항으로 북한측은 『다국적 군축협상방안』에서 일시적 군축이 아니라 『단계적 군축방안』을 제시했던 점이 주목할만한 것임.

※ '8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병력축소, '92년부터 10만 이하 병력유지

○ 또한 북한측은 '90. 5. 31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을 채택하였는 바,

— 『쌍방이 합의한 때로부터 3~4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병력을 감축』한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 1단계 : 30만명, 2단계 : 20만명, 3단계 : 10만명이하

—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자는 입장을 보였음.

○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북한측은 『10개항 군축제안』을 근간으로 한 군축방안을 제시해 올 것으로 예측됨.

마.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의 선후 문제

남북고위급회담의 진행과정에서, 우리측은 『남북간의 기본관계 설정과 신뢰구축을 전제로 해서 확고한 보장장치가 수반된 불가

침을 합의하자』는 입장을 취한 반면 북한측은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그 담보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선결적인 과제이며, 중핵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음.

- 또한 불가침의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 우리측은 『최소한도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실천하여 군사활동에 대한 투명도를 제고시켜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군사력 불균형을 시정하며,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 북한측은 『불가침선언 자체가 바로 신뢰조성의 출발점이고, 가장 믿음직한 담보이기 때문에 신뢰구축조항이란 타당치 않으며, 특히 신뢰조성단계와 군축단계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음.

- 이러한 입장 차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측은 향후 교류·협력 실시문제 보다 정치·군사문제 특히 군사문제 해결에 절대적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우리측의 단계적 접근방식과 북측의 군축을 우선시하는 포괄적 접근방식 간에도 상당한 충돌이 야기될 것으로 보임.

Ⅱ.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추진경과

1. 성립배경

-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남과 북은 군사 문제에 관한 엇갈린 주장과 제의를 거듭해 오다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89. 2 ~ 90. 7)에서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로 남북고위급회담의 의제를 확정함으로써 군사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음.
- 남북 쌍방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91. 12)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완전 타결짓고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시켰음.
- 남북 쌍방은 남북불가침 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군사분과위원회 회의를 시작하였음.(93. 3)

2. 회담경과

- 제1차 회의(92. 3. 13)에서 우리측은 남북불가침 분야의 구체적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과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 위한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우선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음.
-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북남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과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직통전화 문제는 부속합의서 해당 조항에서 협의·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 포괄적인 단일부속합의서 채택을 군사공동위원회 발족의 전제조건화함으로써 군사공동위 문제를 먼저 토의하자는 우리측 입장과 맞서 토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음.
- 제2차 회의(92. 3. 31)에서도 우리측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군사공동위 문제를 우선 논의·해결하고,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를 별도로 병행 해결하며, 이어서 불가침 분야의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필요한 부속합의서들을 작성하되, 완급과 경중·중요도에 따라 축차적으로 합의·실천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음.
- 아울러 우리측은 불가침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① 중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 ②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처리 문제 ③ 상대측 관할구역 침범시 상호 통보 및 처리문제 ④ 불의의 사고에 따른 긴급대피 허용과 조난구조 문제 ⑤ 군사정전협정 관련기구의 정상화를 위한 협조 문제 ⑥ 평화적 목적을 위해 쌍방의 수송수단이 불가침 경계선 및 상대측 구역을 통과·운행하는 경우, 이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문제 ⑦ 기타 불가침의 이행대책과 관련한

문제 등 7개항의 협의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해 북한측은 포괄적 단일부속합의서 우선 토의를 계속 주장하였으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는 부속합의서 해당조항을 논의할 때 협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진전없이 끝나고 말았음.
- 제3차 회의(92. 4. 30)에서 우리측은 군사공동위 문제를 우선 토의·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제2차 회의 때 제시한 협의과제들이 포함된 『남북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음.
 - 남북 쌍방은 공동위원회 문제와 부속합의서 문제를 함께 토의한다는 데 합의하고 우선 『공동위원회 합의서(안)』 토의에 들어가 이 합의서의 대부분의 조항에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군사공동위원회 기능을 기본합의서 제12조에 명시된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협의·실천』으로 하자는 입장(우리측)과 『불가침 분야 전반의 이행』으로 하자는 입장(북한측), 군사공동위구성원의 직급을 계급으로 하자는 의견(우리측)과 직책으로 하자는 의견(북한측)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 한편, 쌍방이 제시한 『불가침 분야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 토의에서는 입장차이가 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음.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군사분과위원장 접촉

(92. 5. 6~5. 7)에서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을 ① 불가침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대책의 협의 ② 이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의 작성·실천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의 실천 등으로 합의하는 한편, 군사공동위 구성원의 직급을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로 절충함으로써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완전 타결지었음.

○ 제4차 회의(92. 5. 25)에서 우리측은 1차회의 때 제시한 『남북군사당국자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합의서(안)』을 3차회의 때 제시한 『남북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에 포함시켜 총 7개장 22개조로 단일화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음.

— 이와 함께 우리측은 1992년 5월 22일 북한 무장병력이 우리측 비무장지대에 침투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5조 『군사정전협정 준수』와 제9조 『무력불사용 및 불가침』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임을 지적,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측이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음.

— 이에 대해 북한측은 1차 회의시 제시했던 합의서(안)을 일부 수정하여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

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북남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담보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북한측은 5월 22일 무장병력 침투사건에 대해서 이는 그들과 무관하며 또 군사분과위원회 회담과도 무관하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주장하였음.
- 남북 쌍방은 부속합의서의 구성체계와 내용상 차이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쳤음.
- 제5차 회의(92. 6. 19)에서 북한측이 총 6개장 22개조로 구성된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쌍방은 부속합의서(안)에 대한 대체토의에 들어갔으나, 『기본합의서 불가침 분야의 내용 토의부터 선행한 후에 그에 따라 장을 편성하고 장제목을 결정하자』는 우리측 입장과 『불가침 분야 각 조항에 맞게 장을 편성하고 장제목을 정한 후 내용 토의를 하자』는 북한측 입장이 맞서 토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음.
- 제6차 회의(92. 7. 16)에서 우리측은 실질적인 토의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의서 명칭, 전문, 장제목 등 구성체계와 내용을 6장 25개조로 재조정된 『남북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을 새로이 제시하였음.
- 남북 쌍방은 실질토의에 들어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의 명칭과 전문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수정 및

발효』 등 장제목에 합의하였음.

- 한편, 북한측은 『핵사찰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포커스렌즈훈련 실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속합의서 토의의 지연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고자 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성역없는 상호 핵사찰이 조속히 실시되어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어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포커스렌즈 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어적 목적의 도상훈련이므로 새삼스럽게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음.
- 위원장 접촉(92. 7. 23)에서 남북쌍방은 부속합의서 전체 조항에 대해 각조항별로 제안설명을 교환하고 유사한 조항, 절충 가능한 조항,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조항들을 확인하였음.
- 세차례의 위원접촉(92. 8. 3, 8. 12, 8. 20)에서 쌍방은 각기 수정안을 제시(우리측 : 세차례 제시, 북한측 : 두차례 제시)하면서 조항별 토의를 진행하여 지상 불가침 경계선, 합의서 발효 이후 50일 이내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통신실 무차접촉 및 수정·발효조항 등 6개 조항에 합의하여 문안정리를 마쳤음.
- 제7차 회의(92. 8. 26)에서 우리측은 부속합의서 22개 조항 중 8개 조항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남북쌍방은 미

합의된 장제목, 북측안중 문제조항, 우리측안중 북측이 수용하지 못한 조항 순으로 토의를 진행하였음.

- 이에 따라 쌍방은 제1장과 제2장의 제목을 각각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로 한다는데 합의하였으나 다른 내용에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 제8차 회의(92. 9. 5)에서 남북 쌍방은 우리측 수정안을 토대로 부속합의서 제5장의 제목을 『협·이행기구』로 한다는데 합의하고 긴급 분쟁 발생시 적대행위 중지 및 통보,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 공동위원회의 기능 등에 합의하였음.

- 또한 쌍방은 우리측(안)에 있는 수도권 안전보장조치, 추적권 인정 조항과 북한측(안)에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 금지, 정찰활동 금지, 봉쇄금지 조항을 군사공동위원회에 위임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음.

- 한편 쌍방은 군사분야의 분쟁문제 해결창구 문제(우리측:분과위, 공동위, 정전위, 북한측:공동위), 정찰활동 문제(우리측:필요, 북한측:불필요), 영해·영공 봉쇄 문제(우리측:필요, 북한측:불필요), 불가침경계선 대책마련 창구 문제(우리측:분과위, 북한측:공동위)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맞서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절충기로 했음.

○ 제8차 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위원장 접촉(92. 9. 15~16)에서 남북 쌍방은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 금지 및 일체

무력도발행위 금지, 상대방 관할구역을 침입·공격·점령하는 행위 금지, 분쟁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해 해결, 합의서 위반시 공동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강구 등에 추가적으로 합의하고 군사분계선일대 무력증강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 봉쇄문제, 서울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 문제 등은 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신뢰구축 및 군축관련사항이므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를 타결지었음.

3. 쌍방 주요쟁점 비교

가. 불가침경계선 및 구역

(1) 관련조항 대비

우 리 측	북 한 측
[초안] : 해당조항 없음	<p>[초안]</p> <p>제 3 조</p> <p>북과 남의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p> <p>① 지상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현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p> <p>② 해상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동해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위도상으로 연장한 선으로 하며 서해에서는 《조선정전에 관한 협정》 해당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계선과 구역으로 한다.</p>

우 리 측	북 한 측
<p>[제1차 수정안] : 해당조항 없음</p> <p>[제2차 수정안] :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p> <p>제 12 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p> <p>제 13 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p>	<p>③ 공중 불가침경계선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경계선에 수직되게 공중으로 연장한 선으로 한다.</p> <p>④ 북남불가침경계선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추진한다.</p> <p>[제1차 수정안] : [초안]과 동일</p> <p>[제2차 수정안] : <제3장 불가침 경계선></p> <p>제 12 조 지상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현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p> <p>제 13 조 해상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동해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위도상으로 연장한 선으로 하며 서해에서는 《조선정전에 관한</p>

우 리 측	북 한 측
<p>역으로 한다.</p>	<p>협정》해당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계선과 구역으로 한다.</p> <p>제 14 조 공중 불가침경계선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경계선에 수직되게 공중으로 연장한 선으로 한다.</p> <p>제 15 조 북남불가침경계선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북남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추진한다.</p>
<p>[제3차 수정안] :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p> <p>제 11 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p> <p>제 12 조 [제2차 수정안] 제13조와 동일</p>	<p>[제3차 수정안] :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p> <p>제 12 조 북과 남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현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p> <p>제 13 조 북과 남의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동해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위도상으로 연장한 선</p>

우 리 측	북 한 측
<p>제 13조</p> <p>남과 북은 상대방 관할구역 상공을 존중한다.</p>	<p>으로 하며 서해에서는 《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해당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계선과 구역으로 한다.</p> <p>제 14조</p> <p>북과 남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경계선을 수직되게 공중으로 연장한 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p> <p>제 15조</p> <p>[제2차 수정안] 제15조와 동일</p>
<p>[제4차 수정안] :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p>	
<p>제 13조</p> <p>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p>	

우 리 측	북 한 측
<p>제 14 조</p> <p>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p> <p>제 15 조</p> <p>남과 북의 공중불가침구역은 지상 및 해상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p> <p>[제5차 수정안] :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p> <p>[제4차 수정안] 제13조→제12조</p> <p>[제4차 수정안] 제14조→제13조</p> <p>[제4차 수정안] 제15조→제14조</p>	

(2) 발언대비

우 리 측	북 한 측
<p>○ 우리측 안의 제3장은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임.</p>	<p>○ 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놓고 말하면, 우리가 그저 정전협정에 규정된 대로 쌍방이 지금까지 유지한 계선을 구획으로 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마디를 했음.</p> <p>그러니까 불가침 경계선이라고 하면 그걸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음.</p> <p>○ 불가침경계선 문제는 지금까지 유엔군사령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사이에는 협약이 돼서 경계선 문제가 확정돼 있음.</p> <p>그렇지만 이것이 북남사이에, 말하자면 확약하는 합의서임.</p> <p>북남사이에 문건을 완벽하게 만들자는 데도 하나의 목적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다 해서 부담스러운 게 없을 것 같음.</p>

우 리 측	북 한 측
<p>우리측 안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 의거하여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해상불가침 구역을 구분하여 조문화하였음.</p> <p>현 시점에서 만일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활발히 실시될 것에 대비하여 불가침 경계선 구역의 통과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예측하고 필요한 통과규정 등을 만드는 일임.</p> <p>이는 교류·협력분과위원회 등에서 관련 부속합의서 실천 시에 문제가 제기되면 군사분과위원회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임.</p> <p>○ 40여년 동안 지켜오던 것을 현시점에서 현 정전상태에서 그것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남북한 관계에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고 공중은, 공중경계선을 얘기하는 데는 없음.</p>	<p>○ 귀측에서는 지난번 기초발언에 마치도 정전협정 조문내용에 해상경계선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기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이해해 보면 어떻게 그 계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p>

우 리 측	북 한 측
<p>이 경계선 구역문제는 공동위원회에서만 할 수가 없는 문제임.</p> <p>○ 귀측안에 여기에 나와있는 계선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이다』 이렇게 지난 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전협정 자체를 잘못 해석하는 것임.</p> <p>만일 이것을 굳이 서해에서 『해상경계선으로 하자』 그러면 이걸 정전협정 자체를 위반하는 꼴이 되는 것임.</p> <p>그래서 이거는 해석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임.</p> <p>○ 15조 『경계선을 공동위원회에서 보장한다』 이것은 그 공동위원회가 불가침을 보장한다고는 돼 있지만 『경계선을 보장한다』이러한 거는 얘기가 또</p>	<p>여 있음</p> <p>세가지, 지상·해상·공중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정확히 확정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심화되는 토론이 필요함</p> <p>○ 정전협정 13항 ㄹ목에 그 해상불가침 문제가 있음.</p> <p>선 딱 긋지는 않았는데, 황해도가 경기도 도경계선 그런 표현 있음.</p>

우 리 측	북 한 측
<p>다른 얘기가 되는 것임.</p> <p>이것은 공동위 소관사항이 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렇게 되면 기본합의서를 또 다시 형클어 놓은 일임.</p> <p>◦ 지상분계선, 우리 경계선구역 문제는 그건 합의가 된 것임.</p> <p>해상에서 경계선, 우선 귀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되는 안을 가지고 나왔음.</p> <p>계선이 뭐냐 했더니 황해도와 경기도 하는 그 계선을 얘기한다...</p> <p>지금 과거의 정전협정 부록, 그 지도에 있는 그런 계선으로 하면 대청도, 연평도, 서해5도, 황해도지역임.</p> <p>이 13조 니은(ㄴ)목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그런 뻔한 안을 이걸 계선으로, 경계선이라고 가지고 나오느냐... 도대체 그건 상식 이하임.</p> <p>◦ 그것을 이 정전협정 상태하</p>	<p>◦ 이렇게 하고 넘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p> <p>군사공동위원회에다 이것을, 이 문제를 넘긴다. 우리 군사분과위원회 권능에 따라서, 또 쌍방이 의견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것도 역시 그렇게 명문화하고 넘기는 것이 어떻겠는가</p> <p>◦ 13조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임.</p> <p>『북과 남의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동해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위도상으로 연장한 선으로 한다. 서해에서는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해당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p>

우 리 측	북 한 측
<p>에서는 이제까지 준수해 온, 지켜온 관행을 존중하자. 그것이 이 문제를, 남북한간의 대화를 원만히 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대안이 없다든가, 이래서 지금 하는게 아님.</p> <p>문제는 귀측에서 내놓은 해상경계선이 너무나 엉뚱한 그런 걸 내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다가는 도대체 다른 회담이 도저히 안되겠구나 그래서 기본합의서 수준으로 하자고 얘기하는 것임.</p> <p>○ 기본합의서에 있는 그 수준으로 했는데, 귀측 13조 내용은 이걸 도저히 지금 여기에서 협의해야 할 내용이 아님.</p> <p>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그래도 계속 필요하다면 고위급회담 차원에서 이걸 얘기하자.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p>	<p>온 계선과 구역으로 한다.』</p> <p>○ 13조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음. 기본조항에 맞게 수정을 하자 하면...</p> <p>『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한 해상경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하자』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음.</p>

우 리 측	북 한 측
<p>고위급회담에서 군사분과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하려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p> <p>그래서 이 장은 우선 이 성립되지 않는 『관할해 온 개선과 구역』했는데, 개선이 지금 어떤 개선을 얘기하는지도 지금...</p> <p>귀측에서 얘기할 때는 뭐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있을 수가 없음.</p> <p>○ 군사공동위원회가 물론 그 위원장이, 위원장 개인의 직급... 여기보다 상위인거는 사실임.</p> <p>그러나 군사공동위원회가 고위급회담보다 상위가 될 수 없음.</p> <p>이 문제를 고위급회담에서 군사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라 하면 우리는 논의를 하는거고, 그 회담에서 이걸 별도의 양당국자의 별도의 기구로 넣어서</p>	<p>정전협정에(따라) 해상안(해상경계선)규정을 하면, 이제 말하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을 연장한 선으로 할 수 있음.</p> <p>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섬관리문제도 표현한 것이고, 또 우리측이 관할하는 섬문제도 표현한 것임.</p> <p>그래서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라고 알고 있음.</p> <p>군사공동위원회에서 토론하게 합시다.</p>

우 리 측	북 한 측
<p>이 문제를 고위급회담에서 군사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라 하면 우리는 논의를 하는거고, 그 회담에서 이걸 별도의 양당 국자의 별도의 기구로 넣어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하면 거기서 논의하는 거고 하는 것이지, 군사공동위원회라는 하나의 군사기구에다가 이것을 준다는 것은 우리는 반대임.</p> <p>그 입장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시고 이걸 검토하시기 바람.</p> <p>공동위원회가, 다시 말하지만 고위급회담 상위기구가 아님.</p>	

나.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1) 관련조항 대비

우 리 측	북 한 측
<p>[초안] : 별개의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제시</p>	<p>[초안]</p> <p>제 5조</p> <p>북과 남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용한다.</p> <p>① 북과 남은 본 부속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으로 직통전화를 설치한다.</p> <p>② 직통전화는 북측 인민무력부장과 남측 국방부장관사이에 설치한다.</p> <p>③ 직통전화운영은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p>

우 리 측	북 한 측
<p>[제1차 수정안] : <제5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p> <p>제12조</p> <p>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3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이하 “군사직통전화”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① 군사직통전화는 남측의 국방부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설치한다.</p> <p>② 쌍방은 전신타자기 2회선과 모사전송기 2회선, 전화기 2회선을 설치하고 유선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로 무선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p> <p>③ 쌍방이 설치한 전신타자기, 모사전송기 및 전화기는 쌍방간에 상호 통신이 가능한 기종으로 선정한다.</p>	<p>[제1차 수정안] : [초안] 제5조에 ④항 추가</p> <p>④ 직통전화 설치,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쌍방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p>

우 리 측	북 한 측
<p>제 13조</p> <p>군사직통전화는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p> <p>① 군사직통전화는 24시간 운영하며, 매 6시간마다 통신망 점검을 실시한다.</p> <p>② 쌍방간 긴급통신은 전신타자기를 사용하여 송수신을 하며, 모사전송기로 수신을 확인하고 전화를 사용하여 통신내용을 확인한다.</p> <p>③ 쌍방은 군사직통전화를 통하여 비방중상하거나 선전선동하지 않는다.</p> <p>④ 기타 통신문의 양식, 우선순위, 통신절차, 통신보안문제 등 실무적 운용규정은 별도로 정한다.</p>	

(2) 발언대비

우 리 측	북 한 측
<p>○ 귀측은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문제를 단일부속합의서 가운데 하나의 조항으로 취급하여 다른 문제들이 모두 타결되어야 실천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음.</p> <p>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 제13조는 남북사이의 우발적 무력충돌과 그 확대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을 독립조항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임.</p> <p>따라서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는 독립된 부속합의서로 채택되는 것이 합당한 것임.</p> <p>더욱이 남북사이에 다른 직통전화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당국자간에 별도의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렇게 해야 할만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 만큼, 그 합</p>	<p>○ 직통전화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도 귀측에서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 우리는 단일합의서 안에 포함시켜놨는데 차이가 있다면 단일인가 개별인가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임.</p> <p>왜 앞의 9조, 10조, 11조의 부속합의서가 없는가...? 이걸 내가 말하는 것임.</p> <p>직통전화 설치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직통전화 설치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주겠음.</p> <p>직통전화를 설치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의가 없음.</p> <p>설치하자는 것임. 그래서 설치하려는 문구에 합의를 하자는 것임. 이것은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란 말임.</p> <p>직통전화 설치하는 그 무슨 큰 복잡한 문젠가? 통신반에 맡겨서 설치하면 간단한 문제임.</p>

우 리 측	북 한 측
<p>의의 취지에 맞게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임.</p>	<p>○ 통신을 남북사이에 설치한다는 것도 합의를 본게고, 어느 날까지 합의 본다는 것 합의불수 있는 계고, 누구 누구사이에 설치한다는 것 합의 본게고...</p>
<p>우리측이 제안한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은 이와 같은 특수성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제13조에 명시한 규정에도 매우 충실한 안인 것임.</p>	<p>귀측 17조에 『실무자접촉』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어 있음.</p>
<p>귀측 역시 우발적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를 설치할 것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고 이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더이상 이에 관한 논의를 뒤로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음.</p>	<p>그렇기 때문에 전화선을 몇회선으로 하느냐, 어떤 무슨 모사 전송기를 쓰겠느냐, 어떤 누구 마따나 전송기를 쓰고... 이거는 통신실무자들이 토론하면 그 건 대까닥 할 수 있을 것임.</p>
<p>우리측은 귀측이 이제라도 이같은 입장에 동의함으로써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에 대한 합의를 이룩하게 되기를</p>	<p>그리고 통신방법에 대한 문제도 통신전문가들이 하면 됨.</p>

우 리 측	북 한 측
<p>기대함.</p> <p>◦ 남북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문제는 구체적인 통신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함.</p> <p>또한 군사직통전화는 긴박한 군사상황하에서 신속 정확하게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신타자기에 의한 긴급 문서통신을 위주로 운영되어야 함.</p> <p>우리측안의 제5장은 이러한 군사직통전화 성격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임.</p> <p>군사직통전화는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합의만 하면 용이하게 실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속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p>	

우 리 측	북 한 측
<p>○ 『직접 통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화기에다 전화로 통화하는 것으로만 해서는 안됨.</p> <p>○ 군사직통전화는 기본적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해야 되는거기 때문에, 요거는 고장나거나 또 는 어떤 차단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임.</p> <p>그래서 통상적으로 유선을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유선회선으로 무선회선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것임.</p> <p>○ 음성전화기로 상호간에 긴급한 군사문제를 얘기할 경우에 자칫하면 발음이 나쁘다든가, 오히려 통신문이 길어지면</p>	<p>○ 직통전화 운영은 19조임.</p> <p>『군당국자들 사이에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도 하고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해서 쌍방 군당국자들 사이에 직접 통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p> <p>직접통화할 수도 있음. 이런 조항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해야 됨.</p> <p>○ 직통전화 설치문제 경우도 마땅히 부속합의서에 포함시켜 동의되어야 한다고 봄.</p> <p>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부속합의서를 해당부 문별로 내오게 되어있지 해당조항별로 만들게는 되어있지 않음.</p> <p>○ 통신실무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토론하면 전신타자기가 필요 하겠는지, 혹은 유선전화기 필요하겠는지, 혹은 무슨 어떤 모</p>

우 리 측	북 한 측
<p>받아쓰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신타자기와 같이 바로 문서화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통신문 내용을 보내주는 그러한 통신방법이 문서통신임.</p> <p>전신타자기도 하나의 수단이지. 거기에 또 무슨 뭐 모사전송기도 있을 수 있음.</p>	<p>사가 필요하겠는지... 이걸 그들이 만나서 서로 가능한 통신수단을 선정하게 하면 될 것임.</p> <p>전화문이란, 전화문이란 그 통신수단이 선정되는데 따라서, 구두로 하는 전화문도 되게 할 수 있고, 전신기를 도입할 수도 있고, 모사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각이함.</p> <p>우린 그 전화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런것은 아니라는 것임. 그 전화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 전화만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p>

다. 협의·이행기구

(1) 관련조항 대비

우 리 측	북 한 측
<p>[초안]</p> <p>제 12조 쌍방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군사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 해결한다.</p> <p>[제1차 수정안] : <제6장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사항></p> <p>제 20조 문안은 초안과 동일</p>	<p>[초안]</p> <p>제 4조 북과 남은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p> <p>[제1차 수정안]</p> <p>제 4조 북과 남은 불가침의 리행과 담보 및 준수를 위한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북남군사공동위원회는 북남합의서 제12조와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자기 사업을 한다.</p>

우 리 측	북 한 측
<p>[제2차 수정안] : <제5장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사항></p> <p>제 12조</p> <p>쌍방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군사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 해결한다.</p>	<p>[제2차 수정안] : <제4장 북남군사공동위원회></p> <p>제 16조</p> <p>북남군사공동위원회는 북남합의서 제12조와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자기사업을 한다.</p>
<p>[제3차 수정안] : <제5장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사항></p> <p>제 18조</p> <p>(문안은 [제2차 수정안]과 동일)</p>	<p>[제3차 수정안] : <제4장 북남군사공동위원회></p> <p>제 16조</p> <p>(문안은 [제2차 수정안]과 동일)</p>
<p>[제4차 수정안] : <제5장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사항></p> <p>제 20조</p> <p>(문안은 [제3차 수정안]과 동일)</p>	

우 리 측	북 한 측
<p>[제5차 수정안] : <제5장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사항></p> <p>제 19조</p> <p>남과 북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군사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해결한다.</p> <p>제 20조</p> <p>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의 임무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한다.</p>	

(2) 발언대비

우 리 측	북 한 측
<p>○ 우리 입장은 근본적으로 공동위원회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조항임.</p> <p>왜그러냐면 이미 기본합의서에도 군사공동위원회의 임무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고, 군사공동위원회에 관한건 이미 별도의 합의서로 이미 나와 있음.</p> <p>바로 그 차이점이 뭐냐면 18조에는 군사분과위원회 기능뿐만이 아니라, 중요한거는 기본합의서에서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해서 이런 이런걸 해야 한다 하는 조문이 있다 이것임.</p> <p>기본합의서에 명시가 돼 있음.</p> <p>그러면 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어디서 할거냐? 그것이 분명히 부속합의서에 명기돼야 된다 하는 것임.</p>	<p>○ 귀측에서는 그저 여하케 하면 군사공동위원회 문제는 이미 그 합의서에 있고, 또 기구가 탄생된 것만큼, 이 부속합의서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우리측에서는 역시 분과위원회에는 어떻게 될 한다는게 다 이미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만큼, 그게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임.</p>

우 리 측	북 한 측
<p>그거는 기본합의서에 지침이 또 나와 있다 이것임.</p> <p>군사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고 또 부속합의서 서문에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그리고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이렇게 명기를 했음.</p> <p>그 얘기는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것이 명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임.</p> <p>군사적 신뢰조성과 단계적 군축, 그리고 검증문제를 협의·추진하라 하고 기본합의서에 아주 명기가 돼 있다 이것임.</p> <p>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공동위원회에다 줄 수는 없는거고, 이 문제는 군사분과위원회에다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임.</p> <p>○ 둘다 없애면 전문도 또 바</p>	

우 리 측	북 한 측
<p>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측 4장과 우리 5장을 지난 번에 얘기한대로 통합장으로 해가지고 둘다 넣자.</p> <p>○ 군사분과위원회와 군사공동위원회의 임무는 구분되어 있음을 재인식해야 하겠음.</p> <p>남북기본합의서 제14조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그리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를 기초로 하여 불 때 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고, 협의한 데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기구이며, 군사공동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한 기구로서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의 실현문제를 협의·추진하는 기구인 동시에 불가침의 실천을 확인·감독하는 기구이</p>	

우 리 측	북 한 측
<p>기도 함.</p> <p>문제는 합의사항의 실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임.</p> <p>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이 군사정전협정 위반사항이면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의거하여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규정한 군사적 신뢰조성 문제, 군축문제, 검증문제 등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면 되는 것임.</p> <p>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정전위원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처리해야 할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임.</p>	

라. 공동위 기능 및 운영문제

우 리 측	북 한 측
<p>○ 공동위원회가 12조에 따라 받은 그 『신뢰조성』, 『군축』, 『검증』이 엄청나게 크고 많은 일들임. 아주 중대한 일들이고 이것이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부속합의서라는 것이 그런 이행과 관련 없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p>	<p>○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북남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협의·추진한다』 이렇게 되었음.</p>
<p>부속합의서도 그것이 불가침 이행과 틀림없이 관련되고 또 이행을 준수해야 됨.</p>	<p>말하자면, 불가침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의 협의·추진문제를 기능에 잡아 넣었음.</p>
<p>지금 그 공동위원회 12조에서 준 그 기능이 굉장히 엄청나고 큰 일들임.</p>	<p>귀측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언급돼 있지 않고 있음.</p>
<p>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 일이 중대하고, 크고 복잡한 문제가 많을테니 이견이대로 하고 부속합의서는 공동위원회에다 또 이걸 덧붙여서 주느냐, 아니면 이 부속합의서는 별도의 어떤 그 실천기구라</p>	<p>○ 북남합의서 2장 불가침 12조에 『북과 남은 불가침 이행과 담보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p>
	<p>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것은 남북 최고당국자들이 처음으로 민족앞에 발표시킨 것만큼, 그 기능을 불가침 이행을 위한 이 부속합의서를 협의·추진한다고</p>

우 리 측	북 한 측
<p>든가 또는 바로 이걸 지정해 가지고 실천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지금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 그 견해 차이일 뿐임.</p>	<p>명백히 명기하자는 것임. ◦ 공동위원회의 기능이 아무리 많고 복잡하다 해도, 이 문제는 하게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른 걸로 혼탕시키면 안됨.</p>
<p>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대로 불가침 이행보장과 관련해서 『고위급회담에서 위임하는 사항』 하면 이걸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절충안을 제안함.</p>	<p>◦ 군사공동위원회가 불가침문제 이걸 하는 데서 기본 협의. 이행기관인데, 또 다른 어떤 협의기구를 모색해서 갖다 이거 일감을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또 다른 공동위원회를 또 지금 타산하는 것 같음.</p>
<p>◦ 불가침과 이행보장은 현재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체제라는 두가지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어떤거는 정전협정체제에 따라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거는 남북간에 해야 될 것도 있음.</p>	<p>이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음. 이 합의서의 이행하고 맞지 않음. 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가운데는 마땅히 부속합의서를 이행하는 문제가 들어가야 하며 또 군측과 신뢰조성, 검증문제도 들어가야 됨.</p>
<p>그럼 『군사공동위』라는 것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만들어진</p>	<p>◦ 그 다음에 우리측에는 없는 기능문제 『북남고위급회담에서</p>

우 리 측	북 한 측
<p>기군데, 그러며는 이행과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12조에 명시된 기능외에 만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고위급회담에서 부속합의서는 어떤 파트는 공동위에서 해라 또 어떤 부분은 이거를 별도 기구로 정하자 여러가지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정전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잘 협의해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단순히, 부속합의서를 협의·추진한다 이렇게 못을 박으며는 현실하고 맞게 되지 않음. ○ 우리가 이제 부속합의서 나중엔 토의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부속합의서가 나올텐데 이게 한 개로 나오든, 열개로 나오든 나올텐데, 	<p>위임하는 사항』이라는게 있음. 이것은 구태여 무슨 기능은 받지 않아도 일없음.</p> <p>그대신 넣는다면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이외의 문제를 협의·추진한다는 식의 우리 조항대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음.</p> <p>왜냐하면 군사적 신뢰조성, 군축실현관련 문제는 이미 우리가 12조에 다 넣어 들어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군사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 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을 이행하고 담보하기 위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음. <p>그 부속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기구를 만든다고 조문화된 것은 없음. 자의적인 해석이란 필요 없음.</p> <p>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어디에 부속합의서가 토의되는데 따라서 무슨 기구를</p>

우 리 측	북 한 측
<p>그 가운데는 분명히 공동위가 할 수 있는 것, 공동위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는 사항이 반드시 나온다.</p> <p>그래서 일괄적으로 부속합의서를 공동위로 한다 라고선 여가다가 규정짓는 것은 이견 현실에 맞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가지 분명하게 귀측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지금 귀측은 12조와 14조를 완전히 혼동을 하고, 혼탕을 지금 시키고 있음. <p>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12조에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이다 하는 것을 또 명시를 해줬음.</p> <p>그리고 그밖에 14조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문제다 그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해서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음.</p>	<p>내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없음.</p> <p>군사공동위원회는 그 협의된 문제를 이행하는 실천기구임.</p> <p>그렇기 때문에 협의한 것을, 협의한 것을 군사공동위원회가 어느 것은 실천하고, 어느 것은 실천하지 않는다. 이 주장이 타당치 않음.</p> <p>그러니 이제 이 2조에서는 우리가 군사위원회 기능문제를 귀측의 다섯개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정립되는 것은 일치를 봤음.</p> <p>그 다음에 귀측에서 내놓은 고위급회담에서 위임하는 사항, 우리가 불가침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이행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한채 숙제로 남겨놓은 것으로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공동위원회 운영문제임. 3조임. <p>귀측에서는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p>

우 리 측	북 한 측
<p>따라서 이 부속합의서를 쌍방간에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금 어떤 기구를 별도로 창설할 필요가 있겠는지, 공동위원회로 이것을 넘겨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과위원회에서 그대로 문제를 협의·해결하고 끝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이 부속합의서가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하는 얘기임.</p>	<p>원칙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이렇게 되어 있음.</p>
<p>○ 우리가 지금 『월1회』로 한 기본취지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뢰조성, 군축문제, 검증문제가 이거 하려면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 하려면 좀 빈번해야 되고...</p>	<p>그러나 우리는 『군사공동위원회는 1년에 3회정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의의 시기에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 군사공동위원회가 높은 급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회의인데, 너무 빈도가 잦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음.</p>
<p>그래서 직급도 총참모장이다. 이제 이렇게 좀 높은 급에서 나오면 이게 제대로 회의가 되겠느냐.</p>	<p>그 다음 둘째로는 군사공동위원회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운영되는 그러한 조건에서 또 공동위원회를 매달 한번씩 열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음.</p>
	<p>이런 면에서 우리 년에 그저 3회정도 크게 하고, 제기되는 문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풀고, 그리고 일정한 정도로 무엇</p>

우 리 측	북 한 측
<p>그러나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하는 군축문제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신뢰문제가 워낙이 중대한 문제니까 할래면 아주 그냥 딱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월1회로 했음.</p>	<p>이 종합되어서,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결심을 받을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었음.</p>

마. 군사분과위 · 공동위 및 군정위 역할분담문제

우 리 측	북 한 측
<p>○ 최근 귀측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일련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쌍방간의 진지한 대화를 위한 신뢰분위기를 손상시킨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p> <p>지난 제4차 회의에서 5월 22일에 있었던 귀측 무장병력의 침투도발사건은 군사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이므로 귀측이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진상을 규명하도록 귀측에게 정중히 요구한 바 있음.</p> <p>그러나 귀측은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군사정전위원회 개최에 불응함으로써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했</p>	<p>○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군사령부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사이에 체결된 협정임.</p> <p>우리는 이번 사건(무장병력침투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측으로부터 그 어떤 정전위원회 소집과 관련된 우리가 통보를 받은 것이 없음.</p> <p>그런데 귀측에서는 정전협정의 체약당사자도 아니고, 또 유엔군 성원도 아닌데 난데없이 귀측 장성이 나타나서 회의 소집을 촉구했고 또 회의장에 나타났음.</p> <p>지금 정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말한다면 미국측이 3월 스무닷새 날부터 우리하고 약속된 모든 것을 어기고 귀측 군장성을 수석위원으로 임명하는데 그 원인이 있음.</p> <p>정전협정 요구대로 모든 것이 있게 되면 군사정전위원회가 소집됨.</p>

우 리 측	북 한 측
<p>을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크게 손상시켰음.</p> <p>귀측이 조속한 시일내에 군사정전위원회의 개최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신뢰분위기 조성에 성의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함.</p> <p>○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연 한국군의 참여없이 휴전협정이 유지될 수 있는가? 없음.</p> <p>지금 귀측에서는 과거에, 무슨 유엔군사령관으로, 해가지고서는 그거 따질 때가 아님. 그런 의미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임.</p> <p>대한민국 군대하고 안하고 누구하고 하는가? 이 문제를... 군사적 대결상태 어떻게 해결하는가?</p> <p>어떤 그런 이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런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아님.</p>	<p>그렇기 때문에 소집되지 않은 책임에 대해 쓴 자체가 우선 잘못됐음.</p> <p>오늘 회의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중대한 문제인 것만큼 기록에 남길 것을 내가 재의함.</p> <p>○ 군사정전위원회만 놓고 보아도 전쟁재발을 막을 사명을 지니고 있으나 오늘처럼 군사적 대결이 위험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사실상 그위험한 대결상태를 막지 못했음.</p> <p>그래서 우리가 북남사이에는 군사공동위원회가 그것을 막자는 것임.</p> <p>○ 불가침에 남북이 합의한것만큼,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된 것만큼, 이 북남군사공동위원회가 책임적으로 불가침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행하자는 것임.</p>

우 리 측	북 한 측
<p>○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이 다 명시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무력불사용과 관할구역 침역 안하는거 다 되어있고, 그 문제가 두가지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이 병존하고 있지 않은가?</p> <p>둘다 지킨다고 약속한 거 아닌가? 그러며는 여기에서 할 일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도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무조건 다 여기에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5조 정신에 위배된다 이것임.</p> <p>○ 불가침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거냐?</p>	<p>○ 북남사이에 이룩한 이미 된 합의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감독하고 통제하고 이행하는 것은 다 군사공동위원회가 하게돼 있음.</p> <p>여기 무슨 정전위원회는 거들게 못됨.</p> <p>정전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사이에 존재하는 기구임.</p> <p>그러나 군사공동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북남사이에 존재하는 기구임. 그리고 정전위원회보다 오히려 군사공동위원회가 상당한 정도로 권능이 있다고 생각함.</p> <p>자의적으로 불가침에 관한 이행·준수 일부 조항은 정전위원회에서 한다 이걸 자의적인 해석임.</p> <p>○ 귀측에서는 이 이행대책을 군사정전위원회가 다룰 문제도 있고, 군사정전위원회하고 군사공동위원회가 동시에 다룰 문제</p>

우 리 측	북 한 측
<p>군사공동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음. 분과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정전협정? 군정위에서도 할 수 있음.</p>	<p>가 있고, 또 어떤 것은 군사공동위원회가 다룰 수 있다는 문제라고 언급했음.</p> <p>이 주장도 역시, 그렇게 타당하지 못한 주장임. 왜냐하면 쌍방 합의에 대한 귀측의 주장은 쌍방 합의에는 위반으로 됨.</p> <p>북남합의서 12조에는 불가침의 이행과 담보를 위해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돼있음.</p> <p>결국 군사공동위원회가 불가침을 이행하고 준수하고 담보하는 기구라는 것을 말해줌.</p> <p>북남합의서 10조는 북남사이의 모든 분쟁과 의견대립은 북과 남사이에 해결하게 돼있음.</p> <p>아직 정전위원회는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기구는 아님.</p> <p>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조 1항, 2항의 공동위원회가 불가침의 이행·준수·담보를 위한 문제를 자기 기능에 담고 있음.</p>

우 리 측	북 한 측
	<p>북남합의서 그 어디에도 불가침에 관한 어떤 조항은 정전위원회에서 한다. 불가침에 관한 어떤 문제는 군사공동위원회·정전위원회 같이 한다. 또 어떤 것은 군사공동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한다. 이렇게 북남사이에 합의된게 어디 있는가?</p> <p>법적인 문건을 가지고 다닌다면 내놓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사이에 합의된 불가침을 이행할 수 있는 기구는 유일하게, 유일하게 군사공동위원회밖에 없음. ○ 명백히 군사분과위원회는 군사공동위원회가 이행할 문제를 협의하는 협의기구임. <p>군사적 대결상태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란 말임.</p> <p>군사분과위원회가 협의기구라면 군사공동위원회는 이행기구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위원회 문제는 더 거들지 않겠음.

우 리 측	북 한 측
	<p>정전위원회 문제를 얘기하면 귀측에서 기분 나빠함.</p> <p>그렇기 때문에 얘기 안하겠음.</p> <p>다만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남사이에 불가침을 합의 했고, 북남사이에 합의한 불가 침을 이행할 기구는 군사공동위 원회다 이것임</p>

Ⅲ.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타결과정

1.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분야 타결과정

가. 타결과정(개략)

남북 양측은 제5차 고위급회담(91. 12)과 대표접촉에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완전 타결짓고, 제6차 고위급회담(1992. 2)에서 이를 발효시켰는 바,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제9조~제14조)의 타결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리측은 제1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과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류실시, 군사정보 상호 공개 및 교환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5개항을 포함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8개항)과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바탕위에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 방향』 5개항을 제시하였음.
- 북한측은 경제·문화 등 교류는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9개항)과 『북남 불가침협정』을 채택하고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음.
- 북한측은 남북간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가 급선

무이며 『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후 교류·협력 실시』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 우리측은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는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군사훈련 사전통보, 군 고위책임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의견일치 사항을 조기 합의하여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음.
- 우리측은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간의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전문, 15개조)을 제시하고 북한측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9개조)과 함께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초안)』(전문, 21개조)을 단일합의서로 제시하였음.
- 우리측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문제에 대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라』를 포함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측의 삭제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불가침 경계선 문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현상 변경의 여지를 봉쇄하였고, 불가침 이행 보장장치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여 명시하기로 합의하였음.
- 우리측은 『군사공동위』의 기능에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인사교류 및 군사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기습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및 현장검증을 적

시하자는 주장을 관철시켰음.

- 남북쌍방은 네차례에 걸친 문안정리를 위한 대표접촉에서
①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③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④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하고
 -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제9조~제14조를 완전히 타결지었음.
-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타결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측 태도의 특징은
 - 불가침의 구성요소로서 『상호 무력불사용문제』, 『외국의 침략과 무력간섭 불가담문제』, 『불가침담보를 위하여 무력축감과 미군철수 등 기본적인 군사적 대책 확인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2~3년간 중지해 줄 것 과 이 문제를 앞으로 구성될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 위임하고 최소한 내년만이라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우리측이 『선 신뢰구축, 후 군축』을 주장한데 대해 북한측은 『신뢰구축과 군축의 병행추진』을 주장하였음.
 - 분쟁의 평화적 해결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하며, 유엔헌장에 따름으로써 국제화하거나 국제공동체 상호간에 적용될 문제를 민족내부에 적용해서 안된다고 주장하였음.

-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군비축소를 비롯한 주한미군철수 등 군사문제 우선 해결이라는 그들의 기존입장은 계속 견지하였음.

나. 쌍방제의 및 주장비교

<제9조 무력불행사 및 침략금지>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침략이나 파괴·진북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2차)</p>	<p>○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는다. (2차)</p>
<p>-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 진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3차)</p>	<p>- 북과 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한다. (3차)</p>
<p>-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진북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4차)</p>	<p>-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4차)</p>
<p>-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아니한다. (5차)</p>	

우 리 측	북 한 측
<p>○ 우리측은 『무력불행사 원칙』을 규정함에 있어 기본관계의 설정과 신뢰구축을 전제로 하여 쌍방이 불가침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실천의지와 확고한 보장장치가 수반된 불가침에 합의할 것을 주장함.</p>	<p>○ 북측은 『무력불행사 원칙』의 본질적 의미와 내용에 충실하기 보다는 이 조항을 『평화·군사선언』으로서의 불가침선언으로 간주하고, 특히 『대외적 조치의 강구』를 계속 주장하여 이 규정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하는 자세를 견지함.</p>
<p>○ 쌍방은 북측의 『대외적 조치의 강구』주장 철회 등 상호 절충과정을 통해 국제관계 일반원칙으로서의 『무력불행사 원칙』에 충실한 내용으로 규정하는데 합의</p>	
<p>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p>	

<제10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1차)</p>	<p>○ 북과 남은 있을 수 있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2차)</p>
<p>- 쌍방은... (4차)</p>	<p>- ...호상간에 야기되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 (3차)</p>

우 리 측	북 한 측
<p>○ 우리측은 쌍방간의 의견대립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에 준거하여 책임있는 당국자간에 협의·해결하자고 주장하였음.</p>	<p>○ 북측은 의견상이와 분쟁은 당국뿐만아니라 민간급 대화를 통해서도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당국』부분의 삭제를 요구, 또한 국제연합헌장을 국가간의 규정(2개 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삭제하거나, 『통일 3원칙』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음.</p>
<p>○ 쌍방은 국제연합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헌장의 정신에 따른다는 양해하에 『당국』과 『국제연합헌장』을 삭제하는데 합의</p>	
<p>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p>	

〈제11조 불가침 경계선·구역〉

우 리 측	북 한 측
<p>○ 쌍방간 불가침의 영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쌍방이 각기 관할해온 영역으로 한다. (4차) - 남북간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p>	<p>○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2차) - 북과 남은 불가침의 경계선을...으로 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시</p>

우 리 측	북 한 측
<p>선으로 하며 해상에서의 불가침 구역은 군사정전협정 발효 이후 쌍방이 각기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5차)</p>	<p>킨다. (3차) - 북과 남의 불가침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체결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4차) - 북과 남의 불가침경계선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지역으로 한다. (5차)</p>
<p>○ 우리측은 불가침 『영역』을 정전협정에 따라 각기 관할해 온 영역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음. ○ 육상의 DMZ와 해상의 서해 5도문제등을 감안한 안을 제시하였음.</p>	<p>○ 북측은 불가침 『경계선』을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영역』은 국가간에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이의 변경을 요구하였음.</p>
<p>○ 쌍방은 이러한 절충과정에서</p>	<p>불가침 경계선은 군사분계선으로, 불가침구역은 쌍방이 관할해 온 영역으로 하는데 합의</p>
<p>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p>	

<제12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간다. (1차)</p> <p>－ 남과 북은 군비경쟁을...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간다. (3차)</p> <p>－ 쌍방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경쟁지양 및 불가침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한다. (7개항)</p> <p>－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고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주요 군사훈련과 부대이동의 사전통보, 훈련참관단의 교환,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한다. 남과 북은 무력침략을 상호 억제하기 위하여 대량</p>	<p>○ 군비통제와 북남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군 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차)</p> <p>－ 북과 남은 호상 불가침에 관한 약정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2차)</p> <p>－ 북과 남은 불가침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한다.</p> <p>－ 북과 남은 불가침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한다. 북과 남은 불가침약정을 리행하며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결할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이 선언이 발표된 때부터 2개월안에 구성·운영한다. (4차)</p>

우 리 측	북 한 측
<p>살상무기와 기습공격 능력을 우선 제거하고 쌍방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군비축소를 추진해 나간다.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의 이행을 위하여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며 상주 감시체제를 교환 운영한다. 남과 북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 6개월 이내에 남북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5차)</p>	<p>－ 북과 남은 불가침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동시에 군축을 실현한다. 북과 남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리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안에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5차)</p>
<p>○ 우리측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후 단계적인 군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군사정보교환 등의 신뢰구축 조치를 합의서에 독립조항으로 명기할 것을 제의하였음.</p> <p>○ 우리측은 남북한은 군축이</p>	<p>○ 북측은 불가침선언의 담보조치로서의 신뢰조성 문제는 군축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에서 신뢰구축과 군축이 분리추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p> <p>○ 우리측의 신뢰구축조치 내용은 군사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변하였음.</p> <p>○ 북측은 군축이 병력감축에</p>

우 리 측	북 한 측
<p>단계적으로, 무력감축에 따라 병력감축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공격작전·기습능력 제거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p>	<p>상응하게 장비를 축소·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폭적인 병력감축,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된 여러 군축안을 제시하였음.</p>
<p>○ 쌍방은 이와같은 의견대립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양보, 신뢰구축과 군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신뢰구축조치의 내용을 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으로 명기할 것에 합의</p> <p>○ 쌍방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시까지 각기 상이한 안을 제시함에 따라, 막후접촉 및 문안정리 과정을 통해 신뢰구축과 군축의 동시추진, 단계적 군축과 검증문제 등을 포괄하여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할 것에 합의</p>	
<p>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p>	

〈제13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우 리 측	북 한 측
<p>○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간에 직통전화를 즉각 설치·운영한다. (1차)</p> <p>-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2차)</p> <p>- 우발적 무력충돌과 같은 군사적 긴급 사태와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자간에...</p> <p>(4차)</p> <p>- 남과 북은... 운영한다. (5차)</p>	<p>○ 북과 남은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쌍방 고위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1차)</p> <p>- 북과 남은 당면하여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2차)</p>
<p>○ 우리측은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하나로 우발적 무력충돌과 이의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간의 직통전화 설치를 제의하였음.</p>	<p>○ 북측은 고위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를 제의하였음.</p>

우 리 측	북 한 측
○ 쌍방은 이 문제에 대한 큰 이견없이 독립된 조항으로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우 리 측	북 한 측
○ 남과 북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한다. 남북교류협력... 남북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는 신뢰구축문제와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채택문제를 협의 해결한다. (3차) - 쌍방은 본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남북정치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본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해결한다. (4차) - 남과 북은 본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본회담 테두리안에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 북과 남은 본회담의 테두리안에서 분과위원회들을 내오고 이 선언의 리행과 담보에 관한 대책들을 토의한다. (3차) -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북남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리행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5차)

우 리 측	북 한 측
<p>설치하여 남북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반 군사문제를 협의한다. (5차)</p>	
<p>○ 우리측은 합의서 발효후 1개월이내에 정치군사분과위를 발족시켜 신뢰구축문제와 함께 불가침문제를 협의·해결할 것을 제의하고 정치군사분과위에서 협의할 불가침에 관한 우리측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p>	<p>○ 북측은 불가침을 확고히 보장하고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위해 초보적이고 필수적인 군사적 신뢰조치들을 합의서에 명기하지 않고 군사분과위로 넘기자고 주장</p>
<p>○ 우리측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과위원회 기능을 수용하여 불가침에 관한 사항 뿐만아니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반 군사문제도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합의.</p>	
<p>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p>	

2.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타결과정

-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 －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1992년 3월 13일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한 후 8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위원접촉, 1차례의 위원장 접촉을 통해 전문과 6장 19조로 구성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음.
-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는 전문, 제1장 무력불사용(제1조~제3조), 부기사항(1장 후단),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제4조~제8조),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제9조~제11조),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제12조~제15조), 제5장 협의·이행기구(제16조~제17조), 제6장 수정 및 발효(제18조~제19조)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가. 주요쟁점

(1) 기본문제

(가) 기본입장 및 협의원칙

- 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협의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당사자 해결원칙』, 『균형추진 원칙』, 『실천성 보장원칙』을 제시하였고,
 - 북측은 남북군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지켜야 할 자세와 입장으로 『자주적 입장』, 『넓은 대결관념 탈피』, 『성실한 자세』를 제시하였음.

(나) 부속합의서 채택문제

- 우리측은 부속합의서가 토의결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선언적 합의서가 되어서는 안될 뿐만아니라 포괄적 단일 부속합의서의 채택이 개별합의 또는 즉각 실천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한데 반하여
 - 북한측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분야의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을 토의의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포괄적 단일 부속합의서의 시한부 채택을 기정사실화하려 하였음.

(다) 합의서 작성순서 및 시한

- 우리측은 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기본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기한

내 반쪽,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문제, 불가침분야의 여타 합의사항에 대한 부속합의서 채택 순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부속합의서 작성에 시한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음.

-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부속합의서 작성시한은 군사공동위원회 발족시한인 5월 19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라) 부속합의서의 수

- 우리측은 이행대책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각각 필요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한데 반하여
 - 북한측은 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모든 조항들을 포괄하는 단일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주장하였음.

(마) 부속합의서의 성격 및 작성원칙

- 우리측은 원칙적, 지침적 성격의 내용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만큼, 부속합의서는 기본합의서 테두리안에서 구체적·실천적 성격의 내용으로 작성·합의하여 발효시키는데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자고 한데 반해
 - 북한측은 부속합의서의 성격을 논의하자는 것이 지연전술이라고 주장하였음.

(2) 부속합의서 내용문제

- 우리측은 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과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제3차 회의에서 『남북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한 후 5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 － 북한측은 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북남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과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한 후 3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 쌍방은 제4차 회의에서 부속합의서를 형식면에서 단일화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음.

(가) 부속합의서 명칭 및 전문

- 우리측이 부속합의서의 명칭을 『남북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로 제시하자
 - － 북한측은 우리측 명칭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음.
 - － 6차 회의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

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로 타결지었음.

- 전문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조정을 거쳐 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합의하였음을 명백히 하였음.

(나) 무력불사용(제1장:제1조~제3조)

- 제1장은 모든 형태의 무력행사 금지(1조), 모든 형태의 침략행위 금지(2조),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3조)로 되어 있으며,
 - 협의과정에서 무력불사용의 지역적 범위, 무력사용 대상, 무력행사의 유형, 침략 등의 용어 정의, 침략행위의 유형 등에 이견을 보였음.

(다) 부기사항(제1장 후단)

- 쌍방이 협의 과정에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한 북한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 문제를 군사공동위에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여 부속합의서 타결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였음.

(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제2장:제4조~제8조)

○ 제2장은 무력충돌의 사전방지(제4조), 우발적 침범시 사후조치(제5조), 우발적 침범·충돌시 통보(제6조), 분쟁해결(제7조), 합의서 위반시 처리(제8조)로 되어 있으며,

－ 협의과정에서 우리측은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사항의 명시가 필요한 점, 불가침 관련 분쟁문제들을 군사공동위 뿐만아니라 별도의 기구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점, 합의서 위반시 처리에서 책임자 처벌, 원상복구, 재발방지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고,

－ 북한측은 불가침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결 하자고 주장하였음.

(마)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제3장:제9조~제11조)

○ 제3장은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제9조),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제10조),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제11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우리측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하여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 북한측은 군사공동위에서 더 논의할 것을 주장, 상호 절충하여 합의하였음.

(바)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제4장:제12조~제15조)

○ 제4장은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제12조)

조), 통신방법(제13조), 통신실무자접촉(제14조), 개
통시기(제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우리측은 제1차 회의에서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합의서(안)』을 독립합의서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제3차 회의시 북한측의 주
장을 받아들여 『부속합의서(안)』에 단일화한 수정
안을 제시하여 타결지었음.

(사) 협의·이행기구(제5장:제16조~제17조)

- 제5장은 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제16조), 군사분과
위원회에서의 추가적 협의(제17조)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으며,
 - 우리측은 군사분과위를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주된 기능을 담당하는 협의기구로 하고 군사
공동위는 합의서가 이미 나왔으므로 필요없다고
한데 반하여,
 - 북한측은 군사공동위에 관한 조항을 들 것을 주장
하여
 - 제8차 회의에서 북한측안을 수용하여 타결지었음.

(아) 수정 및 발효(제6장:제18조~제19조)

- 쌍방은 별다른 이견없이 합의하였음.

(3)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 쌍방은 1차회의시 각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

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

- 우리측은 군사공동위원회가 협의기구인 동시에 고위급회담 테두리내의 기구임을 강조한데 반하여
- 북한측은 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만 작성하고 실천에 따르는 제반사항은 군사공동위원회에 넘기자고 주장하였음.
- 쌍방은 발효절차문제, 고위급회담 보고문제, 정기회의 개최문제, 공동위원회 기능문제, 군사분과위원회 및 군사정전회의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여
- 제7차 고위급회담 기간중 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접촉을 갖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완전 타결짓고 서명 발효시켰음.

나. 쌍방제의 및 주장비교

(1) 부속합의서 명칭, 전문

〈부속합의서 명칭〉

우 리 측	북 한 측
○ 남북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 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 (3차)	○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북남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차)
-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 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	-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우 리 측	북 한 측
<p>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 (4차)</p> <p>— 남북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6차)</p>	<p>《제2장 북남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담보를 위한 부속합의서 (4차)</p>
<p>○ 부속합의서(안)의 명칭은 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부속합의서의 성격에 맞게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라는 내용과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시급한『무력불사용과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대책을 나타내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5차)</p>	<p>○ 부속합의서(안)의 제목이 전반내용을 규제하고 상징할 수 있는 함축된 표현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5차)</p>
<p>○ 우리측이 북측의 안을 수용하여 합의.</p>	
<p>『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p>	

< 전 문 >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 한다)제2장에 규정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남북사이의 무력불사용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3차)</p> <p>-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제2장에 규정한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6차)</p>	<p>○ 북남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북남불가침』의 리행과 준수,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차)</p> <p>-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북남불가침>의 리행과 준수 및 담보,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 (4차)</p>
<p>○ 우리측이 북측의 안을 수용하여 합의</p>	
<p>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2) 무력불사용(제1장:제1조-제3조)

<장제목>

우 리 측	북 한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6차) - 무력불사용 (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력불사용 (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부분을 현재와 같이 제1장, 또는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거나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부분을 제1장에 포함시키는데 반대하고 제2장에 포함시키자고 하고, 제2장의 제목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사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이 북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합의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무력행사금지>

우 리 측	북 한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상대방의 인원, 물자, 장비 등이 상대방의 관할 구역 안이나 밖에 소재하는지를 불문하고, 이들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총포사격과 폭탄투하, 습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상대방 관할구역 안이나 쌍방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그리고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를 비롯한 장비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 등 무력을... (2차 위원)</p> <p>- ...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과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7차)</p>	<p>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의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피해를 주거나 위협하는 일체 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1차)</p> <p>-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의 관할구역밖에 있는... (3차 위원)</p>
<p>○ 기존안 후반부에 대한 절충안 제시함.</p>	<p>○ 남측 조문 체계를 수용한 수정안 제시함.</p>
<p>○ 쌍방이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절충하여 합의</p>	
<p>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p>	

<제2조 침략행위금지>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 합의서 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무력사용이나 침략을 하지 아니하며, ... (3차)</p> <p>-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 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침략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체제 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무력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일단 침략행위를 구성하며, 특히 다음의 행위는 명백한 침략행위로 규정한다. (6차)</p> <p>- 남과 북은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체제 또는 관할구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어느 일방이 무력을 먼저 사용하여 상대방의 체제 또는 관할구역을 침해하는 것은 일단 침략행위를 ... (2차 위원)</p> <p>- 남과 북은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지 아니하며, 관할구</p>	<p>○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p> <p>북과 남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땅, 바다, 하늘을 위협하거나 침입, 침공, 강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차)</p> <p>- 북과 남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땅, 바다, 하늘을 위협하거나 침입, 침공, 강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차)</p> <p>- 북과 남은 무력으로 상대방이 관할하는 땅, 바다, 하늘을 침공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p> <p>북과 남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 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3차 위원)</p>

우 리 측	북 한 측
<p>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거나 상대방의 군대를 공격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 또는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7차)</p> <p>- ... 상대방 관할구역의 일부 ... (8차)</p>	
<p>○ 북측안은 기본합의서 해당 조항의 중복·나열에 불과하며 남측안 제2조 1호 (상대방 관할구역 침입, 공격, 점령) 내용에 국한되는 것임.</p> <p>○ 북측안이 『관할구역』만을 불침략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남측안은 상대방 체제의 주권·영토 등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일반적인 침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p>	<p>○ 남측안 내용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p>
<p>○ 쌍방은 일부 표현을 수정·삭제하여 합의에 도달하였음.</p>	

우 리 측	북 한 측
<p>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p>	

<제3조 적대행위금지>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자기측 관할구역 밖의 해상 및 그 공중에서 국제법 또는 국제관례에 적합하게 정지하여 있거나 이동중인 상대방의 선박, 함정, 항공기에 대하여 모의공격 행위나 진로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차)</p> <p>○ 남북 쌍방의 관할구역 밖의 ... 활동중이거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수단에 대하여... (2차 위원)</p> <p>- 남과 북은 쌍방의... 국제관례에 따라 적법하게... (7차)</p>	<p>○ 북과 남은 상대방의 땅, 하늘을 무력으로 둘러막는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1차)</p> <p>○ 북과 남은 땅, ... 양으며 상대방 지역으로 드나드는 제3국의 인원, 선박, 함선, 비행기를 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4차)</p> <p>- 북과 남은 상대방의 령해와 령공을 무력으로 봉쇄하지 않는다. 북과 남은 상대방의 관할구역으로 드나드는 제3국의 인원, 선박, 함선, 비행기와 쌍방의 관할구역밖의 해상 및 공중에서 행동하거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북남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p>

우 리 측	북 한 측
	과 물자, 수송수단들을 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3차)
<p>○ 우리측이 기존안 제3조 ①항(모의공격행위, 진로방해행위)을 별도 독립조항으로 설정하고 북측과 절충하여 북측이 제기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부기처리하고 합의.</p>	
<p>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p>	

(3)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계속 협의사항(제1장 후단 부기사항)

우 리 측	북 한 측
<p>○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 전보장문제</p>	<p>○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p> <p>○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p> <p>○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 하지 않는 문제</p>
<p>○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야포나 미사일 또는 로케트가 과실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상대방 수도권으로 발사되어 쌍방간에</p>	<p>○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지대에 일체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1차)</p> <p>○ 북과 남은 땅, 바다, 하늘에</p>

우 리 측	북 한 측
<p>전면적인 무력충돌사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차)</p>	<p>서 상대방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다. (1차)</p> <p>○ 북과 남은 상대방의 땅, 바다, 하늘을 무력으로 둘러막는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1차)</p>
<p>○ 우리측은 남측안 제4조(수도권 안전보장조치), 북측안 제1조(군사분계선일대 무력증강금지), 제4조(정찰활동금지), 제5조 전반부(봉쇄금지)를 군사공동위로 위임한다는 것을 공동발표문으로 하자고 주장하였음.</p>	<p>○ 북측은 군사공동위로 위임한다는 것을 부속합의서에 조문화해서 넣자고 주장하였음.</p>
<p>○ 우리측이 북측의 주장을 절충하여 부기 처리함.</p>	
<p>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시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p>	

(4)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2장:제4조~제8조)

<장제목>

우 리 측	북 한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의 평화적 해결 (6차) -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의 평화적 해결 (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1장의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부분을 제2장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부분을 제2장에 포함시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로 하자고 제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이 북측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합의.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무력충돌 사전방지>

우 리 측	북 한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북은... 또한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이 자기측 관할구역에 대하여 우발적 침범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경고를 하여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긴급한 분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1차) - 북과 남은 상대방의 계획적인 무력침공 징후나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상대측에 즉시 경고하여

우 리 측	북 한 측
<p>한다. 경고 및 신호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호규정에 의거하되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3차)</p> <p>-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과실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쌍방의 무장세력 사이에 의도되지 아니한 적대 행위가 이루어져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차)</p> <p>- 남과 북은... 기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이... 쌍방은 상대방이 자기측 관할구역에 대하여 우발적 침범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의한 사전경고를 하여야 한다. (7차)</p> <p>- 남과 북은...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8차)</p>	<p>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세운다. (4차)</p> <p>- 북과 남은 상대방의 계획적인 무력침공징후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3차 위원)</p>

우 리 측	북 한 측
<p>○ 우리측은 기존안을 수정하여 별도의 독립조항으로 설정하여 북측의 주장과 절충시켜 합의</p>	
<p>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운다.</p>	

<제5조 우발적 침범시 사후조치>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어느 일방에 의한 우발적 침범이 발생하였을 때 쌍방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확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p> <p>② 상대방 관할구역에 우발적으로 침범한 어느 일방의 무장세력은 적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호규정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적대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상</p>	<p>○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느 일방의 무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상대방 관할구역에 침입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확인한 후 빠른 시일안에 귀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차)</p> <p>- 북과 남은 어느 일방의 무장</p>

우 리 측	북 한 측
<p>대방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③ 남과 북은 자기측 관할구역을 우발적으로 침범한 상대방의 무장세력이 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이들에 대하여 공격을 자제하고 그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p> <p>④ 남과 북은 자기측 관할구역을 우발적으로 침범한 상대방의 무장세력에 대하여 적법한 조사를 거쳐 지체없이 귀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귀환조치의 시한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차)</p> <p>- 남과 북은 어느 일방 무장세력의 구성원이나 함정, 항공기 등 수송수단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또는 무장세력 구성원의 고의가 아닌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 관할구역을 우발적으로 침범하였을 때 쌍방 사이의 무력충돌이 발생·확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p>	<p>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은 그를 긴급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3차 위원)</p>

우 리 측	북 한 측
<p>를 취한다. (6차)</p> <p>- ...우발적으로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쌍방이 인정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며 상대방의 안전유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상대측은 적법한 조사를 거쳐 지체없이 귀환조치를 취한다. 귀환조치의 시한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7차)</p> <p>- 남과 북은 ... 또는 기타 인원, 선박, 항공기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고의가 아닌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측은 그를 확인한 후 긴급대피를 허용하고 침범측은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상대측은 적법한 조사를... (8차)</p>	
<p>○ 쌍방은 문안을 정리하고 내용을 절충하여 합의.</p>	
<p>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p>	

우 리 측	북 한 측
<p>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안에 돌려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 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p>	

<제6조 분쟁중지 및 통보>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우발적 침범이나 쌍방 사이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확대방지와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p> <p>① 우발적 침범이나 무력충돌 사건현장의 지휘책임자는 자기측 군사당국자(국방부장관/합참의장:인민무력부장/총참모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p> <p>② 상기①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사당국자는 상대방 군사당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자기측 무장세력의 적대</p>	<p>○ 북과 남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긴급한 분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를 군사당국자사에 설치한 직통전화를 통하여 즉시 상대측에 통보한다. (1차)</p> <p>- 북과 남사이에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긴급한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를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3차 위원)</p>

우 리 측	북 한 측
<p>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p> <p>③ 상대방 군사당국자는 상기②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는 즉시 자기측의 적대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3차)</p> <p>－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남측 국방부장관/북측인민무력부장)는 즉각 자기측 무장세력의 적대행위를 중단시키고 상대방 군사당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2차 위원)</p> <p>－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 침범이나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세력의 적대행위를 중단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7차)</p>	
<p>○ 우리측이 문안을 조정하여 한개의 조문으로 제시하여 합의.</p>	

우 리 측	북 한 측
제6조 남과 북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분쟁해결>

우 리 측	북 한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군사당국자는 적대행위의 중단을 확인함과 함께 사건해결 및 사후조치를 위한 긴급협의를 실시한다. (3차) -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발생시 쌍방 군사당국자는 적대행위의 중지를 확인함과 함께... (7차) ○ 우리측은 분쟁문제 협의·해결은 원칙적으로 분과위 소관사항이며 공동위만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함. (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와 해상, 공중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비롯하여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한다. (1차) -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3차 위원) ○ 북측은 분쟁문제의 협의·해결을 북남사이에 합의된 이행기구인 공동위만이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함. (7차)
○ 쌍방은 대립되는 주장을 절충하여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해결한다.	

<제8조 합의서 위반시 공동조사 및 책임확보>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사의 실시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측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이 합의서를 위반한 자기측 인원을 처벌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책임을 진다. 이 합의서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측은 상대방에게 위반책임자의 처벌여부에 관한 확인과 원상복구, 손해배상, 사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차)</p> <p>- 남과 북은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측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측은 사과, 손해배상, 원상복구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차 위원)</p>	<p>○ 북과 남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리행 및 준수와 관련한 쌍방의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4차)</p> <p>- 북과 남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에 위반되는 사건을 발생시켰을 경우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3차 위원)</p>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 및 준수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차)</p>	
<p>○ 우리측은 북측안의 전반부를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후반부는 기존안 고수)하고 북측안의 조사진행, 책임추궁 등의 표현은 애매하며 우리측안 후반부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였음.</p>	
<p>○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고 문안을 조정하여 합의.</p>	
<p>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p>	

(5)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제3장:제9조~제11조)

<장제목>

우 리 측	북 한 측
<p>○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6차)</p>	<p>○ 불가침 경계선 (5차) -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3차 위원)</p>

우 리 측	북 한 측
○ 북측이 우리측안을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하여 합의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9조 지상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6차)</p> <p>－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2차 위원)</p> <p>－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7차)</p>	<p>○ 북과 남의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현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1차)</p> <p>－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현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5차)</p> <p>－ 북과 남의... (3차 위원)</p>
○ 우리측이 북측안의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을 수용하고 문안정리하여 합의.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해상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6차)</p> <p>—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후... (7차)</p>	<p>○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동해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위도상으로 연장한 선으로 하며 서해에서는 <조선정전에 관한 협정>해당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계선과 구역으로 한다. (1차)</p>
<p>○ 우리측은 해상불가침 경계선·구역이 공동위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강조하였음.</p>	<p>○ 북측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고위 군사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위에서 협의하자고 주장하였음.</p>
<p>○ 쌍방은 쟁점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타결지었음.</p>	
<p>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p>	

<제11조 공중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상대방 관할구역상공을 존중한다. (2차 위원)</p> <p>—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구역은 지상 및 해상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7차)</p>	<p>○ 공중불가침 경계선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수직되게 공중으로 연장한 선으로 한다. (1차)</p> <p>— 북과 남의 공중불가침 경계</p>

우 리 측	북 한 측
	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수직되게 공중으로 연장한 선과 관할구역 상공으로 한다. (3차 위원)
○ 우리측은 공중불가침 경계선·구역이 군사공동위만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 북측은 공중불가침 경계선은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자고 주장하였음.
○ 쌍방은 일부표현을 수정하고	문안을 정리하여 합의.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 상공으로 한다.	

(6)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제4장:제12조-제15조)

<장제목>

우 리 측	북 한 측
○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4차)	○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5차)
○ 우리측이 별개의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단일화한 수정안으로 제시하여 쌍방은 장제목에 합의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우 리 측	북 한 측
○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3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	○ 북과 남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

우 리 측	북 한 측
<p>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이하 “군사직통전화”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군사직통전화는 국방부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설치한다. (4차)</p> <p>－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의 국방부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7차)</p>	<p>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북과 남은 본 부속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으로 직통전화를 설치한다. 직통전화는 북측 인민무력부장과 남측 국방부장관 사이에 설치한다. (1차)</p> <p>－ 직통전화는 북측 인민무력장과 남측 국방부장관 사이에 설치한다. (5차)</p> <p>－ 북과 남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측 인민무력장과 남측 국방부장관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3차 위원)</p>
<p>○ 쌍방은 조항을 정리하고 장을 합치시켜 합의</p>	
<p>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p>	

<제13조 군사직통전화 통신방법>

우 리 측	복 한 측
<p>○ 쌍방은 전신타자기 2회선과 모사전송기 2회선, 전화기 2회선을 설치하고 유선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로 무선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쌍방이 설치한 전신타자기, 모사전송기 및 전화기는 쌍방간에 상호 통신이 가능한 기종으로 선정한다. (4차)</p> <p>- 군사직통전화 설치에 유선 회선을 주로하며, 유선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로 무선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전신타자기 등에 의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2차 위원)</p> <p>-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전신타자기 등에 의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p>	<p>○ 직통전화운영은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1차)</p> <p>-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 사이에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전화문을 교환하는.... (3차 위원)</p>

우 리 측	북 한 측
통화할 수 있다. 유선회선 고장시에 대비하여 예비로 무선회선을 준비한다. (7차)	
○ 우리측이 군사직통전화 통화방식은 정확·신속을 기하기 위해 문서통신을 위주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북측이 이를 수용하여 문안에 합의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통신실무자접촉>

우 리 측	북 한 측
○ 쌍방은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기술적, 실무적 사항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10일이내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회의를 갖는다. (4차) - 군사직통전화 설치와 운용 규정 등에 관한 기술적·실무적 사항들은 이 합의서 발효후 10일이내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해결한다. (2차 위원)	○ 직통전화 설치,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쌍방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5차) -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북남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3차 위원)

우 리 측	북 한 측
<p>- 군사직통전화 설치, 운용과 관련한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7차)</p>	
	<p>○ 쌍방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해결한다는 것으로 문안을 정리하여 합의.</p>
<p>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p>	

<제15조 군사직통전화 개통시기>

우 리 측	북 한 측
<p>○ 쌍방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쌍방이 합의하는 일시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4차)</p> <p>-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7차)</p>	<p>○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3차 위원)</p>
<p>○ 우리측 주장에 북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여 합의.</p>	
<p>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p>	

(7) 협의 · 이행기구(제5장:제16조-제17조)

<장제목>

우 리 측	북 한 측
○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 · 준수사항 (4차) - 불가침의 협의 및 이행기구 (7차)	
○ 우리측이 남측안 제5장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 · 준수사항』과 북측안 제4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단일장으로 할 경우 제목을 『불가침 협의 · 이행기구』로 할 것을 제시하고 북측이 수용하여 합의.	
제5장 협의 · 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우 리 측	북 한 측
○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의 임무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8차)	○ 북과 남은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1차) - 북과 남은 불가침의 이행과 담보 및 준수를 위하여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우 리 측	북 한 측
	<p>북남군사공동위원회는 북남합의서 제12조와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자기사업을 한다. (4차)</p> <p>－ 북남군사공동위원회는 북남합의서 제12조와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자기 사업을 한다.</p> <p>(5차)</p>
<p>○ 우리측은 남북군사공동위는 기본합의서 제12조의 이행과 보장기구로서, 이를 불가침 전 반에 관한 포괄적인 이행기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합의서 제5조, 제12조, 제14조에 위배됨을 지적하였음.</p>	<p>○ 북한측은 남북간에 합의된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문제를 군사공동위 이외의 기구에서 다루는 것은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사공동위의 별도의 장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p>
<p>○ 우리측이 북측안을 수용하여</p>	<p>합의.</p>
<p>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p>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우 리 측	북 한 측
<p>○ 쌍방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군사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 해결한다. (3차)</p> <p>- 남과 북은... (8차)</p>	
<p>○ 우리측은 부속합의서 채택 이후에도 협의할 문제가 생기면 추가적인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합의한 바 있음을 지적하고 군사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할 것을 주장.</p>	
<p>○ 북측이 우리측안을 수용하여 합의</p>	
<p>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p>	

(8) 수정 및 발효 (제6장:제18조~제19조)

<장제목>

우 리 측	북 한 측
○ 수정발효 (4차)	○ 수정 및 발효 (5차)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수정·보충>

우 리 측	북 한 측
○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3차)	○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1차)
○ 쌍방은 이견없이 조 번호를 변경하여 합의.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효력발생>

우 리 측	북 한 측
○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차)	○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차)
-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차)	
○ 우리측이 북측안을 수용하여 문안을 정리하여 합의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IV.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을 위한 통신실무자접촉

1. 성립배경 및 경과

- 1992. 9. 15~9. 18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기본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음.
-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4장에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 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 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 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 접촉에서 해결한다.

제 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 전화를 개통한다.

- 이에 따라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문제를 위한 제1차 통신실무자 접촉이 '92. 10. 28 판문점에서 열렸음.
- 여기에서 우리측은 쌍방 합의시한(부속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인 '92. 11. 6 이전에 군사직통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실무토의를 조속히 타결지을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재개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 한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실무토의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으며 쌍방 기본입장만을 확인하였음.
- 우리측은 제2차 접촉을 11월 4일에 갖자고 제의하였으나 (10. 30 전통문) 북한측은 우리측의 『화랑』, 『독수리』훈련 실시를 구실로 이를 거부하였음.

2. 제1차 통신실무자접촉 회의

가. 회의일정

- 일시:1992. 10. 28(수), 10:00~11:50(비공개)
- 장소: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나. 제1차 남북통신실무자접촉 회의 발언요지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 기본입장	- 부속합의서 제4장 제13조는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	- 부속합의서 제4장에서는 쌍방군사당국자간의 『군사직통전화』를 명시하고 있음.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p>신을 하는 기기와 전화문을 교환하는 기기를 다같이 설치해 놓고 그중의 어느 한가지가 고장이 나거나 할때 또는 긴급히 통신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한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설치』는 3가지로 하고 『운영』은 한가지 방법으로 해야함.</p>	<p>첫째 : 통신종류는 전화이며 둘째 : 전화선로는 필요이상으로 두지 말아야 함. 이는 합의서 제4장에 명시된대로 철저히 이행하는 것임.</p>
<p>○ 군사직통전화의 운영 및 통신방법</p>	<p>- 부속합의서 제4장 제13조에서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쌍방군사 당국자들이 직접 전화통화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3가지 방법을 모두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군사직통전화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따라서 문서통신에</p>	<p>- 『문서통신』이란 통신방법으로서 통신방법은 통신수단에 따라 규제되는 것임. 따라서 통신수단이 전화기가 되면 전화문이 될 것이고 전신기가 되면 문서통신이 될 것임. - 그러나 합의서에는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직통전화의 운영을 뜻』하는 것이며 『직통전</p>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p>대한 인쇄전신기와 모사전신기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함.</p>	<p>『화의 통신수단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철저히 이행하게 되면 우발적인 무력충돌이라거나, 계획적인 군사행동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임. 따라서 통신용량문제 및 가입자가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부장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직통전화는 1회선에다 예비회선까지 해서 2회선 정도면 될 것임.</p>

다.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을 위한 통신실무자 접촉 합의서(안) 비교

우 리 측	북 한 측
<p>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을 위한 통신실무자 접촉 합의서(안)</p>	<p>북남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문 초안</p>
<p>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p>	<p>북남군사통신실무자접촉에서는 북남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p>

우 리 측	북 한 측
<p>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에 정한바에 따라 1992년 10월 28일부터 ○월○일 사이에 ○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통신실무자 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p>	<p>에 관한 구체적 실행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1. 통신회선의 구성 및 장비의 설치</p> <p>(1)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사이에 인쇄전신 2회선, 모사전신 2회선, 전화 1회선과 인쇄전신, 모사전신, 전화의 예비회선을 각 1회선씩 가설한다.</p> <p>(2)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간의 통신회선은 이미 포설되어 있는 회선중 8회선을 사용하고, 그밖에 자기측 지역의 연장회선은 각기 가설한다.</p> <p>(3) 인쇄전신기 및 모사전신기는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p>	<p>1. 북남군사직통전화(이하 군사직통전화라 함)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북남군사당국자 사이에 전화 2회선을 구성한다.</p> <p>② 군사직통전화는 북측 인민무력부장관과 남측 국방부장관사이에 설치하며 전화기는 호상 통신이 가능한 형으로 한다.</p> <p>③ 군사직통전화 회선구성에서 자기측 관할구역의 시설공사와 설비 설치는 각기 책임지고 진행한다.</p> <p>④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서의 군사직통전화 회선은 현재 부설된 전화회선 가운데 각기 1회선</p>

우 리 측	북 한 측
<p>하여 각회선에 쌍방간 동일기종이 연결되도록 설치하며, 이를 위해 쌍방은 각기 자기측 인쇄전신기와 모사전신기를 각 2대씩(예비용 포함)상대측에 제공한다. 상대측에 제공한 장비는 1992년 11월 2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통하여 교환하며, 교환시 그 설치와 운용방법을 상대측에게 알려준다.</p> <p>(4) 통화용 전화기는 각자가 선정, 설치한다.</p>	<p>씩 2선식으로 연결한다.</p>
<p>2. 회선규격 및 접속</p> <p>(1) 군사직통전화 회선은 2선식 음성급으로 하며, 기술기준은 국제 전신전화 자문위원회(씨.씨.아이.티.티)권고규격을 사용한다.</p> <p>(2) 남·북간 군사직통전화 회선의 접속번호는 <별표 1>과 같이 한다.</p>	<p>⑦ 쌍방은 자기측 관할지역의 통신설비와 시설들의 전기적 특성을 각기 공인된 기술 기준치로 보장한다.</p> <p>⑧ 판문점안에서 군사직통전화 기본기술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전송주파수대역 0.3~0.4키로헤르쯔 ○ 호출신호16~25헤르쯔 /75볼트

우 리 측	북 한 측
<p>3. 설치, 시험 및 개통</p> <p>(1) 1992년 11월 3일까지 군사직통전화의 설치를 완료하고, 11월4일 오전 10시 군사직통전화 운용근무자간에 최종점검을 위한 시험통화를 한다.</p> <p>(2) 1992년 11월5일(목) 정오를 기하여 정식 개통한다.</p>	
<p>4. 군사직통전화의 운용</p> <p>(1) 군사직통전화망은 상시 운용하며, 항상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p> <p>(2) 통신방식은 인쇄전신기와 모사전신기를 이용한 문서통신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회선은 쌍방 군사당국자간의 직접통화, 시험통화 및 문서통신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p> <p>(3) 군사직통전화망의 통신권자는 남측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으로 하고, 북측은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남북 군사</p>	<p>2. 군사직통전화 운영과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군사직통전화 리용은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p> <p>② 군사직통전화는 24시간 운용한다.</p> <p>③ 군사직통전화 기술근무인원은 쌍방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으로 한다.</p> <p>④ 군사직통전화의 정상운동을 위한 통화, 신호 시험은 매일 2회 진행한다.</p>

우 리 측	북 한 측
<p>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으로 한다.</p> <p>(4) 쌍방은 통신내용에 대하여 그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군사직통전화망을 이용하여 비방중상하거나 선전 선동 하지 않는다.</p> <p>(5) 쌍방은 군사직통전화망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험통신을 매일 2회 실시한다. 시험통신 시각은 매일 06시, 18시 정각으로 하며, 06시에는 남측에서, 18시에는 북측에서 상대방을 호출한다.</p> <p>(6) 쌍방간의 시험통신은 각 회선별로 구분 시험한다. 통화회선의 시험은 회선상태를 문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인쇄전신과 모사전신 회선의 시험은 <별표 2>의 양식에 의한다.</p> <p>(7) 쌍방은 각기 10명내외의 군사직통전화망 운용근무자를 임명하고 그 명단을 1992년 11월 2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p>	

우 리 측	북 한 측
<p>상호 통보한다. 이후 운용근무자의 교체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p> <p>(8) 문서통신의 양식은 <별표 3>과 같이 한다.</p>	
<p>5. 회선 및 장비고장 발생시 조치</p> <p>(1) 군사직통전화회선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쌍방 기계실간에 이를 통보하고 쌍방은 자기측 지역을 책임지고 보수하며, 『평화의 집』과 『통일각』간의 고장은 양측이 공동으로 수리한다.</p> <p>(2) 상대측으로부터 받은 인쇄전신기 또는 모사전신기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측에 통보와 예비장비로 교체 운용하며, 고장장비는 고장발생 72시간내에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상대측의 정상장비와 교체 한다.</p> <p>(3) 모든 군사직통전화망이 분통될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여타 남북간의 직통전화나 기타 빠</p>	<p>⑤ 자기측 지역의 통신설비와 시설들에 대한 보수정비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진행한다.</p> <p>⑥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서의 군사직통전화 회선의 보수는 사전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한다.</p>

우 리 측	북 한 측
큰 수단과 방법으로 군사직통전화망의 기능을 대체한다.	
6. 수정·보충 및 발효 (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2) 이 합의서는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문은 쌍방통신실무자들이 협의하여 수정보충 할 수 있다.
1992년 월 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인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1992년 월 일 북측통신실무대표 남측통신실무대표

〈별표 1〉 남·북 군사통신회선의 접속번호

구 분	용 도
남북군사 1번	남측 인쇄전신회선
남북군사 2번	북측 인쇄전신회선
남북군사 3번	남측 모사전신회선
남북군사 4번	북측 모사전신회선
남북군사 5번	국방부장관-인민무력부장간 통화회선
남북군사 6번	쌍방간 인쇄전신 예비회선
남북군사 7번	쌍방간 모사전신 예비회선
남북군사 8번	통화 예비회선

〈별표 2〉 인쇄전신, 모사전신 회선시험 양식

(호출자용)

시 험 통 신 문		
① 시험통신일시	년 월 일	시
② 호 출 자	(계급)	(성명)
③ 제 목	시험통신	
④ 내 용		
1. 장비상태는 정상인가?		
2. 틀리거나, 빠진 글자는 없는가?		
3. 시험통신문 글자는 똑똑하게 잘 보이는가?		

(응답자용)

시 험 통 신 문		
① 시험통신일시	년 월 일	시
② 호 출 자	(계급)	(성명)
③ 제 목	시험통신	
④ 내 용		
○ 장비상태는? (정상, 비정상)		
○ 틀리거나, 빠진 글자는? (있음, 없음)		
○ 글자는 똑똑하게 잘 보이는가? (잘보임, 흐림)		

〈별표 3〉 문서통신양식

군 사 통 신 문	① 일련 번호	
②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③ 발 신		
④ 수 신		
⑤ 제 목		
⑥ 내 용		
⑦ 송신 담당자	(계급)	(성명)

라. 쌍방 합의서(안)의 차이점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1. 군사직통전화 설치 ○ 장비설치	- 인쇄전신:2회선 - 모사전신:2회선 - 전화:1회선 - 인쇄전신·모사전신·전화 예비회선: 각 1회선	- 전화 2회선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국방부장관 · 합참의장 · 군사공 동위 남측 위원장 - 북측:인민무력부 장 · 총참모장 · 군사 공동위 북측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국방부장관 - 북측:인민무력부장
<p>2. 운영,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방법 ○ 기본기술 기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전신기와 모사 전신기를 이용한 문서 통신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회선은 쌍방군사 당국자간의 직접통화, 시험통화 및 문서통신 의 보조수단으로 사용 - 국제전신전화 자 문위원회(C·C·I· T·T) 권고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문 교환 - 유효전송주파수 대역:0.3~0.4키로헤 르쯔 - 호출신호:16~25 헤르쯔 /75볼트
<p>3. 군사적통전화망 불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의 직통전 화나 기타 빠른 수단 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급 없음

경제공동위원회

〈목 차〉

I. 남북경제회담 추진경과 (1984~1985)	287
1. 남북경제회담 개요	287
2. 제1~5차 남북경제회담 경과	291
3. 쌍방제의 주장 비교	305
II. 남북 교류·협력 부문 합의내용	315
1. 「교류·협력」에 대한 쌍방 기본입장	315
2. 남북기본합의서상의 교류·협력부문 내용	318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326

I. 남북경제회담 추진 경과 (1984~1985)

1. 남북경제회담 개요

가. 배 경

- '84년 9월 남한지역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큰 수재와 관련, 북한측이 수재물자 제공을 제의해 온데 대해 우리측은 국제적십자연맹의 수해복구 원조 제의까지 사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상부상조하는 선례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측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남북간 수재물자 인도 인수가 이루어졌음.
- 우리 정부는 대남 수재물자 인도인수 작업이 종료된 후 10월 12일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간 교역과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쌍방당국의 경제분야 대표들과 민간경제단체 대표들이 서로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음.
- 북한측도 버마 랭군테러사건('83. 10. 9) 자행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실추된 그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합영법」 발표('84. 9. 8) 등 대서방 자본·기술 유치 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남북경제회담이 적합하다는 내부적 수요에 따라 우리측 제의를 수락하였음.

〈관련 일지〉

일 자	내 용
'84. 8.20	○ 전두환 대통령, 남북한간 교역·경제협력 제의 및 물자·기술 무상제공 용의 표명
9. 8	○ 북한, 『합영법』 제정·발표
9.29 ~10. 4	○ 북한적십자회의 대남 수재물자 인도 인 수 진행 - 장소 : 판문점·인천항·북평항 - 품목 : 쌀 5만석, 옷감 50만미터, 시멘 트 10만톤, 의약품 14종 등
10.12	○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대북 서한, 남북경제회담 제의 - 정부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쌍 방 당국 및 민간경제단체 대표들로 대 표단 구성
10.13	○ 경제 4단체장, 남북경제회담 수락 촉구 합동성명 발표 - 남북한 물자교역 및 합작투자방안 등 협약에 북한측의 긍정적 호응 촉구
10.16	○ 북한측 김환 부총리, 남북경제회담 수락 -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회담 을 '84년 11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

나. 회담일정 및 대표단

〈회담일정〉

회 담	일자 및 장소
제1차 회담	○ '84. 11. 15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제2차 회담	○ '85. 5. 17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원래 쌍방간 합의된 회담 날짜는 '84. 12. 5 이었으나 북측이 소련인 판문점 탈출사건발생('84. 11. 23) 및 우리측의 T/S훈련 등을 구실로 연기를 거듭
제3차 회담	○ '85. 6. 2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제4차 회담	○ '85. 9. 18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제5차 회담	○ '85. 11. 2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제6차 회담 (미개최)	○ '86. 1. 22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북측은 T/S-'86훈련을 구실로 회담을 무기 연기

〈대표단〉

	우 리 측	북 측
수석 대표	김기환(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이성록(무역부 부부장)
대표	차상필(상공부 제2차관보)	계형명(채취공업위원회 참사)
	구본태(통일원 연구부장)	백준혁(조선국제무역촉진 위 상무위원)
	김인준(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허항찬(조선대외무역협조 총회사 부사장)
	신봉식(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이진식(금속공업부 국장)
	노진식(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손종철(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임병석(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상임이사)	김해룡(조선광명연합회사 부사장)

※ 제2차 회담때부터 우리측 차상필 대표가 임인택 대표
(상공부 제2차관보)로, 북측 백준혁 대표가 한영읍 대
표(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위원)로 교체되었음.

2. 제1~5차 남북경제회담 경과

가. 제1차 회담('84. 11. 15)

- 남북 쌍방은 회담의제, 회담운영 절차문제,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방안, 교류·협력의 선후문제, 남북경제협력기구 설치·운영문제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음.
- 남북 쌍방은 회담의제에 대해 집중토의를 진행하였던 바, 의제를 단일의제로 하되 북측의 의제 초안중 「합작」을 「협력」으로 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루었음.
- 남북 쌍방은 이미 가설되어 있는 남북 직통전화 회선 중에서 경제회담용 회선을 별도로 지정하여 이용하기로 합의하였음.

(쌍방 제의내용 비교)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의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에 교역을 실시하는 문제 ○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하여」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물자교역 문제	<p style="text-align: center;">〈교역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 희망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탄·철광석·선철·연괴·아연괴·규사·고철 등 - 명태·누에고치·팥·옥수수·피마자 등 농수산물 - 기타 한약재 ○ 판매 가능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및 제품, 동 및 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 -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경운기, 승용차, 2륜자동차 등 기계류 - 시계·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음향기기 등 전기·전자제품 	<p style="text-align: center;">〈교류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희망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광석·석탄·마그네샤크링카·일반공작기계·채취설비 등 공업상품 - 명태·쌀·강냉이 등 농수산물 ○ 구입 희망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재·중석광·납사·섬유 등 공업상품 - 남해어족·소금·감귤 등 농수산물

구 분	우 리 측	북 측
<p>물자교역 문제</p>	<p>- 섬유원료·섬유직 물·담요 등 섬유 류</p> <p>- 기타 고무벨트·피 아노·황산카리·정 제 글리세린 및 의약품 등</p> <p>〈교역량〉</p> <p>○ 쌍방의 대내 수급사 정과 대외무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품목 별로 결정</p> <p>〈가 격〉</p> <p>○ 원칙적으로 객관적 국제가격을 기준으 로 하되 교역 당사 자간 상담을 통해 결정</p>	

구 분	우 리 측	북 측
<p>물자교역 문제</p>	<p>〈거래당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주체는 쌍방당국이 지정하는 특정 교역기관 또는 상사로 하고 가급적 거래창구를 일원화하되 점차 다원화 <p>〈거래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제3국 은행 발행 L/C에 의한 거래방식이 가장 합리적임. ○ 교역 초기단계에는 구상무역형태도 무방함. ○ 교역이 확대될 경우 청산협정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p>〈결제업무의 취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은행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진전에 따라 양측의 외국환은행을 창구로 고려할 수 있음. 	<p>〈거래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교류는 원자재, 완제품과 농수산물을 유무상통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는 원자재끼리 - 완제품은 완제품끼리 - 농수산물은 농수산물끼리 교류하는 것이 합리적임.

구 분	우 리 측	북 측
<p>물자교역 문제</p>	<p style="text-align: center;">〈결제통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교환성 통화(US\$, DM, ¥, £ 등)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함. ○ 장차 남북간의 결제에만 통용되는 새로운 결제단위 창출을 고려함. <p style="text-align: center;">〈관 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간의 무역이 아니므로 관세부과는 불필요함. <p style="text-align: center;">〈수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화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입측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철도수송이 가능토록 남북간 철도연결 작업도 추진함. 	<p style="text-align: center;">〈수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항만 이용이 능률적임. - 우선 경의선을 연결함. - 남포항·원산항과 인천항·포항항을 개방·이용토록 함.

구 분	우 리 측	북 측
<p>물자교역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량 화물은 자동차를 이용하며 이를 위해 판문점에 공동 하역장을 설치함. <li style="text-align: center;">〈기타 문제〉 ○ 물자교역에 수반되는 통관, 검사, 통신 문제, 사고처리 및 이견조정 문제 등 구체적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함. ○ 이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이고 원활한 남북간 교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당국간에 교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수반되는 관련 제반 세부약정을 체결함.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경제협력 및 합작투자 문제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사업〉</p> <p>○ 우리는 이미 20개 시범실천사업을 통해 남북간에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남북어민들을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추진 등을 제의한 바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지하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p> <p>○ 쌍방이 자기의 노력, 설비로써 상대측 광산과 탄광을 이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음. 우리는 철광산, 탄광을 제공하고 귀측은 중석광산, 몰리브덴(수연)금속광산 등을 우리측에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작투자·기술협력〉</p> <p>○ 남북간 물자교역을 추진하면서 무연탄, 철광석 등 자원개발,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 음향기기 등 가전제품 생산, 폴리에스텔계 등 섬유류 생산, 의약품 및 화장품 생산, 기타 관광 및 해운사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합작투자도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어업분야 합작문제〉</p> <p>○ 북과 남이 공동어로구역(남측에서도 제기한 바 있는데 개념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토의가 있어야 하겠음.)을 설정하고 남북의 어민들이 자유로이 물고기를 잡게 함.</p> <p>○ 이와 동시에 새로운 어장을 공동개발, 이용할 수도 있음.</p>

구 분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기술 및 인적교류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농업분야 합작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쪽지역의 서해안 간석지를 공동개발하거나 군사분계선에 의해 끊어진 관개망을 다시 연결·이용함.
<p>경제협력기구 설치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하며 동 문제를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관계당국 및 경제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 가칭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교류의 통일적 조절을 위한 공동협력기구를 설치해야 함. ○ 쌍방에서 각 5명 정도의 각 부문 경제전문가를 망라하여 「북남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제의함.

나. 제2차 회담('85. 5. 17)

- 우리측은 남북간 교역과 경제협력 사업의 범위와 실현 방법이 협의·결정된 다음 이에 적합한 공동협력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순리임을 지적하고, 1차회의시 합의하지 못한 회담의제 문제를 우선 토의·해결한 후 쌍방의 공통 제의사항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음.
- 아울러 우리측은 남북간의 교역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으로부터 30만톤의 무연탄을 구입할 것을 제의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우선 토의를 고집하였음.
- 북측은 쌍방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현재의 경제회담을 대체, 쌍방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 회담을 사실상 격상시키고 동 공동위원회에서 모든 남북간 합작과 교류문제를 협의·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북측은 공동위원회가 실현해야 할 합작과 교류의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합작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합작의 형태, 규모, 세계상의 특혜보장, 사업에 필요한 물자의 자유반입, 합작회사 운영에 대한 법적보장 등에 관한 자기측 입장을 제시하였고,
- 물자교류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1차회담시 제안한 교역관련 10개항에 대응하여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음.(그 내용은 거래방식과 결제업무 취급은행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측 입장과 유사)
- 이와 같은 북측의 태도를 종합하건대, 북측은 2차 회담에서 「先 기구 설치, 後 실질문제 토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역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토의한 후 이를 토대로 합의서를 채택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적 성격의 기구로서 남북간 공동협력 기구를 발족시키고자 하는 우리측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였음.

다. 제3차 회담('85. 6. 20)

- 우리측은 북측 입장을 감안,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추진 방안과 기구 구성·운영문제를 일괄적으로 합의하자는 입장에서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음.

- 아울러 우리측은 무연탄 30만톤 구입문제와 경의선 철도연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실무자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면서 경제협력기구 설치문제의 우선적 토의를 주장하였으나 태도를 바꾸어 남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방안과 경제협력기구를 하나의 합의서로 채택하자는 우리측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음.
 - 또한 북측은 무연탄 구입과 경의선 철도연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동 문제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동 공동위원회 산하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였음.
- ※ 경제분야 교류·협력의 용어문제와 관련, 우리측이 제시한 “교역과 협력”, 북측에서 제시한 “합작과 교류”를 절충하여 「교류와 협력」으로 합의.

라. 제4차 회담('85. 9. 18)

- 우리측은 제3차 회담에서 포괄적인 단일합의서를 채택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만큼 쌍방이 제시한 검토안

을 토의하여 통해 주요 문제에 대한 상호이견의 차이를 좁힌 다음, 구체적인 합의서 문안작성을 위해 실무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음.

- 또한 우리측은 이미 제의한 무연탄 30만톤을 구입하는 문제와,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연결사업의 연내 착수를 희망하고 이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였음.
- 북측은 제3차 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한 데 따라 경제협력기구 구성과 경제협력 및 물자교류안을 일괄한 하나의 합의서안(“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 및 상품교류의 실현과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에서도 우리측 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음.
- 그러나 북측은 교류품목, 경제협력대상·규모·방법·기간 등 사업실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자고 함으로써 공동위원회 구성을 우선시하려는 그들의 입장을 견지하였음.
- 또한 북측은 우리측이 촉구한 무연탄 구입문제와 경의선철도 연내 연결작업 착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제회담에서 토의하기를 기피하면서 종합적인 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토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음.

마. 제5차 회담('85. 11. 20)

- 우리측은 제4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 가운데 쌍방간의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다음 7개항의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을 끝낸 후 이를 문안조정을 위한 실무회의에 넘길 것을 촉구하였음.

〈우리측이 제기한 7개항〉

① 합의서 명칭	⑤ 경제협력 대상
② 사업추진 원칙	⑥ 공동위원회 기능
③ 교류대상 품목	⑦ 분과위원회 수
④ 거래방식 및 결제은행	

-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7개항 뿐만 아니라 합의서 서명시 최고당국자로부터의 권한위임 문제와 서명시 호칭문제(국호사용 여부 등)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따라 쌍방은 우리측이 제기한 7개항과 북측이 제기한 2개항을 포함, 9개항을 토의할 것에 합의하고 이중 「합의서 명칭문제」, 「사업추진 원칙문제」, 「교류대상품목 명칭문제」 등 3개항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였음.

- 우리측은 오후 회의를 속개, 나머지 6개항의 문제에 대해 토의를 계속하자고 했으나 북측이 회의 종결을 주장함으로써 6개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지 못한 채 차기 회담으로 넘겼음.

3. 쌍방 제의·주장 비교

- 남북 쌍방이 경제교류·협력방안과 경제협력기구(공동위)구성·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서를 제시한 제4차 회담을 기준으로 한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가.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기본원칙 및 입장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혜평등 및 상호존중 ○ 민족번영과 복지증진 ○ 경제적 유대 회복 및 평화통일에 기여 ○ 신의와 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통일 3대원칙에 충실 ○ 상호신뢰와 호혜원칙 ○ 민족 공동번영에 철실한 분야부터 추진 ○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상품교류
교류·협력의 선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경제적 차원에서 先 교류, 後 협력 *기능적, 점진적, 단계적 접근방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先 협력, 後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협력과 교류의 동시 실현도 무방 *일괄적, 포괄적 접근방법 제시
물자교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국제거래 방식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적인 교류방식을 제의

나. 물자교역 방안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교역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쌍방의견이 합치된 아래품목부터 하며 상호보완의 원칙에 따라 확대 - 우리측 판매 : 철강재, 섬유, 남해수산물(김·미역·굴·멸치), 소금, 감귤 - 북측 판매 :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슘, 크롬, 명태, 옥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이 제안한 교류품목을 고려하여 공동위에서 협의·결정
교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에서 연간교역규모를 조정할 후 품목별로 교역당사자간 상담을 통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의 가능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결정
교류물자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교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쌍방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의 견 일 치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거 래 당사자	○ 품목별·사업별로 쌍 방이 각각 지정하는 해당 기관	○ 협력대상·교류품목 에 따라 거래대상자 (상사, 기업체, 법인 및 경제기관)들이 담당
거래방식	○ 청산결제 방식으로 하되 청산약정이 체 결되기 전에는 제3 국 은행 발행 신용 장 활용	○ 청산결제를 기본으 로 하며 경우에 따 라 다른 방법도 가 능
	의 견 접 근	
결제업무 취급	○ 쌍방이 지정하는 남 과 북의 은행이 직 접 담당하도록 하되 쌍방 은행간 청산약 정이 체결되기 전까 지는 쌍방이 공통으 로 거래하고 있는 제3국 은행이 담당	○ 쌍방이 지정하는 북 과 남의 은행이 담 당
	의 견 접 근	
결제통화	○ 스위스 프랑	○ 스위스 프랑
	* 1 \$ = 2.7027 SF('85년 5월) = 1.4062 SF('92년 평균) = 1.17 SF('95년 12월 현재)	
	의 견 일 치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관세	○ 관세 및 이와 유사한 세금부과 면제 가능	○ 관세는 일체 면제
의 견 접 근		
수송	○ 철도, 선박, 자동차 등 수송수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 경의선 철도 연결 ○ 남측의 인천항, 포항항과 북측의 남포항, 원산항을 각각 개방하고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무역항을 추가로 개방	○ 수송수단은 기차, 자동차, 배로하며 수송통로는 우선 다음과 같이 설정 - 경의선 철도연결 - 개성-문산간 도로연결 - 남포항, 원산항과 인천항, 포항항 개항
의 견 접 근		
통관, 검사, 사고처리 등	○ 대외거래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 대외거래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을 고려, 쌍방이 협의·작성하는 규정에 의거
의 견 접 근		

다. 경제협력 방안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공동어로구역 설정사업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시작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분야부터 먼저 시작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
의 건 접 근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사업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공동위에서 협의·결정 ○ 상대측 지역에서 자기의 설비와 기술, 노력, 자금을 가지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대상에 따라 합작형태도 적용
규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사업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공동위에서 협의·결정 ○ 투자액은 원칙적으로 1,500만 스위스 프랑 이상

구 분	우 리 측	북 측
협력사업 조건 및 문제처리	○ 경제협력사업 당사 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원칙적으로 공동위 에서 협의·결정 ○ 쌍방간에 체결되는 협약에서 따로 확정
조세 및 사용료	○ 쌍방이 합의하는 경 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관세 및 기 타 조세부담 면제 가능	○ 기업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관세 일체 면제 ○ 면세는 경제협력사 업이 진행되는 전기 간에 걸쳐 실시 ○ 토지이용세, 자원세 는 제품생산이 이루 어진 다음부터 적용 ○ 협력기간중의 전기 사용료, 물세 등은 대부형태로 납부기 일 연장 가능
소요물자 의 조달	○ 당해 사업에 필요한 소요 물자에 국한	○ 합작대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와 운용 물자는 무제한 반입

구 분	우 리 측	북 측
	* 타 목적의 물자를 위장반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제한 반입 곤란	○ 협력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지역의 생산물자들은 관계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장

라. 경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명 칭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
성 격	○ 합의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적 성격의 기구	○ 합의서를 협의·채택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는 협의·집행적 성격의 기구
구 성	○ 위원장(부총리급)1명, 부위원장(장관급)1명, 당국 및 경제계 인사로 구성되는 위원(장·차관급) 5명 ○ 공동위 안에 분과위 설치	○ 위원장(부총리급)1명, 부위원장(장관급)1명, 위원(장·차관급)7명 ○ 공동위 안에 분과위 설치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분과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교류분과위원회 · 경제협력분과위원회 - 필요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특별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p>○ 공동위 산하에 실무문제를 관장하는 공동사무국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분과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개발분과위원회 · 공업 및 기술분과위원회 · 농업 및 수산분과위원회 · 상품교류분과위원회 · 운수 및 체신분과위원회 · 금융재정분과위원회 <p>○ 공동위 밑에 공동사무국 설치</p>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의 기본방향과 방법 협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상품교류방안을 협의하고 필요한 합의 문건 채택 ○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상품교류를 위한 합의사항 이행보장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의 대상과 규모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협의·결정 ○ 남북 경제거래기관들 사이에 제기되는 분쟁문제 협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상품교류사업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 토의·비준 ○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상품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 협의·조정 ○ 경제협력과 상품교류 관련 자료교환, 전시회 및 박람회조직 문제 등 협의·결정 및 이행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장소 : 판문점 (쌍방 합의시 서울, 평양 가능) ○ 회의주기 : 분기1회 (쌍방 합의시 수시 개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장소 : 평양, 서울 ○ 회의주기 : 분기1회 (쌍방합의시 임시회 개최)

Ⅱ. 남북교류·협력 부문 합의내용

1. 「교류·협력」에 대한 쌍방 기본입장

가.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 북한측은 1972년에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북과 남 사이에 합작과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다방면에서의 합작」을 주장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를 “광범한 군중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사회과학출판사)고 정의함으로써
 -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는 민족적 단결을 내세워 남북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사와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 「정치적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
- 북한측은 남북경제회담('84. 11)에서도 「합작과 교류」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우리측은 「합작」 용어의 정치적 의미를 지적하면서 경제회담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취지에 맞지 않으며 또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합작」 대신 「협력」 용어의 사용을 강력히 주장, 북한측도 이를 수용하였음.

나. 「교류」와 「협력」의 선후 문제

- 우리측은 남북경제회담시 경제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경제협력을 실시하자는 입장에서 합의서 명칭을 「남북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합의서」으로 제시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상품교류를 위한 합의서」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91.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시에도 「협력·교류」를 주장, 「협력」을 「교류」보다 우선시하였음.
- 이같은 북한측 태도는 비록 「합작」 대신 「협력」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교류」보다 「협력」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구현해 보려는 뜻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의 선후 문제

- 우리측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89-'90년)시 본 회담 의제와 관련하여 경제, 사회문화, 인도분야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진행시키면서 정치·군사적 문제도 병행 협의한다는 입장에서
 - －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로 일단 주장하였으나
 - － 의제 표기순서가 토의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문제」를 수용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남과 북이 정치와 군사분야에서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북사이에 오랜동안 쌓여온 오해와 불신을 가질 수 없고 협력과 교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는 당면하게 남북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이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 － 남북고위급회담 의제와 관련,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를 「교류·협력 실현문제」보다 앞에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 결국 북한측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을 우선시하고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군사적 문제의 우선 해결”이라는 입장을 대남전략적 차원에서 고수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2. 기본합의서상의 교류·협력부문 내용

가. 타결 과정

- 남북 쌍방은 제5차 고위급회담('91. 12)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제6차 고위급회담('92. 2)에서 이를 발효시켰는 바, 남북교류·협력부문은 기본합의서 제3장 제15조~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우리측은 이산가족 재결합, 교역문호 개방 및 물자교류 등 10개항으로 된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방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남북통행에 관한 방안」(10개항), 「남북통신에 관한 방안」(9개항),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방안」(13개항)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처음에는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방 안만을 제시하고, 동 문제가 해결되면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그후 각계 인사의 왕래·접촉 등 8개항으로 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선언」을 제시하였음.
- 또한 우리측은 포괄적인 단일합의서로 「남북간의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는 바, 「교류·협력」 분야는 신문·라디오·TV 등 언론매체 상호개방, 이산가족문제 해결, 통행·통신과 통상 및 경제협력지원·보장 등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북한측 역시 단일합의서인 「남북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 교류에 관한 선언(안)」을 제의하였는 바, 「제3장 남북협력교류」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실시, 철도·해로·항로개설,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6개조항을 제시하였음.
- 남북 쌍방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한 대표접촉에서
 - ① 여러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 ② 이산가족문제 해결, ③ 육로·해로·공로 등 통행로 개설, ④ 우편 및 전기통신의 교류, ⑤ 경제교류와 협력실시, ⑥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하고,

—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신문·라디오·TV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 문제를 수용함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제15조~제23조를 완전히 타결지었음.

○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 타결과정에 나타난 북한측의 특징적 태도는 경제분야와 관련 물자교류보다는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는 바, 이는 그들이 처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본과 기술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표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문학·예술, 체육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 바, 이는 남북간에 예술단교환, 국제대회 단일팀구성·참가, 국제예술제 공동참가 등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며

— 한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언론·종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강력히 거부하는 입장이었는바 이러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그들의 정치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나. 쌍방 제의 및 주장 비교

(1) 제15조(경제분야 교류·협력)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문화개방 및 물자교류 ○ 자원공동개발 및 합작투자, 경제분야에서의 공동대의진출 및 대외협력사업 추진 ○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관광사업 공동추진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위하여 경제합작과 물자교류를 실현하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상통과 상호보완의 원칙에 따라 경제교류와 협력을 별개의 조항으로 할 것과 물자교류, 합작투자, 자원의 공동개발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이의 제도화를 위한 통행·통신·통상 및 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경제협력교류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하여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기구들은 향후의 분과위원회의 토론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

우 리 측	북 측
<p>○ 이 조항은 우리측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2개조항 주장을 통합하여 경제교류협력의 한개 조항으로 하는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대신 그 내용에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을 명기하여 합의함.</p> <p>*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2) 제19조(교통로 개설)

우 리 측	북 측
○ 남북간 철도·도로 복원 및 해로·공로개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 교통·체신망 연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 통행을 위한 구체적인 통과지점과 통행로를 지정하고 하루속히 복원·연결할 것을 제의	○ 북측은 철도와 도로의 육로 연결과 해로, 항로 개설 및 체신망을 연결 한다는 내용만을 제시
○ 쌍방은 체신망 연결을 별도 조항으로 하고, 철도·도로연결 및 해로·항로를 개설한다는 선에서 합의함.	

*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3) 제20조(우편·전기통신 연결)

우 리 측	북 측
○ 우편물교환 및 전신·전화 개통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 교통·체신망 연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 우리측은 「3통」의 하나인 우편·전기통신 설치·연결을 교류협력 실시의 기초적인 장치로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북측은 이 문제를 육로·공로 연결과 묶어서 제시해 오다가 남북고위급회담 제2차 대표접촉('91. 11. 15, 평화의집)에 와서야 분리하여 규정하였음.
*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4) 제21조(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대외공동진출)

우 리 측	북 측
○ 남북간 제반경제협력 실시, 경제분야에서의 공	○ 국제무대에서 경쟁과 대결 중지, 대외적 협력과

우 리 측	북 측
<p>동대외진출·공동대외협력 사업 추진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p>	<p>공동 진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p>
<p>○ 우리측은 이 문제는 정치문제로서 「화해」 분야에 별도규정(제6조)을 두고, 본 조항 관련내용은 주로 경제분야에 한정하여 「대외공동진출·협력」으로 하는 안 제시</p>	<p>○ 북측은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경쟁 중지문제와 대외공동협력·진출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교류·협력」분야에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p>
<p>○ 쌍방은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대외공동협력과 진출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는데 합의함.</p> <p>*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5) 제22조·제23조(합의서 이행기구 구성·운영)

우 리 측	북 측
<p>○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정치군사분과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p>	<p>○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를 선언이 발표된 때부터 2개월 안에 구성·운영</p>

우 리 측	북 측
<p>하여 구체적 대책을 협의·해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p>	<p>(제3차 남북고위급회담)</p>
<p>○ 우리측은 회담의제에 따라 「정치군사분과위」와 「교류·협력분과위」 등 2개의 협의기구를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할 것과 「3통」위원회, 군사위원회 등 5개 실천기구의 구성·운영 근거를 합의서(안)에 제시</p>	<p>○ 북측은 정치와 군사를 구분하여 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위원회 등 3개 협의기구를 선언 발표 후 2개월안에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우리측이 제시한 5개 실천기구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해결할 문제라고 주장</p>
<p>○ 쌍방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3개 주요부문으로 구성된 단일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구성키로 하고, 합의서 실천기구로서 「군사공동위원회»,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등 부문별 「공동위」를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구성·운영하기로 합의</p> <p>*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p>	

우 리 측	북 측
<p>*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p>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가. 타결과정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92. 2. 19)됨에 따라 남북한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 '92년 3월 18일 「교류·협력분과위」 첫 회의를 가진 이래 제8차 고위급회담까지 교류·협력분과위 회의 7회, 위원장접촉 6회, 위원장접촉 1회를 진행하여 4장 20조 50항으로 구성된 「교류·협력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음.

- 「교류·협력부속합의서」는 전문, 1장 경제교류·협력(1조~8조, 30개항), 2장 사회문화교류·협력(9조~14조, 15개항), 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15조~18조, 5개항), 4장 수정·발효(19조~20조)의 체계로 되어 있음.

(1) 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수 및 형식문제

- 제1차 교류·협력분과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통행·통신」,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분야의 4개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하고 북측은 “북남 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이라는 포괄적인 단일부속합의서를 제시하였음.
- 남북 쌍방은 협의과정을 통해 단일부속합의서를 채택 하되 분야별 「장」 편성을 하기로 합의하고, ‘통행·통신’분야는 경제교류·협력과 사회문화교류·협력 장에 포함시켜 부속합의서 체계를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4장 수정·발효로 합의하였음.

(2) 경제교류·협력분야(제1장 : 제1조~제8조)

- 경제교류·협력분야부터 토의하자는 북측 주장을 우리측에서 수용하여 토의를 시작, 대부분의 조항들에서 어렵지 않게 의견접근을 이루었음.

- 그러나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 승인문제, 교통로 개설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연계문제,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우선사업 보장문제, 경제사무소 및 경제상담소 설치·운영문제 등에서 서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거듭하였음.

- 남북 쌍방은 여러차례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경제교류·협력분야 쟁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 승인문제는 경제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제1조 ⑤항)

 - 교통로 개설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연계문제는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로 명기하되 「해소」라는 표현에 「완화」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음.(제3조 ②항)

 -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우선사업 보장문제는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기로 하였음.(제4조 ②항)

 - 경제사무소 및 경제상담소 설치·운영문제는 기구설치문제로 규정하여 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하였음.(제7조)

(3)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제2장 : 제9조~제14조)

-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의 협의과정에서도 많은 조항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문제, 자료교환실 설치·운영문제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었음.
- 남북 쌍방은 여러차례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의 이같은 쟁점사항에 대해서
 - －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문제는 부속합의서 말미에 「부기」로 규정, 화해공동위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하며
 - － 자료교환실 설치문제는 기구 설치문제로 규정하여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음.(제13조)

(4) 인도적 문제의 해결분야(제3장 : 제15조~제18조)

- 북측은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토의하자는 우리측 주장에 반대하는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분야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음.
- 남북 쌍방의 협의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당국간의 구체적 대책 마련 문제」, 「이산가족 범위결정 문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시기」 등이 쟁점이 되었음.

○ 여러차례 회의 결과 쟁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당국간의 대책마련 문제는 남북 쌍방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적십자단체 주관으로 실천하도록 하며
- 이산가족범위 결정문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는 쌍방 적십자 단체에서 협의·해결(제15조 ①, ③항)
-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시기는 한두달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빠른시일」내에 열도록 하였음.(제16조)

나.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타결과정

- 우리측에서 「인도」, 「통행·통신」,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의 4개 공동위를 제시하고 북측에서는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의 2개 공동위를 제시하였음.
- 남북 쌍방은 협의과정을 통해 「인도」분야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은 쌍방의 적십자 단체에 위임하기로 하고 「통행·통신」분야는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

· 협력」분야에 포함시키기로 함으로써 교류·협력공동 위원회는 「경제교류·협력」과 「사회문화교류·협력」의 2개로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음.

다. 쌍방 제의 및 주장 비교

(1) 제의, 전문

〈제 목〉

우 리 측	북 측
○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이행과 준수에 관한 부속합의서	○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우리측에서 북측 안을 수용하여 합의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전 문〉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는 《북남사이의 화해

우 리 측	북 측
<p>·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3 장 <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 장 북남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하여 합의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2) 경제교류·협력분야(제1장 : 제1조~제8조)

<제1조 본문>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물자교류, 자원의 공동 개발, 투자 등과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교류·협력 및 교통, 통신의 연결·운영을 지원 보장한다.</p>	<p>○ 북과 남은 경제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 보장한다.</p>

우 리 측	북 측
<p>○ 북측에서 기본합의서 제15조를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우리측에서 수용하여 합의함.</p> <p>*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기본합의서 제15조와 일치)</p>	

〈제1조 ①항, 경제교류·협력 가능분야〉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공업, 광업, 농업, 어업, 건설, 운수, 전력, 통신,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 공동개발과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p>	<p>○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석탄, 유색 및 희유금속 광물, 수산자원 등에 대한 공동개발을 진행한다.</p>
<p>○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업, 농업, 건설, 전력,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로 수정안 제시</p>	

우 리 측	북 측
<p>○ 북측에서 우리측 수정안을 수용하되 「석탄」을 추가하고 「전력」을 삭제하기로 합의함.</p> <p>* 제1조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 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p>	

(제1조 ②항, 경제교류·협력 사업의 대상 및 규모)

우 리 측	북 측
<p>○ 물자교류의 대상품목, 교류규모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품목별 수량은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p>	<p>○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관광을 비롯한 각 분야의 합영, 합작 대상과 물자교류품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방향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토의하여 정한다.</p>
<p>○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안 제시</p>	<p>○ 「북과 남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안 제시</p>

우 리 측	북 측
<p>○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하여 「합영·합작투자」로 합의함.</p> <p>* 제1조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제1조 ③항,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실무적 문제 토의방법〉

우 리 측	북 측
<p>○ 물자교류의 대상품목, 교류규모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품목별 수량은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p>	<p>○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 합작의 형식과 규모, 물자교류의 량과 지불조건 등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 따라 정한다.</p>
	<p>○ 「북과 남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협력, 교류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로 수정안 제시</p>

우 리 측	북 측
<p>○ 북측 수정안에서 「합작투자」를 「합영·합작투자」로 수정하여 합의함.</p> <p>* 제1조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 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 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 여 정한다.</p>	

〈제1조 ④항,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개인 포함문제〉

우 리 측	북 측
	<p>○ 경제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들로서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된다.</p>
<p>○ 우리측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인 이건 개인이건 전연 차별을 하지 않기때문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p>	<p>○ 법인으로 등록되어야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므로 법인으로 등록이 안되면 상업활동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p>
<p>○ 개인도 경제교류·협력사업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리측 주장을 북측에서 수용하여 합의함</p> <p>제1조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p>	

우 리 측	북 측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제1조 ⑤항,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승인 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는 사업별로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p>	
<p>○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에 대한 당국승인」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남과 북이 정부당국의 책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의의 교류·협력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함.</p>	<p>○ 북남당국 사이에 통일정책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 또한 군사적 대결상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당국승인 문제를 합의서에 규정하게 되면 북남 경제협력, 교류가 당국의 정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교류·협력당사자에 대한 당국승인」을 반대함.</p>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당해사업에 대해 각기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간에 직접 체결된 계약에 대해 물자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을 실시한다」로 수정안 제시</p>	<p>○ 「북과 남은 협력·교류 당사자간에 직접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한다」로 해야 협력·교류사업에 대해 사전에 승인받는게 아니라 계약을 한 후에 그 내용을 승인받는 것이 된다고 주장</p>
<p>○ 우리측 주장인 ‘계약에 대해’와 북측 주장인 ‘계약에 따라’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로 절충하여 합의함.</p> <p>* 제1조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p>	

〈제1조 ⑥항, 교류물자 가격〉

우 리 측	북 측
<p>○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p>	<p>○ 물자거래에서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p>

우 리 측	북 측
<p>○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함.</p> <p>* 제1조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p>	

〈제1조 ⑦항, 물자교류 원칙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상호보완의 원칙과 쌍방의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교류대상 품목과 교류규모를 조정하며, 품목별 수량은 물자교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p>	<p>○ 북과 남은 상품 대 상품, 원료 대 원료를 유사통하는 원칙에서 물자교류를 실현한다.</p>
<p>○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제품 대 제품 혹은 원료 대 원료의 형태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p>	<p>○ 북과 남이 호상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료 대 원료, 제품 대 제품 등 동차상품을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p>
<p>○ 북측에서 「북남사이의 물자교류는 호상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우리측에서 수용하여 합의함.</p>	

* 제1조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제1조 ⑧항, 대금결제 방식)

우 리 측	북 측
<p>○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따른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에 따른 대금결제 및 자본의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p>	<p>○ 북과 남사이의 물자거래에서 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쌍방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도 취할 수 있다.</p>
<p>○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안 제시</p>	
<p>○ 우리측 수정안을 북측에서 수용, 「쌍방의 합의에 따라」로 합의함.</p> <p>* 제1조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p>	

우 리 측	북 측
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조 ⑨항, 결제통화 선정 등〉

우 리 측	북 측
<p>○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따른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에 따른 대금결제 및 자본의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p>	<p>○ 북과 남은 물자거래에서 청산결제를 맡아 수행하기 위한은행들을 정하며 결제업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지정된 은행들이 토의하여 해결한다.</p> <p>○ 북과 남사이의 결제화폐는 스위스 프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전환성 화폐로도 할 수 있다.</p>
<p>○ 「청산결제 은행 지정, 결제통화 등 남북사이의 대금결제 및 자본의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로 수정안 제시</p>	

우 리 측	북 측
<p>○ 우리측 수정안을 북측에서 수용,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함.</p> <p>* 제1조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p>	

〈제1조 ⑩항, 민족내부 거래로서의 무관세 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교류물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남북간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정착·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p>	<p>○ 북과 남은 물자거래에서 관세를 면제하며 그밖의 특혜조건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토의결정한다.</p>
<p>○ 우리측 안을 북측에서 수용,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함.</p> <p>* 제1조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p>	

〈제1조 ⑪항, 경제자료 교환 「통계 및 통계기준」 포함 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분야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자료, 통계 및 통계기준과 공업규격 등을 상호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 관련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p>	<p>○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자료, 공업규격 등을 서로 교환하며 협력·교류당사자가 지켜야 할 자기측의 해당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p>
<p>○ 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통계자료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p>	<p>○ 각종자료라고 표현하면 그안에 통계자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구태여 통계자료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p>
<p>○ 「각종자료」라는 표현속에 「통계자료」도 포함된다는 데에 남과 북이 의견을 같이하고 「통계자료」를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함.</p> <p>* 제1조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p>	

〈제1조 ⑫항, 경제교류·협력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p>	<p>○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보장, 자본의 이동과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 문안정리 후 합의함.</p> <p>* 제1조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p>	

〈제1조 ⑬항,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편의보장〉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종사하는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자유와 편의를 보장한다.</p>	<p>○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에 참가하는 인원들의 경제활동상 편의를 보장한다.</p>
<p>○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합의함.</p>	

* 제1조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본문〉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북과 남은 과학, 기술, 환경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실시한다.
<p>〈합의사항〉</p> <p>*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제2조 ①항,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의 정보자료 교환 등〉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정보자료의 교환, 대학·연구기관·개인간 공동연구 및 조사, 및 산업부문의 기술협력, 전문가의 상호 교류를 실시하고 환경보전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한다.	○ 북과 남은 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연계와 협력,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존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우 리 측	북 측
	<p>○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 연구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로 수정안 제시</p>
<p>○ 북측 수정안을 우리측에서 수용,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함.</p> <p>* 제2조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p>	

〈제2조 ②항, 산업재산권 보호〉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의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p>○ 북과 남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과학, 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p>○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함.</p>	

* 제2조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본문)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육로, 해로, 항로를 개설하고 통과지점을 지정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p>	<p>○ 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와 공로를 개설한다.</p>
<p>○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 문제는 제3조 ④항으로 규정하기로 하고, 북측 안을 수용하되, 공로를 항로로 수정하여 합의함.</p> <p>*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기본합의서 제19조와 일치)</p>	

(제3조 ①항, 해로개설 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우선 육로의 경우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연결하고, 인천항과 남포항, 포</p>	<p>○ 북과 남은 우선 남포항과 인천항, 원산항과 부산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하고 교류물자를 직접</p>

우 리 측	북 측
<p>항항과 원산항 사이의 해로와 서울 김포공항과 평양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연결하여 개설한다.</p>	<p>수송한다.</p>
<p>○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과 남포항, 포항항과 원산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로 수정안 제시</p>	
<p>○ 우리측 수정안에서 인천항과 남포항, 포항항과 원산항을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으로 수정하여 합의함.</p> <p>* 제3조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p>	

〈제3조 ②항, 교통로 개설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연계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북과 남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경제협력과 상품교류 및 인사래왕의 규모에 맞게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와 공로를 개설한다.</p>

우 리 측	북 측
<p>○ 남북이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며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약속한 마당에 도로와 철도의 연결 문제를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p>	<p>○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됨이 없이는 방대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군사분계선상에 교통로를 개설할 수 없으며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래왕과 물자교류는 임시교통로를 개설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p>
<p>○ 북측의 주장을 고려,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완화되는데 따라…」로 할 것을 제시</p>	<p>○ 해로는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기 전에라도 개설될 수 있지만 육로·공로는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어야만 개설될 수 있으며 「해소에 따라」라는 것은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가 되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p>
<p>○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라는 것이 과정을 의미하며, 「완화됨에 따라」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해소되는데 따라」로 합의함.</p>	

* 제3조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제3조 ③항, 임시교통로〉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p>	<p>○ 북과 남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물자교류와 인원왕래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p>
<p>○ 우리측에서 북측 안을 수용,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함.</p> <p>* 제3조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p>	

〈제3조 ④항, 교통로 개설·운영관련 정보자료 교환 등〉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개설·운영의 원활</p>	<p>○ 북과 남은 육로, 해로, 공로 개설의 원활한 보</p>

우 리 측	북 측
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p>○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합의함.</p> <p>* 제3조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p>	

(제3조 ⑤항, 교류물자의 직수송 문제)

우 리 측	북 측
○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북과 남은 우선 남포항과 인천항, 원산항과 부산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하고 교류물자를 직접 수송한다.
<p>○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함.</p> <p>* 제3조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p>	

〈제3조 ⑥항, 긴급구제조치〉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자기측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제조치를 취한다.</p>	
<p>○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하여 합의함.</p> <p>제3조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p>	

〈제3조 ⑦항, 교통로 개설·운영관련 국제협약준중 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교통로 연결·운영에 관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p>	
<p>○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합의함.</p> <p>* 제3조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p>	

〈제3조 ⑧항, 교통로 개설·운영관련 실무문제 협의〉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그 승무원의 출입절차, 교통수단별 운행방법, 통과지점 등 남북사이의 교통로 개설, 운영에 관련된 실무 문제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하는 남북교통실무협의회에서 한다.</p>	<p>○ 북과 남은 통과지점 선정을 비롯하여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결정한다.</p> <p>○ 「북과 남은 북남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로 수정안 제시</p>
<p>○ 우리측에서 북측 수정안을 수용,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로 합의함.</p> <p>* 제3조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p>	

〈제4조 본문〉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p>	<p>○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p>
<p>○ 우편과 전기통신 관련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은 제4조 ①항으로 규정하기로 하고, 우리측에서 북측안을 수용하여 합의함.</p> <p>*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기본합의서 제20조와 일치)</p>	

〈제4조 ①항, 우편과 전기통신 교환·연결 등〉

우 리 측	북 측
<p>○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물과 전기통신은 남북연락사무소에 우편물교환실과 전화교환실을 설치하여 교환·연결한다.</p>	<p>○ 북과 남은 빠른 시일안에 쌍방의 우편물을 판문점을 통하여 교환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 강구한다.</p>
<p>○ 「남과 북은 빠른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p>	

우 리 측	북 측
<p>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로 수정안 제시</p>	
<p>○ 우리측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북측이 수용하여 합의함.</p> <p>*제4조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p>	

〈제4조 ②항,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우선사업 보장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공적사업과 남북간에 합의된 교류·협력에 필요한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넓힌다.</p> <p>○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서신거래를 판문점에 설치·운영되는 남북연락사무소의 우편물 교환실</p>	<p>○ 북과 남은 우편과 통신 보장에서 당면하여 공적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p>

우 리 측	북 측
<p>을 통해 우선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며 전기통신 수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 이산가족간의 서신거래 만큼 시급한 일이 없으므로 「이산가족간의 서신거래를 포함한 공적사업」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p>	<p>○ 「공적사업」을 우선 보장하고 점차 그 이용을 확대하여 이산가족간의 서신거래를 할 수는 있어도 이산가족간의 서신거래가 공적사업과 동등하게 놓일 수 없다고 주장</p> <p>※ 북측은 당국 대 당국 뿐만 아니라 기관 대 기관, 단체 대 단체를 공적사업으로 보며 오직 개인만을 공적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p>
<p>○ 우리측 안의 인도적 문제 해결 부문의 「이산가족 서신거래」를 포함시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로 명기하기로 합의함.</p> <p>* 제4조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p>	

〈제4조 ③항,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보장 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p>	<p>○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p>
<p>○ 북측에서 우리측안을 수용, 문안조정 후 합의함.</p> <p>* 제4조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p>	

〈제4조 ④항, 우편·전기통신 관련 국제협약 존중 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관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p>	
<p>○ 북측에서 우리측안을 수용,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합의함.</p> <p>* 제4조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p>	

〈제4조 ⑤항, 우편과 전기통신 관련 실무문제 협의·실천 방법〉

우 리 측	북 측
<p>○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전달 방법 등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관련되는 실무문제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하는 남북통신실무협의회에서 한다.</p>	<p>○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 다음과 같이 조항을 신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은 북남사이에 교류되는 우편물과 전기통신에 대한 종류와 요금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북과 남사이의 우편물과 전기통신교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우편물 및 전화교환실 설치문제를 비롯한 기타 제반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p>○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하되 우편 및 전기통신 관련 실무문제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함.</p> <p>* 제4조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제5조 본문 및 ① ②항, 경제분야에서의 대외협력〉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경제의 각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등 대외 경제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p>	<p>○ 북과 남은 국제경제의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p>－ 북과 남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p> <p>－ 북과 남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 추진한다.</p>
<p>○ 북측안을 우리측에서 수용하여 합의함.</p> <p>*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p>①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p> <p>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p>	

〈제6조, 경제교류·협력의 지원·보장〉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물자교류, 자원의 공동 개발, 투자 등과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교류·협력 및 교통, 통신의 연결, 운영을 지원·보장한다.</p>	<p>○ 북과 남은 경제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 보장한다.</p>
<p>○ 우리측에서 북측안을 수용하여 합의함. *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p>	

〈제7조, 경제사무소 및 경제상담소 설치·운영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교환·설치하며, 판문점에 경제상담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p>	<p>○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교환·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지향적이기보다는 분열 지향적인 색채가 강한 것으로 배격을 받은 상주대표부 설치문제와 비슷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함.</p>
<p>○ 「경제사무소」 설치하는 북측의 반대를 고려 추후</p>	<p>○ 경제상담문제는 거래당사자들이 남과 북을 왕</p>

우 리 측	북 측
<p>협의키로 하되, 판문점에 「경제상담소」만이라도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p> <p>○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추진에 필요한 기구를 판문점에 설치·운영한다」로 수정안 제시</p>	<p>래하면서 직접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으므로 구태여 경제상담소를 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경제상담소 문제는 필요하다면 공동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음.</p> <p>○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로 안을 제시</p>
<p>○ 우리측에서 북측 주장을 수용, 기구설치 문제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함.</p> <p>*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제8조, 경제교류·협력분야 합의사항 이행〉

우 리 측	북 측
<p>○ 제1장 <경제>부문의 이행과 이와 관련있는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p>	<p>○ 이 합의서의 〈제1장 북남경제협력, 교류〉의 리행은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제2장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의 리행은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제3장 인도적 문제해결〉의 리행은 북남적십자 단체들에서 맡는다.</p>
<p>○ 우리측 안을 북측에서 수용, 해당 분야(장)별로 나누어서 명기하기로 합의함.</p> <p>*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p>	

(3) 기 타(제4장 : 제19조, 제20조 및 부기사항)

〈제19조·제20조, 합의서 수정·발효〉

우 리 측	북 측
<p>○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p>	<p>○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p>

우 리 측	북 측
수 있다.	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p>○ 쌍방은 각기 제시한 내용에 대한 자구 수정을 거쳐 합의함.</p> <p>*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p> <p>*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부기사항,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

우 리 측	북 측
	○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며 래왕자의 신변안전과 인권을 보장한다.
○ 상대방 법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철폐주장은 상대방 체제존중과 내부분계 불간섭을 규정한 남	○ 이 문제는 남한사회의 각 계층속에서 지어는 당국의 일각에서까지 제기된 것으로 민족구성원

우 리 측	북 측
<p>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상호주의 원칙아래 협의·해결해야 할 것임.</p>	<p>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문제를 협력, 교류분과위가 맡고 있는 이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도 정치분과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교류협력분과위 부속합의서에 명기해야 함.</p>
<p>○ 우리측은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는 정치분과위원회의 법률실무협의회 소관사항이므로 부속합의서에서 삭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북측은 부속합의서에 명기할 것을 완강히 고집, 쌍방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교류·협력부속합의서 부기사항으로 처리키로 합의함.</p> <p>* 부기: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하기로 하였다.</p>	

사회·문화공동위원회

〈목 차〉

I. 「교류·협력」에 대한 쌍방 기본입장	367
1.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367
2. 「교류」와 「협력」의 선후문제	368
3.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의 선후문제	368
II. 「남북기본합의서」(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 타결과정	370
1. 타결과정	370
2. 쌍방제의 및 주장	373
III.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 타결과정 ..	379
1. 타결과정	379
2. 쌍방제의 및 주장	382
IV.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타결과정 ..	406
1. 타결과정	406
2. 쌍방제의 및 주장	407

I. 「교류·협력」에 대한 쌍방 기본입장

1.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년)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북과 남사이에 합작과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다방면에서 합작」할 것을 주장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를 「광범한 군중을 민족적·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서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고 정의함으로써
-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는 민족적 단결을 내세워 남북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사와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 「정치적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
- 남북경제회담('84.11)에서 북한측이 또다시 「합작과 교류」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우리측은 「합작」용어는 정치적 의미로 쓰이고 있어 경제회담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취지

에 맞지 않으며 또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합작」 대신 「협력」 용어의 사용을 강력히 주장하자, 북한측은 이를 수용한 바 있음.

2. 「교류」와 「협력」의 선후문제

○ 우리측은 남북경제회담('84~'85년)에서 경제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경제협력을 실시하자는 입장에서 합의서 명칭을 「남북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으로 제시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상품교류……」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남북기본합의서('92. 2)에서도 「협력·교류」를 주장, 「협력」을 「교류」보다 우선시하고 있음.

* 비록 북한측이 「합작」대신 「협력」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교류」보다 「협력」을 더욱 강조하면서 우선시하는데에는 다분히 그들의 정치적 의도가 내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의 선후문제

○ 우리측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89~'90년)시 본회담 의제와 관련하여 경제, 사회문화, 인도분야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진행시키면서 정치 및 군사적 문제도 함께 병행하여 협의한다는 입장에서

—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 해소문제」로 하자고 일단 주장하였으나
- 의제 표기순서가 토의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이에 비해 북한측은
- 「남과 북이 정치와 군사분야에서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북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온 오해와 불신을 가질 수 없고 협력과 교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는 당면하게 남북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이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 남북고위급회담 의제와 관련,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를 「교류·협력 실현문제」보다 선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 결국 북한측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문제에 있어 「협력」을 우선시하며 그리고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군사적 문제」의 우선해결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Ⅱ. 「남북기본합의서」(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 타결과정

1. 타결과정

- 남북 쌍방은 제 5 차 고위급회담('91.12)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제 6 차 고위급회담('92.2)에서 이를 발효시켰는 바, 남북 기본합의서 「제 3 장 남북교류·협력」(제15조~제23조)의 타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우리측은 이산가족재결합, 교역문호개방 및 물자교류 등 10개항으로 된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방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남북통행에 관한 방안」(10개항), 「남북통신에 관한 방안」(9개항),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방안」(13개항)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처음에는 정치·군사적 해소방안만을 제시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각계 인사의 왕래·접촉 등 8개항으로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우리측은 포괄적인 단일합의서로 「남북간의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는 바, 「교류·협력」관련조항은 신문·라디오·TV등 언론매체 상호개방, 이산가족문제 해결, 통행·통신과 동상 및 경제협력 지원·보장 등 4개조이었음.
 - 북한측 역시 단일합의서인 「남북 불가침과 화해 및 협

력, 교류에 관한 선언(안)」을 제의하였는 바, 「제 3 장 남북협력교류」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실시, 철도·해로·항로개설,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6개조항을 제시하였음.

- 남북 쌍방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한 대표접촉에서 ① 여러분야에서의 상호교류와 협력, ②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③ 육로·해로·공로 등 통행로 개설, ④ 우편 및 전기통신의 교류, ⑤ 경제교류와 협력실시, ⑥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하고

- 제 5 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신문·라디오·TV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문제를 수용함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 「제 3 장 남북교류·협력」의 제15조~제23조를 완전히 타결지었음.

- 남북기본합의서 「제 3 장 남북교류·협력」타결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측의 특징적 태도는

- 경제분야와 관련, 물자교류보다는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는 바, 이는 그들이 처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본과 기술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표출로 판단됨.
- 문학·예술, 체육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이는 남북간에 예술단교환, 국제대회 단일팀구성·참가, 국제예술제 공동참가 등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신문·라디오·텔레비전 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언론·종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강력히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러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그들의 정치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쌍방 제의 및 주장

(1) 제16조(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우 리 측	북 한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왕래와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고 사회개방과 민족적 유대를 회복 ○ 민족명절과 기념일 전후 민족대교류 실현 및 문화행사 교환 개최 ○ 각 분야별 남북 동포간의 교류협력 방안 협의·실현 ○ 동행·통신·통상에 관한 합의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과학·기술,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출판, 보도 등 각 분야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협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매체의 상호개방은 서로 상대방의 실상을 잘 이해하고 화해를 이룩해나갈 본질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언론·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를 「화해」부문의 독립조항으로 넣고, 그외의 여러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실상을 알기위한 조치로서 물리적인 장벽과 정치적인 장벽의 제거와 자유래왕의 전면실시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오염으로부터 북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매체의 개방을 거부하고 「교류협력」부문의 출판, 보도분야를 포함한 더 많은 문제들

우 리 측	북 한 측
	을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 자고 주장
○ 우리측은 언론매체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을 여러분야에 서 교류·협력을 실시한다는 조항과 통합조정하는데 합의 함.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 다.</p>	

(2) 제17조(민족구성원들의 왕래·접촉)

우 리 측	북 한 측
○ 자유왕래와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고 사회개방과 민족적 유대를 회복	○ 각 정당 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왕래와 접촉 실현
○ 남북사회의 개방과 민족적 유대회복을 위해 「교류협력」부문에 쌍방 「주민」의 자유왕래와 접촉 뿐만 아니라 통행·통신위원회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제시	○ 자유왕래와 접촉의 대상을 「각계인사 동포들」로 국한하고, 이의 실시를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법률적·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화해」분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자유왕래와 접촉의 대상에 대해 우리측은 「주민」을, 북한측은 「각계인사·동포」로 주장하였으나 쌍방은 이를 「민족구성원」으로 조정하고 「교류협력」부문에 넣을 것에 합의함.	
<p>〈합 의〉</p> <p>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p>	

(3) 제21조(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대외공동진출)

우 리 측	북 한 측
○ 남북간 제반 경제협력 실시, 경제분야에서의 공동 대외진출·공동 대외협력사업 추진	○ 국제무대에서 경쟁과 대결 중지, 대외적 협력과 공동진출
○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경쟁 중지문제는 정치문제로서 「화해」분야에 별도규정(제 6 조)을 두고, 본조항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경제분야에 한정하여 대외공동진출·협력으로 하는 안을 제시	○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경쟁 중지문제와 대외공동협력·진출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교류·협력」분야에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
○ 쌍방은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대외공동협력과 진출 문제를 별도조항으로 규정하는데 합의함.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서로 협력하여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4) 제22조·제23조(합의서 이행기구 구성·운영)

우 리 측	북 한 측
<p>○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정치군사분과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 대책을 협의·해결</p>	<p>○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를 선언이 발표된 때부터 2개월 안에 구성·운영</p>
<p>○ 회담의제에 따라 「정치군사분과위」와 「교류·협력분과위」등 2개의 협의기구를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 설치하고 「3통」위원회, 군사위원회 등 5개 실천기구의 구성·운영 근거를 합의서(안)에 제시</p>	<p>○ 정치와 군사를 구분하여 정치군사, 교류협력분과위원회 등 3개협의기구를 선언 발표 후 2개월안에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5개 실천기구 문제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해결할 문제라고 주장</p>
<p>○ 쌍방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3개 주요부문으로 구성된 단일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구성키로 하고, 합의서 실천기구로서 「군사공동위원회»,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등 부문별 「공동위」를 합의서발효 후 3개월 안에 구성·운영하기로 합의</p>	

〈합 의〉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Ⅲ.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 타결과정

1. 타결과정

- 제 6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92.2.19)됨에 따라
 - 남북한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1992년 3월 18일 교류·협력분과위 첫 회의를 가진 이래
 - 제 8 차 고위급회담까지 교류·협력분과위 회의 7회, 위원접촉 6회, 위원장접촉 1회를 진행하여 4장 20조 50항으로 구성된 「교류·협력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음.
- 「교류·협력부속합의서」는 전문, 1장 경제교류·협력(1조~8조, 30개항), 2장 사회문화교류·협력(9조~14조, 15개항), 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15~18조, 5개항), 4장 수정·발효(19조~20조)의 체계로 되어 있음.

(1) 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수 및 형식문제

- 제 1 차 교류·협력분과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통행·통신»,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분야의 4개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은 「북남 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

안)」이라는 포괄적인 단일부속합의서를 제시하였음.

- 남북 쌍방은 협의과정을 통해 단일부속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하되 분야별 「장」편성을하기로 합의하고, 「통행·통신」분야는 경제교류·협력과 사회문화교류·협력장에 포함시켜 부속합의서 체계를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 4 장 수정·발효로 합의하였음.

(2)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제 2 장 : 제 9 조~제14조)

-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의 협의과정에서도 많은 조항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문제, 자료교환실 설치·운영문제 등이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었음.
- 남북 쌍방은 여러차례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 쟁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문제는 부속합의서 말미에 「부기」로 규정, 화해공동위 법률 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하기로 하였음.
 - 자료교환실 설치문제는 기구설치문제로 규정하여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음.(제13조)

(3) 기타 분야(대일공동대처문제등)

-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의 협의과정에서는 북한측이 종군위안부, 핵무장, 역사왜곡 등과 관련한 대일공동대처 문제를 제의하였으나 남북쌍방의 기본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까지 쟁점사항으로 남아있음.
- － 북한측은 정신대문제·핵무장화문제와 관련 공동대응책을 협의, 쌍방 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의(제 6 차 고위급회담시 : '92. 2. 18~21)한 이래 일본의 역사왜곡문제와 관련한 긴급의제 제의(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 5 차회의 : '92. 6. 29), 「북과 남이 일본의 과거청산과 핵위협, 해외파병에 공동으로 대처할데 대한 합의서(초안)」(제 8 차 고위급회담 제 1 일회의 : '92. 9. 16)을 제시한 바 있음.
-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총리 대북서한('92. 6. 25)을 통해 이 문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서 명백히 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다시 제기할 사안은 아니며 다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남북역사학자간의 학술회의 개최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주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정원식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의 발언(제 8 차 고위급회담 제 2 일회의 : '92. 9. 17)을 통해 3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였음.

2. 쌍방 제의 및 주장

(1) 제 목

우 리 측	북 한 측
○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이행과 준수에 관한 부속합의서	○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우리측에서 북한측안을 수용하여 합의	
(합 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3 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 전 문

우 리 측	북 한 측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북한측에서 우리측안을 수용하여 합의	
(합 의)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3 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3) 제 9 조 본문(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p>○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협력, 교류를 실현한다.</p>
<p>○ 우리측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다각적인」을 「여러분야에서」로 수정하였고, 북한측은 「텔레비전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은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으로, 「협력, 교류를 실현」을 「협력과 교류를 실시」로 각각 수정하여 쌍방이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4) 제 9 조 ①항(사회문화분야 정보자료 교환)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이룩한 학문적 성과와 경험, 연구자료, 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방송 프로그램 등 여러분야의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p>	<p>○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정보자료를 호상 교환한다.</p>
<p>○ 우리측은 「사회문화분야에서」를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등 여러분야에서」로 수정하고 「방송 프로그램 등 여러분야의」는 삭제하였으며, 북한측은 「연구, 출판, 보도자료와 목록 등」을 추가하여 쌍방이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 9 조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p>	

(5) 제 9 조 ②항(사회문화분야의 다각적 협력)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남북공동기념일과 민족명절에 문화·예술단을 상호 교환하며, 체육경기대회 공동개최, 쌍방이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상호 초청참관, 대표단 파견 등 사회문화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p>	<p>○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p>
<p>○ 우리측은 「남북공동기념일과 민족명절에 문화·예술단을 상호 교환하여, 체육경기대회 공동개최, 쌍방이 개최하는 행사에 상호 초청참관, 대표단 파견 등 사회문화분야에서」를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공동기념일과 민족명절 등에 문화·예술단을 상호 교환하며, 체육경기대회 공동개최, 기술협력 등」으로 수정하였으나, 북한측이 「기술협력을 비롯한」을 추가하여 우리측에서 북한측안을 수용, 쌍방이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 9 조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p>	

(6) 제 9 조 ③항(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교류)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국토순례, 수학여행, 취재활동 등을 통한 학생, 교직원, 작가, 예술인, 체육인, 청소년, 언론인, 종교인, 학자, 전문가 및 종사자 등 사회문화분야 관련 인원간의 상호 교류를 실시한다.</p>	<p>○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의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연계와 교류를 실현한다.</p>
<p>○ 우리측은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국토순례, 수학여행, 친선방문, 취재활동 등을 통한 상호 인원교류 및 관련 기관·단체간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여러분야의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연계와」를 「여러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 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로 수정하여 우리측에서 북한측안을 수용, 쌍방이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 9 조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p>	

(7) 제 9 조 ④항(사회문화분야 공동행사 실시)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인문, 사회, 자연 과학과 민족문화유산을 비롯한 사회문화분야에서 남 북이 공동으로 행하는 연구, 학술조사, 편찬사업 및 학술 목적의 행사와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 출판물의 교환 전시를 실시한다.</p>	<p>○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민족의 리익을 위한 연구, 조사, 편찬사업, 전시회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p>
<p>○ 우리측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과 민족문화유산을 비롯한」을 삭제하고 「여러분야에서」는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로 수정하고, 북한 측은 「민족의 리익을 위한 연구, 조사, 편찬사업, 전시회 행사를」은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 하며」로 수정하고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추가하여 쌍방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 9 조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p>	

(8) 제 9 조 ⑤항(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상대측의 출판, 연극,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상호 보호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p>	<p>○ 북과 남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p>○ 우리측은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출판, 연극,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로 한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상대측의 출판, 연극,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저작물 등에」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로 수정함으로써 쌍방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 9 조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9) 제10조 본문(민족구성원의 자유왕래)

우 리 측	북 한 측
○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시한다.	○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 우리측은 「실시한다」를 「실현한다」로 수정하여 쌍방은 기 본합의서 제17조대로 합의함.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p>	

(10) 제10조 ①항(자기의사에 따른 자유왕래)

우 리 측	북 한 측
-	<p>○ 북과 남은 사상과 정견, 신앙과 소속, 거주지와 과거여하에 관계없이 정치인, 경제인, 학자, 언론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래왕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p>
<p>○ 「각계각층 인원들간의 왕래」는 남북화해를 저해함은 물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민족구성원간의 왕래」로 수정할 것과 「사상과 정견, 신앙과 소속, 거주지와 과거여하에 관계없이」를 삭제할 것을 주장했음.</p>	<p>○ 「각계각층 인사」를 「민족구성원들의 자기의사에 따른 왕래」로 수정하였으나, 「사상과 정견, 신앙과 소속, 거주지와 과거여하」는 계속 고집했음.</p>
<p>○ 우리측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의사에 따라」로 한차례 수정안을 제시, 북한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0조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p>	

(11) 제10조 ②항(왕래수단)

우 리 측	북 한 측
<p>○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p>	<p>○ 상대측 지역에 대한 래왕은 우선 판문점을 통하여야 하며 점차적으로 모든 통로(국제공로 포함)로 하도록 한다.</p>
<p>○ 북한측에서 우리측안을 수용하여 쌍방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0조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p>	

(12) 제10조 ③항(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자의 목적수행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과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하며, 상대측의 질서와 안전에 따른다.</p>	<p>○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이 자기의사에 따라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한다.</p> <p>○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며 래왕자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p>
<p>○ 우리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자의 목적수행을 위한」을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로 수정하고, 북한측은 2개항을 하나로 합하여 자구수정을 거쳐 합의함.</p> <p>*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는 부기사항으로 처리</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0조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p>	

(13) 제10조 ④항(상대측의 「법과 질서」에 따르는 문제)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의 법질서를 위반함이 없어 왕래·접촉하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p>	<p>○ 북과 남은 왕래자들이 상대측 법과 사회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자유롭게 래왕하고 접촉하도록 하기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취한다.</p>
<p>○ 「사회질서」는 각자의 관행과 관습을 포괄하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어느 일방이 타방의 관행·관습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법질서」가 타당함.</p>	<p>○ 「사회질서」는 어느 일방을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의 도덕적 관습이며 적지않은 문제가 법질서로는 해결이 안되지만 사회도덕적으로는 해결이 되므로 당연히 「사회질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함.</p>
<p>○ 우리측에서는 「사회질서」라는 용어를 거의 안쓰기 때문에 우리측은 「법질서」, 북한측은 「법과 사회질서」로 편의적으로 명기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에서 「법과 질서」로 수정안을 제시하여 쌍방이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0조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위한 조치를 취한다.</p>	

(14) 제10조 ⑤항(증명서 및 휴대물품)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을 왕래하는 자는 쌍방 당국이 허가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왕래에 필요한 물품과 현금을 휴대할 수 있다.</p>	<p>○ 북과 남을 래왕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p>
<p>○ 우리측은 「현금」을 삭제하고 일부표현을 수정하여 북한측 안으로 쌍방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0조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p>	

(15) 제10조 ⑥항(편의제공)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교통수단 등 왕래와 방문 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p>	<p>-</p>
<p>○ 우리측에서 「교통수단 등」을 삭제하여 우리측 안으로 쌍방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0조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p>	

(16) 제10조 ⑦항(긴급구제조치)

우 리 측	북 한 측
○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북과 남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래왕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우리측에서 「인원에」를 「왕래자에게」로 수정하여 쌍방 합의함.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0조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p>	

(17) 제10조 ⑧항(왕래절차 및 실무문제 협의)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왕래절차 등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제반절차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공동위원회에서 정한다.</p>
<p>○ 우리측에서 「왕래절차등」을 「절차와」로 수정하고 북한측도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쌍방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0조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18) 제11조 본문, ①항, ②항(국제무대 협력과 대외공동진출)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출판·보도 등 사회문화분야의 국제기구와 국제행사에서 서로 협력하며,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등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p>	<p>○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p>－ 북과 남은 사회문화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p> <p>－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 우리측은 초안을 본문, ①항, ②항으로 분류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북한측은 「위하여 노력한다」를 「위한 대책을 협의, 추진한다」로 수정하여 쌍방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p>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p> <p>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p>	

(19) 제12조(당국의 지원·보장)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및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의 교류·협력과 민족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왕래·접촉을 지원·보장한다.</p>	<p>○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 보장한다.</p>
<p>○ 우리측이 북한측안을 수용하여 쌍방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p>	

(20) 제13조(자료교환실 설치·운영문제)

우 리 측	북 한 측
<p>○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원활한 자료의 교환을 위해 판문점에 자료교환실을 설치·운영한다.</p>	<p>-</p>
<p>○ 「자료교환실」설치의 필요성을 부속합의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의 자료교환에 필요한 기구」로, -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로 각각 2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p>○ 귀측이 제기하는 자료교환실 설치문제는 공동위원회 단계에 가서 논의해 볼 수 있음.</p>
<p>○ 북한측은 자료교환실 설치문제를 공동위원회 단계에 가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며 토의를 회피하다 우리측의 2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시에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로 쌍방이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21) 제14조(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의 이행)

우 리 측	북 한 측
<p>○ 이 합의서 제 2 장 <사회문화>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있는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p>	<p>○ 이 합의서에 《제1장 북남경제협력, 교류》의 리행은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제2장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의 리행은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제3장 인도적 문제 해결》의 리행은 북남적십자단체들에서 말한다.</p>
<p>○ 우리측은 「<사회문화>부문의」를 「<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의」로, 「이와 관련있는」을 「이와 관련한」으로 일부표현을 수정하였으며, 북한측에서 우리측안을 수용, 「《제1장 북남경제협력, 교류》의 리행은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와 「《제3장 인도적 문제 해결》의 리행은 북남적십자 단체들에서」는 해당분야(장)별로 나누어 명기하도록 쌍방이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p>	

(22) 제19조, 제20조(합의서 수정·발효)

우 리 측	북 한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p>○ 쌍방은 각기 제시한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을 거쳐 합의 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p> <p>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23) 부기사항(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

우 리 측	북 한 측
-	○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며 래왕자의 신변 안전과 인권을 보장한다.
○ 상대방 법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철폐주장은 상대방 체제 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상호주의 원칙아래 협의·해결해야 할 것임.	○ 이 문제는 남한사회의 각계각층속에서 지어는 당국의 일각에서까지 제기된 것으로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문제를 협력, 교류분과위가 맡고 있는 이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도 정치분과위에 넘길 것이 아니라 협력, 교류분과위원회 부속합의서에 명기해야 함.
○ 우리측은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는 정치분과위원회의 법률실무협의회 소관사항이므로 부속합의서에서 삭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북한측은 부속합의서에 명기할 것을 완강히 고집, 쌍방은 제 8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교류·협력부속합의서 부기사항으로 처리키로 합의함.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부 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하기로 하였다.</p>	

(24) 기타(대일공동대처문제 등)

우 리 측	북 한 측
<p>○ 「울사조약」, 「정미 7 조약」등 구한말에 일본과 맺은 모든 조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사실을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명백히 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제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남북교류·협력분과위의 「긴급의제」로 토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p>	<p>○ 「정신대」문제에 대하여 쌍방이 시급히 공동대응책을 협의하고 공동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함.</p>
<p>○ 「울사조약」, 「정미 7 조약」의 날조사실 규명과 더불어 일제에 항거한 의병 및 독립운동에 관한 새로운 사료를 발굴, 교환하고 이를 공동조사·연구하기위해 남북역사학자간의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이러한</p>	<p>○ 「울사 5 조약」, 「정미 7 조약」등 지난날 일제가 왜곡 날조한 조선침략사를 바로잡고 일본당국으로부터 응당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데 대한 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하고 북남의 공동의지를 담은 「공동결의문」같은 것을 채택할데</p>

우 리 측	북 한 측
<p>일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p>	<p>대하여 합의하자는 것을 제안함.</p> <p>○ 귀측이 진정으로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왜곡날조된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제의에 귀를 기울이고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요구함.</p>
<p>○ 종군위안부문제에 한·일 양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새삼스럽게 귀측과함께 공동제기할 필요는 없음.</p> <p>○ 일본의 핵무장우려는 일본이 「비핵3원칙」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사찰을 철저하게 받고 있으며 금번 해외파병은 유엔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일환이므로 공동대처할 필요는 없음.</p>	<p>○ 북과 남은 종군위안부문제의 공동진상조사와 일본정부의 책임인정, 사죄,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공동대처해야 함.</p> <p>○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의 무효를 공동선언하고 일본당국이 양조약의 무효화, 공식사죄토록 공동조치를 취할 것과 일본의 핵무장화를 막고 해외파병을 저지시키는 데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제안함.</p>
<p><미 합 의></p>	

IV.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타결과정

1. 타결과정

- 우리측에서는 「인도」, 「통행·통신」,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의 4개 공동위를 제시하였고, 북한측에서는 「경제협력, 교류」, 「사회문화협력, 교류」의 2개 공동위를 제시하였음.
- 남북 쌍방은 협의과정을 통해 「인도」분야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은 쌍방의 적십자단체에 위임하기로 하고, 「통행·통신」분야는 「경제교류·협력」과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2개로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음.

2. 쌍방 제의 및 주장

(1) 제 1 조 ①항(공동위원회 수)

우 리 측	북 한 측
<p>○ 부속합의서가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명시하는 실천과제는 방대하리라 예상되며 이러한 수많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은 실천기구들이 탄생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 통행·통신, 경제, 사회문화의 4개공동위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협력·교류공동위원회를 경제와 비경제 부분으로 나누어 북남경제 협력, 교류공동위원회와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 공동위원회로 구성운영할 것을 제의함.</p>
<p>—</p>	<p>○ 인도적 문제는 적십자단체에 위임하고, 통행·통신공동위원회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로 넘겨 2개의 공동위만 구성할 것을 주장함.</p>
<p>○ 남북 쌍방은 협의과정을 통해 「인도분야」의 합의사항 이행을 적십자단체로 위임하고, 「통행·통신분야」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 1 조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p>	

(2) 제 2 조 ① ② ③ ④항(공동위원회의 기능)

우 리 측	북 한 측
<p>○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① 부속합의서에 따라 해당부문의 교류·협력을 협의 실천, ② 실천방안을 협의한데 따라 사안별로 세부합의서 작성, ③ 분쟁등 제반문제를 협의·조정, ④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종합·조정함.</p>	<p>○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① 부속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 ② 부속합의서 외에 협력교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실행대책을 토의 결정함.</p>
<p>○ 북한측이 우리측안을 수용하여 쌍방이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p> <p>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p> <p>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p> <p>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p> <p>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p>	

(3) 제 4 조(공동위원회 합의사항 발효절차)

우 리 측	북 한 측
<p>○ 각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4조). 각 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조)</p>	<p>○ 북남협력·교류공동위원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켰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 우리측은 공동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해 이것이 남북고위급 회담의 테두리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고위급 회담에 보고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북한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되, 중요한 사항만 쌍방 총리의 서명을 받도록 합의하였음.</p>	

- 합의사항 발효절차에 관해서는 쌍방 총리의 서명을 거치도록 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계속한 결과 우리측안 4조의 「고위급회담에 보고한다」와 5조 「쌍방 총리가 서명하는」 중에서 북한측이 5조 총리서명을 받아들임에 따라 4조 보고조항을 삭제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음.

〈합 의〉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록 : 남 북 합 의 서

〈 목 차 〉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415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419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422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428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432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442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445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448
- 남북 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45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 북 화 해

-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 북 불 가 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 북 교 류 · 협 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 정 및 발 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 3 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체제(제도)인정·존중

제 1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 2 장 내부분제 불간섭

제 5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비방·중상 중지

제 8 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파괴·전복 행위금지

제 15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

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 6 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이 행 기 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 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 8 장 수 정 및 발 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

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양 해 각 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부기에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고 합의한 협의의 주체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의미한다.

1992년 9월 17일

남측대표 이 동 복, 북측대표 백 남 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장 무력불사용

제 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 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 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

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 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제 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 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 6조 남과 북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

못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 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해결한다.

제 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 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 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 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 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 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 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 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 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 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

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 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⑤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관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리용 범위를 확대

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리용하지 않는다.

④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리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리용할 수 있다.

③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 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 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9월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③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 2 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이행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

원회 회의에서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문건은 쌍방 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문건은 쌍방 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 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 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체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의 자기 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 3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 통보한다.
-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 ②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③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 5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관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 ③ 자기측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표 단 수석 대표	북 측 대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 편람

인쇄 1998년 6월 8일

발행 1998년 6월 8일

발행처 남북회담사무국
운 영 1 과
(전화 735-1261)

인쇄처 문성인쇄(주)



72